

- I. 이 冊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結果 報告書임.
-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周邊情勢 關聯 研究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方 3 角關係의 變化와 韓半島

— 그 展望 및 政策方向 모색 —



석 승
(제 5 연구관실 보좌관)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I . 序 論	3
II . 北方 3 角關係의 現況	11
1 . 北方의 概念	14
2 . 北方 3 角關係의 基本構圖	16
3 . 北韓・中國關係의 形成斗 展開	20
4 . 北韓・蘇聯關係의 形成斗 展開	26
5 . 中國・蘇聯關係의 形成斗 展開	33
III . 北方 3 角關係의 變化展望	41
1 . 北韓・蘇聯關係의 變化展望	49
2 . 北韓・中國關係의 變化展望	51
3 . 中國・蘇聯關係의 變化展望	54
IV . 結論 (對策 및 政策方向)	59
1 .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63
2 . 對策 및 政策方向	65
※ 附錄 A (關聯 參考文獻 目錄)	73
※ 附錄 B (關聯資料)	83

I. 序

論

I. 序 論

第2次 世界大戰 以後 美國과 蘇聯을 主軸으로 한 自由陣營對 共產陣營의 尖銳한 兩極的 對立構造는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제3世界”라 指稱되는 “非同盟國家群”의 登場에 따라 多極的 複合構造로 轉換되었다.

그러나 1979年 蘇聯의 아프카니스탄 侵攻에 따라 이러한 多邊的 世界構圖는 다시금 美·蘇를 主軸으로 한 東·西兩陣營이 尖銳한 對立과 葛藤을 표출하는 “新冷戰”의 構造로 化하였으며, 이 結果 政治·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매 4년마다 開催되는 “全世界 平和大祭典”인 올림픽이 2번씩이나 “반쪽大會”로 轉落하였고, 各圈域에서 이들의 直·間接 影響力이 작용한 가운데 各種 局地紛爭이 遂行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世界秩序의 新冷戰 構圖는 1980年代 中盤에 이르러서는 다시금 變化하여 東·西 兩陣營間에 和合과 緊張緩和를 圖謀하는 次元으로 變轉하고 있으니, 이것은 곧 東·西 兩陣營國家間의 새로운 和合과 緊張緩和를 豫告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1987年 12月 8日 全世界의 이목이 집중한 가운데 劃期的으로 INF 廢棄協定이 調印됨으로써 “核軍縮時代”의 序幕을 열었으며, 이를 契機로 美·蘇間 多角的인 軍縮協商이 展開되고 있는 것이며, 全世界的 平和 大祭典인 서울올림픽 또한 160個國이라는 史上初有의 大規模國家가 參與한 가운데 盛況리에 開催됨으로써 東·西和合에 새로운 이정표를 提示했던 것이다.

이밖에도 8년여간 持續되어 오던 페르시아灣에서의 이란·이라크 간 戰爭도 그 막을 내렸으며, 아프카니스탄이나 캄부치아問題 등 地域紛爭도 解決이 되었거나, 解決을 위한 協商이 進行되고 있어 全世界는 바야흐로 “새로운 데탕트(Neo-Detente)”의 조짐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동안 “全世界의 共產化”를 達成하기 위해 “Mark-Lenin主義”에 입각한 政治 이데올로기를 근기로 하여 強力한 專制, 獨裁體制를 維持해 오던 中·蘇 등 共產諸國家가 비록 그들이 直面하고 있는 經濟不況과 沈滯를 만회하기 위한 手段의 하나로 원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광복할 만하게 國內的 次元에서의 資本主義的 市場經濟原理의 部分的 導入과 國外的 次元에서는 先進資本主義 國家들과의 接觸·交流를 통한 豊富한 外資 및 技術의 誘致를 기하기 위한 實用主義的 改革·開放政策을 推進하고 있다는 屢연한 사실이다.

특히 우리와 黃海를 접하고 있는 中國은 1976年 毛澤東의 死後 集團指導體制를 표방하면서 새로이 執權한 鄧小平의 “實事求是” 路線에 따라 沿岸地帶에 位置하고 있는 “經濟特區”의 大幅 擴大, 開放 등 革新的인 措置를 취하고 있고, 蘇聯 또한 1985年 세뽴게 등장한 戈르바초프의 執權以後 이른바 “새로운 思考(New Thinking)”에 입각한 “公開(glasnost)”와 “改革(perestroika)” 政策을 積極的으로 推進하면서 “亞·太地域” 國家의 一員으로서 새로운 이미지부각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東西間 和合 및 共存氛圍氣는 美·日·中·蘇 등 周邊 4強이 포진하고 있는 韓半島에도 예외없이 適用되어 南·北韓關係에 直·

間接的으로 적지 않은 影響을 미치고 있으나, 40여년간의 長期獨裁體制를 維持해 오고 있는 北韓側의 閉鎖 및 孤立政策의 堅持때문에 별다른 關係改善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적어도 形式的인 側面에서는 여전히 體制 및 이데올로기의 相剋構造를 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北韓의 同盟國이자 後援國인 中·蘇가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비록 制限的인 것이기는 하지만 일련의 改革·開放政策을 樹立·推進하고 있고, 北韓自體內的 극심한 經濟沈滯와 生活水準의 落後를 만회하기 위해서도 멀지않은 날—흔히들 金日成死後라고 豫見하지만— 北韓으로서도 이러한 潮流를 外面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民族인 우리가 80년대에 접어들면서 “新興工業國家群(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의 先頭走者로 부상하고 있고, 금번 서울올림픽의 成功的 開催를 통해 飛躍的인 國運興隆의 契機를 마련하여 날이 갈수록 南·北韓 國力隔差가 深化되고 있기 때문에 北韓으로서도 이를 좌시만은 할 수 없는 “달레머”에 逢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第6共和國의 出帆以來 새로운 次元에서 樹立, 推進하고 있는 우리의 北方政策은 그들의 同盟國인 中·蘇는 물론이고 헝가리와 유고, 폴란드등 東歐圈國家와의 接觸, 交流에까지도 “貿易代表部” 設置라는 교두보를 形成 또는 構築하고 있는 段階에 있기 때문에, 北韓으로서의 門戶開放과 이를 통한 우리와의 國力隔差 解消, 生活質의 向上을 위한 經濟力 發展이라는 對內外的 要求와 壓力을 받고 있음은 쉽게 豫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北韓으로 하이금 그들이 이제껏 樹立, 推進해 왔던 對 內外政策 基調의 大幅의 改編 또는 修正이라는 現實的 課題를 賦課하는 近·遠因으로 作用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效率的 北方政策 遂行과 南·北韓의 平和的 統一達成이라는 民族의 大課題와도 깊은 聯關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變化는 共產 3國으로 構成되어 있는 北韓·中·蘇의 北方 3角關係에도 不斷한 變化를 超來하고 있는바, 초기의 健全한 同盟體制에서 이제는 雙務的 牽制, 均衡體制로 化하여 그 基本構圖 조차 瓦解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自由」「共產」이라는 兩陣營을 代辯한다고도 볼 수 있는 分斷國家 (Dividing State)로서의 南·北韓이 對峙하고 있는 韓半島의 周邊情況을 正確히 認識, 未來에의 位相을 조망해 보고자 하는 作業의 일환으로 그 基本構圖에 있어 많은 變化를 초래하고 있는 “北方 3角關係”에 초점을 두어 그 내강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이의 具體的 內容으로서는 中·蘇·北韓이라는 共產陣營內의 3國이 어떠한 歷史的 過程을 거쳐 그 關係를 形成, 維持해 왔는가 하는 점을 南北韓 分斷時 (1945)부터 1980年代까지로 限定하여 概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의 方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곳에서는 北方 3國間의 雙務關係, 즉 北韓·中國關係, 北韓·蘇聯關係, 中國·蘇聯關係로 3大別하여 「北方 3角關係의 現況」이라는 題下에 우선 「北方」의 概念을 定義하고 이어 그 形成 및 展開過程을 主要 이슈 (Issue)를 중심으로 일별해 보고자 한다.

다음 第3章에서는 本 研究의 核心部分인 이러한 北方 3角關係가

向後 어떻게 展開될 것인가 하는 점을 「北方 3角關係의 變化展望」이라는 題下에 優先 3角關係를 全般的으로 展望하고 이어 第2章과는 달리 최근 3~4년 동안에 淸澈할 만하게 進展되고 있는 北韓과 蘇聯의 軍事的 密着關係가 當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展望되므로 北韓·蘇聯關係를 먼저 다루기로 한다. 이어 北韓·中國關係, 中國·蘇聯關係라는 兩國關係로 3大別하여 概括적으로 照明해 보고자 한다.

이어 第4章에서는 이러한 北方 3角關係의 形成 및 展開, 그리고 韓半島에 미치는 直·間接的 影響을 推論함으로써 우리의 바람직한 事前豫防的 對策講究와 政策方向을 摸索하는데 寄與하고자 하며, 이는 곧 온 民族의 宿願이자 地上課題인 韓半島의 平和的 統一達成을 위한 對內外政策, 특히 北方政策의 効率的 遂行을 위한 參考資料로 活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附錄』편에서는 北方 3角關係에 關聯하여 參考한 各種資料중 國內에서 刊行된 文獻만을 單行本類, 論文類, 其他로 3大別하여 末尾에 실었으며, 아울러 北方 3國間의 雙務關係를 중심으로 締結된 各種 條約 그리고 이들 3國이 經濟發展을 圖謀하기 위해 制定, 施行하고 있는 外資誘致 關聯法, 其他 關聯參考資料를 收錄하였는바, 보다 자세한 內容은 이를 參考바란다.

II. 北方3角關係의 現況

II. 北方3角關係의 現況

周邊 4 強의 利害關係가 尖銳하게 交叉하고 있는 韓半島는 第 2 次 世界大戰의 終戰以後 38 道선을 基準으로 하여 南에는 大韓民國(韓國) 政府가, 그리고 北에는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北韓)이 樹立되어 40 餘年동안 극심한 反目과 對立狀態 속에서 世界의 唯二 分斷國家로 存續해 오고 있다.

특히 38 道선 北方에 位置한 北韓·中國·蘇聯 등 3 國의 共產國家 들은 1950 年의 韓國戰爭을 통하여 같은 共產陣營內的 同盟國으로서 緊密한 政治·軍事·經濟關係를 形成하였으며, 以後에도 우리나라 와 美國·日本에 대한 『相對陣營』으로서의 關係를 維持해 오고 있는 것이다.

즉 韓半島를 위요하고 展開되는 力學關係에 있어서 北韓이 中·蘇와 形成, 展開하고 있는 이른바 “北方 3 角關係”는 우리나라가 美·日과 形成, 展開하고 있는 “南方 3 角關係”의 共同對抗體로서 存續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對峙狀況은 적어도 形式的인 面에서는 韓半島의 分斷과 韓國戰爭의 副產物로 아직껏 남아있지만 周邊 4 強이 追求하고 있는 對外政策 基調는 그들 各 國家가 處하고 있는 國內外的 情況變化에 따라 不斷히 伸縮적으로 運營되고 있어 以前의 姑息적이고 靜態的인 觀察과 分析으로는 判斷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雙務的 關係가 維持되고 있다.

즉 때로는 이들 3 國間의 雙務關係가 密着되었던 時期도 있었으며, 또 때로는 일면 弛緩된 경우도 있었는데, 本章에서는 이들 3

國關係를 雙務的 次元에서 北韓・中國關係, 北韓・蘇聯關係, 中國・蘇聯關係로 3大別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다만, 論述의 편의상 1945年 分斷過程을 거쳐 北韓政權이 樹立된 때부터 1980年代까지를 一別하여 主要 이슈를 중심으로 하였는바, 이는 어디까지나 필자의 私 見일뿐 斯界의 共通的 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이의 主要順序는 i) 北方의 概念, ii) 北方3角關係의 基本構圖, iii) 北韓・中國關係, iv) 北韓・蘇聯關係, v) 中國・蘇聯關係로 構成하기로 한다.

1. 北方의 概念

一般的으로 “北方”이란 用語는 문자 그대로 “북쪽지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南・北韓이 對峙하고 있는 國境線(休戰線)을 基準으로 한 概念이다.

이를 外交的 觀點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意味로 大別할 수 있겠는데, 그 첫째는 韓半島 北部에 位置하여 韓半島 情勢에 큰 影響을 미치고 韓國問題의 解決에 큰 影響을 미칠 수 있는 中國 및 蘇聯과의 關係를 改善한다는 見解인 바, 이는 多분히 “수사학적” 意味를 띤 것으로 그 對象國은 中國과 蘇聯만을 想定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對中・蘇와의 關係增進을 통해, 그리고 이른바 “北方3角關係”를 이용하여 韓國의 安保를 維持하고 나아가 平和統一을 達成한다는 意味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또한 “北方”의 概念을 廣義로 解釋하여 비단 地理的인 位置만을 基準으로 할 것이 아니라 “體制나 理念”을 尺度(Criteria)

로 하여 北韓을 포함한 그 背後同盟인 中國과 蘇聯, 한걸음 더 나아가 東歐圈國家나 베트남까지도 受容하는 “對共產圈”國家까지도 對象으로 하는 見解도 있다.

이와 같은 用語의 모호성 때문에 그동안 政府는 이의 公式的 사용을 매우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행해 왔으며, 간혹 學者나 言論界에서만이 이를 主觀的, 任意的으로 사용하여 「北方3角關係」, 「北方外交」, 「北方政策」등 包括的인 複合概念으로만 사용해 왔던 것이다.

이러다가 서울올림픽 開催問題를 基點으로 하여 中·蘇를 비롯한 東歐圈國家의 올림픽 大舉參加 決定, 헝가리·유고슬라비아의 貿易事務所開設, 國際社會에서의 對韓國 이미지 改善등 南·北韓間 實質的 對話와 韓國의 對共產圈 關係雰圍氣가 改善, 高潮되는 狀況에서 이러한 “北方”關係 政策은 政府次元에서 새롭게 表明, 公表하기에 이르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明確한 概念規定이나 確立된 定義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의 概念에 대한 보다 정치하고도 확립된 規定의 필요성이 이의 보다 効率的 遂行을 위해 時急하다고 할 수 있는 바, “北方”의 概念을 最廣義로 보다 伸縮的이고 積極的인 意味로 解釋한다면 “韓半島의 平和定着과 궁극적인 統一與件 造成을 위해 이제까지 우리와 敵性國家의 範疇에 속해 있었던 圈域, 즉 直接的으로는 우리와 對峙하고 있는 北韓 그리고 그들의 同盟國인 中國과 蘇聯, 한걸음 더 나아가 其他 東歐圈 및 아시아 共產圈 國家까지도 망라하는 總體的 概念”으로 操作的으로 定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北方=共產圈이라는 廣義의 方式을 成立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는 “地理的인 概念”이라기 보다 “政治的 이데올로기의 概念”의 範疇에 속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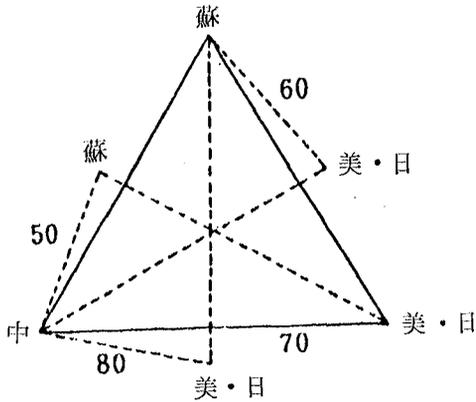
그러나 “北方3角關係”에서의 “北方”이란 用語는 地理的으로 大韓民國(南韓)을 基準으로 하여 北方에 位置한 國家 또는 集團을 總稱하는 것이며, 經濟的 後進國과 先進國間의 問題된 南北問題(South-North-Problem)에서 北方은 經濟的 先進國을 뜻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北方”은 北韓과 蘇聯 그리고 中國등 3個國만을 對象으로 하는 극히 限定的이고 구체적인 地理的 概念이라고 하겠다.

2. 北方3角關係의 基本構圖

南·北韓이 尖銳하게 對峙하고 있는 韓半島의 地政學的 戰略的 特性은 周邊4強의 雙務-多者的 關係의 複雜·微妙함에서 推論해 볼 수 있겠다. 즉 解放과 동시에 分斷된 韓半島는 周邊4強이 利害相衝을 일으키면서 자기 自國의 利益을 圖謀하고 있는 가운데 南方에는 우리와 美·日로 이루어진 3角關係와 北方에는 北韓과 中·蘇로 이루어진 3角關係가 形成되어 各己 對立되어 集團安保體制를 構築하고 있었다.

이러한 對立된 集團安保體制의 特性은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東洋의 南方(海洋)勢力인 日本과 西洋의 海洋勢力인 美國이 韓國을 支援하며, 東洋의 北方(大陸)勢力인 中國과 蘇聯이 北韓을 支



- ※ 1950 : 中 + 蘇 > 美 · 日
- 1960 : 美 · 日 + 蘇 > 中國
- 1970 : 美 · 日 = 中 = 蘇聯
- 1980 : 美 · 日 + 中 > 蘇聯

〈表 2〉 周邊 4 強의 關係 變化圖

있겠다.

이러한 構圖를 갖고 있는 韓半島의 周邊情況은 4 強이 各己 追求하는 政策基調의 變化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 바, 특히 같은 共產陣營國家들로서 形成된 北方 3 角關係는 그것이 韓半島를 포함한 東北亞의 勢力構造를 決定할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全世界의 勢力均衡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큰 關心을 쏟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效率的인 對處方案까지도 事前摸索케 하는 중차대한 問題의 領域에 속하는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北方 3 角關係는 第 2 次大戰의 終了後 蘇聯의 主導로 金日成에 의한 衛星國의 創設과 中國共產政權의 탄생으로 부터 시작하여 40 여년의 歷史를 갖고 있다. 즉 日本의 敗亡에 따라 中國과 韓國은 解放되었으나 이데올로기의 對立으로 인해 兩國은 公히 分斷의 運命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北韓地域은 蘇聯占領軍의 後援下에 迅速한 共產化의 過程을 거쳐 1948 年 9 月 9 日 金日成 政權이 登場했던 것이며, 同年 10 月 12 日 蘇聯으로부터 國家承認을 받

았다. 또한 中國에서는 國府軍과 中共軍間的 치열한 內亂의 過程을 거쳐 1949年 10月 1日 毛澤東을 主軸으로 한 共產政權이 탄생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戰後 3~4년만에 東北아시아에는 蘇聯의 영향을 받는 2개의 共產國家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며, 1949年 10月 6日 中國과 北韓이 公式外交關係를 樹立함으로써 오늘날의 北方3角關係가 形成되기 시작한 것이다. 中國과 北韓 두國家는 政權樹立過程에 있어서 각기 背景을 달리 하지만, 國家建設을 위한 對蘇依存 必要性 및 領域의 深化라는 共通要因 때문에 蘇聯과 急速히 密着된 關係를 形成했던 것이며, 이러한 3國關係는 韓國戰爭이라는 歷史的 事件을 통해 더더욱 密着되는 契機를 공유하게 되었다.

당시 蘇聯의 스탈린은 美國과의 충돌을 念慮하여 戰爭에의 直接 介入보다는 間接的인 經濟·軍事援助에 置重한 反面, 中國의 毛澤東은 人民軍을 急派함과 아울러 1958年 10月까지 軍隊를 駐屯시킴으로써 北韓과 「血盟關係」로 發展시키는 契機를 마련했던 것이다.

韓國戰爭을 前後하여 北韓은 蘇聯과 中國, 東歐圈國家들로부터 막대한 支援을 받았으며, 특히 蘇聯과 中國으로부터의 支援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3國關係는 緊密하고도 確固한 基盤을 構築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3國간의 緊密한 紐帶 및 協力關係는 50年代末에 이르러 理念紛爭으로 시작한 中·蘇간의 葛藤이 深化됨에 따라 60年代에 접어들면서 차츰 금이가기 시작했으며, 특히 金日成이 主體思想에 입각하여 對中·蘇 等距離政策을 展開함에 따라 이들 3國關係는 時期別로 적지 않은 雙務的 關係의 變轉으로 나타났던 것

이다.

즉 北韓의 金日成은 主體思想을 중심으로 中·蘇間 葛藤의 와중에 말려들어가지 않기 위한 金日成 唯一體制를 構築해 나가면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伸縮적으로 對中·蘇外交를 展開해 왔던 것이다.

이는 곧 지난 40여년간 北韓이 中國과 蘇聯이라는 北韓外交의 “두개의 축” 사이에서 비록 制限된 範圍內에서 이기는 하지만 中·蘇間 葛藤을 伸縮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아무튼 北韓과 蘇聯·中國은 오늘날까지도 全世界의 共產化를 위한 基本目標을 堅持하고 있으며, 이의 達成을 위해 全韓半島의 共產化를 圖謀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으나, 이들 各國이 處하고 있는 對內外 狀況의 變化에 副應 또는 經濟的 곤궁을 극복하기 위해 『自國實利爲主政策』을 展開하고 있기 때문에 그 基本骨格이나 構圖에는 많은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이하 그 變化過程을 雙務的 關係를 중심으로 概觀하기로 한다.

3. 北韓·中國關係의 形成과 展開

北韓과 中國은 傳統的으로 文化·種族 및 地政學的 位置에 있어 緊密한 接觸을 가져왔고, 특히 金日成이 1930年代에 中國共產黨의 일원으로서 일한 바 있기 때문에 兩政權樹立以來 友好的인 關係를 持續해 왔다. 물론 이의 底邊에는 中國의 北韓觀 즉 北韓이 自國의 安保에 直接 影響을 줄 수 있는 位置에 있다는 認識—이를 齒層關係라고도 표현한다—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北韓·中國關係의 形成은 1950年代初 勃發한 韓國戰爭을

통해 「血盟關係」로 發展하였는 바, 당시 中國은 政權創立 初期段階에서의 國內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0만명에 달하는 義勇軍을 北韓에 派兵하는 등 北韓에 대한 積極적인 軍事·經濟的 支援을 행함으로써 韓半島가 中國의 安保와 密接히 連繫되어 있음을 示唆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事實 解放이 된 1945년부터 韓國戰爭이 勃發하기 전까지의 中國의 北韓에 대한 影響力은 全無한 狀態이었으며, 그들이 直面한 國內狀況으로 인해 蘇聯과의 對北韓 影響力 競爭을 展開할 만한 立場도 못되었다.

뿐만 아니라 中國이 北韓의 政治에 介入할 수 있는 唯一한 通路였던 「延安派」도 北韓에서 權力基盤을 構築하지 못했기 때문에 文化的 影響力 조차도 行使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나, 兩國關係는 韓國戰爭을 契機로 하여 「血盟關係」로 發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休戰直後인 1953年 11月 金日成이 直接 中國을 訪問하여 戰爭中 中國이 北韓에 提供한 모든 援助를 無償으로 하도록 中國側에 要請하였고, 同月 23日에 「朝·中經濟文化 協調 協定」을 締結함으로써 兩國間的 最初 經濟協定 關係를 公式化시켰다.

中國은 1955년까지 北韓軍 60만명을 訓練시켜 주었으며, 1958년에는 그들이 사용하던 施設·備品·資材를 모두 無償으로 北韓에 移讓시켜 주는등 對北韓 軍事支援 以外에도 北韓의 戰後復舊 事業에 필요한 大規模의 經濟援助와 人力을 提供하였다.

이와같이 中國은 1950年代에 自體內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北韓이 當面하고 있는 여러가지 難關을 解決할 수 있도록 時期適切한 援助를 自發적으로 提供함으로써 北韓에 대한 影響力과 發言權을 增大시킬 수 있는 基盤을 마련했던 것이다.

이러한 北韓・中國關係는 그들 나름대로의 戰略的 目標을 가지고 그러한 目標達成을 위하여 그동안 對內的인 狀況變化에 따라 때로는 密着, 때로는 疎遠한 關係를 維持해 왔는 바, 그 變遷過程을 主要 因슈를 중심으로 概觀, 時代區分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中・北韓關係 全無期 (1945~50)

同 期間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北韓에 대한 中國의 影響力이 全無하다고 할 만큼 없었던 것이다.

中國은 當時 國民黨과의 內戰 및 政權樹立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北韓에 대한 關心을 쏟을 만한 餘力이 없었으며, 北韓은 이와는 反對로 日帝의 敗亡과 더불어 共產政權의 樹立과 南侵準備를 위하여 先進 蘇聯에 의해 소비에트화가 強力히 要求되었다. 北韓의 경우, 蘇聯의 占領政策 또는 金日成 리더쉽에 反對하는 勢力을 스탈린 肅清方式에 따라 除去시켰는데, 蘇聯을 등에 업고 國內派와 延安派를 彈壓, 金日成 중심의 北朝鮮勞動黨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6·25 戰爭에 中國軍의 直接介入 以前까지 北韓에 대한 中國의 影響力은 全無했으며 蘇聯의 統制만이 存在했다고 할 수 있겠다.

2) 中・北韓關係 設定期 (1951~61)

6·25 戰爭 당시 北韓에 대한 中國의 決定的 支援과 休戰協定 締結로부터 1958 年까지의 中國軍隊 駐屯은 자연히 北韓政治에 대한 中國의 影響力과 發言權을 增大시킨 時期였다.

1953 年 3 月 스탈린의 死亡과 그에 따른 蘇聯政治指導層의 內紛 및 1956 年 2 月 후르시초프에 의한 스탈린格下運動과 西方과의 平和共存 擁護政策은 蘇聯에 대한 北韓의 信賴를 弱화시켰다. 그리하

여 金日成은 1955年 12月 이른바 主體理論을 표방하고 나섬으로써 國內적으로는 蘇聯의 集團指導體制를擁護하고 나선 延安派와 蘇聯派 提携의 反對勢力을 除去할 수 있었고, 對外的으로는 蘇聯에 批判的인 態度를 보이면서 中國의 經濟政策과 對西方 強硬路線을 支持하고 模倣할 수 있었다.

3) 中·北韓關係 密着期 (1962~64)

이 期間중 中·蘇紛爭은 尖銳하게 擡頭하였으며 北韓은 쿠바 미사일事件 이후 후르시 초프가 失關할 때까지 中國쪽으로 편향했다고 할 수 있다.

北韓으로 하여금 親中國 쪽으로 기울게 한 要因들로서는 첫째 유럽 편향적이고 平和共存的인 蘇聯보다는 아시아에 일차적인 關心을 쏟는 戰鬪的인 中國에 대한 호감, 둘째 1962년 쿠바미사일事件에서 蘇聯이 취한 投降主義的 行動 및 中·印國境紛爭에서 蘇聯이 취한 애매한 親印度的 行動에 대한 不信, 세째 活氣찬 中國의 第3世界 外交에 편승하여 自身의 外交網을 擴大하고자 하는 計算 등이다.

이러한 要因등으로 인해 1963年 中國과 北韓 兩側 國家元首間의 相互訪問, 首腦級人士의 會談등으로 兩國의 關係가 급속히 密着하자 蘇聯은 北韓에 대한 軍事·經濟 援助를 中斷했던 것이다.

4) 中·北韓關係 疎遠期 (1965~68)

알바니아를 除外한 東歐圈과 蘇聯으로부터 孤立된 北韓은 다시 中國의 經濟援助能力 및 第3世界 外交進出에 대한 도움 등에 대해 再評價하게 되었으며, 새로 登場한 蘇聯의 브레즈네프·코시킨 등 蘇聯의 指導者들은 中國이 提供할 수 없는 軍事援助와 核의 保護 및 經濟支援을 北韓에 提供함에 따라 中·北韓關係는 다시 葛

藤期를 맞게 되었다.

이때 中國은 文化革命의 激浪期로서 紅衛兵들은 金日成의 『百萬長者·貴族·大부르조아지』라고 酷評했고 北韓은 이에 反感하여 政策路線에 相當한 意見差異를 보였다.

5) 中·北韓關係 平行期 (1969 ~ 78)

中·蘇國境紛爭이 深化됨에 따라 北韓은 어느쪽에도 편향되지 않은 이른바 自主路線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中國側에 다소 기울었다. 1969년에는 닉슨行政府의 蘇聯과 緊張緩和 試圖 및 닉슨독트린 표방, 東北亞에서의 日本의 政治的 役割을 重視하는 닉슨-사토키 共同聲明 등으로 國際政治가 매우 微妙한 關係에 있었다.

中國도 역시 文化革命을 終結짓고 正常的인 外交活動을 強化하여 北韓과 關係改善에 關心을 돌렸다. 1975年 4月 베트남의 共產化에 자극받은 金日成의 北京訪問은 蘇聯보다 積極的인 中國에 거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美·中國 和解와 日·中國 平和協定이 締結된 1978年 後半 以後부터 또다시 中·北韓關係가 不和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반대로 蘇·北韓關係가 強化되어 相當한 人的·物的交流가 행해졌다. 그리하여 이 時期는 결국 國際的으로 東西間의 緊張이 緩和되는 속에서 北韓의 自主路線이 強化된 時期로 볼 수 있다.

6) 中·北韓關係 再疎遠期 (1979 ~ 81)

1978年末 中國의 베트남 武力侵攻 敢行에 따른 北韓의 中國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있었고 美·中國關係 正常化가 이루어짐으로써 北韓이 불안해 하고 있는 중에 蘇聯의 積極的인 關係改善 意思로 中·北韓關係는 오히려 다시금 疎遠해졌다. 결국 中國과 北韓

은 對美政策과 體制 및 路線上에서 意見이 對立되었고, 中國의 對 韓國 間接通商은 中·北韓關係를 더욱 疎遠케 하는 重要한 要因이 되었다.

7) 中·北韓關係 再密着期 (1981~83)

北韓의 親蘇化에 대한 中國의 抑制와 警告의 필요성은 1981年 12月 中國의 趙紫陽 總理의 平壤訪問으로 분명해졌다. 그후 中國과 北韓은 對美政策과 金正日 權力承繼 問題에 있어서 漸次 異見을 좁혀갔고, 그에 따라 中國의 北韓에 대한 經濟 및 軍事援助는 急速히 增加되었다.

1982年 以後 中·北韓間 最高指導者들의 頻繁한 相互訪問은 兩側의 紐帶를 強化시키는데 크게 貢獻했으며 결국 中·北韓은 다시 密着되었다.

8) 中·北韓關係 再平行期 (1984~現在)

1984年 5月 胡耀邦 黨總書記의 平壤訪問, 8月 北韓의 政務院總理 강성산, 外相 김영남 등의 中國訪問, 中國 深圳·大連 등의 經濟特區에 大規模 經濟使節團 派遣, 中國의 「中外合作投資經營法」을 模倣한 北韓의 「合營法」制定 등으로 中·北韓關係가 密着되었으나 1984年 以後부터는 蘇·北韓關係도 軍事的 紐帶強化를 중심으로 점차 가까워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즉 蘇聯은 相當量의 新銳戰鬥機를 北韓에 提供했고 蘇聯艦艇의 南浦港 駐屯, 蘇聯 高位級人士의 北韓政權 創建 40周年 慶祝記念 行事의 參席등으로 北韓과 相當히 接近하고 있다.

이와 같이 蘇·北韓의 軍事的 密着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못지 않게 中·北韓間에는 首腦會談을 每年 定

例化하는 등 매우 緊密한 關係를 維持하고 있어 다시금 平行期에 접어든 듯한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4. 北韓·蘇聯關係의 形成과 展開

北韓과 蘇聯關係는 北方 3角關係의 形成에 있어 「주춧돌」과 같은 役割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945年 分斷의 過程에서 나타난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樹立을 위한 準備作業은 바로 蘇聯에 의해 主導되었고 당시만 해도 이들 3國關係에서 「中國」이라는 變數는 別다른 작용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蘇聯은 北韓을 그들의 「衛星國」化하기 위해 金日成을 내세웠으며, 北韓의 거의 모든 統治組織과 經濟構造를 그들 官吏나 顧問團을 통해 支配함으로써 「소비에트 社會主義共和國 聯邦의 構成共和國」化 했던 것이며, 北韓을 사이에 두고 中·蘇間에는 別다른 競爭關係를 형성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蘇聯은 北韓政權樹立 初期부터 韓國戰爭 勃發以前까지 北韓을 전형적인 「衛星國化」하기 위해 北韓의 對內外政策을 支配했을 뿐만 아니라 集中的인 文化的 浸透와 經濟的 統制를 통해 北韓의 소비에트化를 企圖하였으며, 사실상 蘇聯의 이러한 企圖는 韓國戰爭에 「中國介入」이라는 變數가 작용하기까지는 北韓에 대한 絶對的인 政治·經濟·軍事的 影響力을 行使했던 過去가 여실히 證明해 주고 있다.

그러나 韓國戰爭以後에도 蘇聯의 北韓에 대한 影響力은 여전히 있었으며, 다만 그 정도에 있어 中國이라는 「競爭國」의 登場으로 인하여 그 影響力이 輕減 또는 縮小되었을 뿐이다.

특히 北韓의 同盟國인 中·蘇가 1956年 第20次 蘇聯共產黨大會를 始發로 한 理念論爭과 그후의 國境紛爭과 武力衝突 事態로까지 이어져, 兩國間的 간극이 벌어짐에 따라 이들 두國家에 대한 北韓의 對外政策이 時期別로 多少 差異를 두고 展開되었다는데 留意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附加하여 1966年 金日成이 「主體思想」에 입각한 獨自路線追求 演說을 전기로 하여 보다 伸縮的으로 對·中蘇政策을 展開함에 따라 時期別로 北韓의 對中·蘇政策도 適切히 變化되었다는데 그 特徵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과 蘇聯關係는 政權樹立 當時의 “衛星國과 從主國關係”에서 中國이라는 “血盟國”이 韓國戰爭을 契機로 兩國關係에 끼어들므로써 “3派戰”의 樣相을 띄게 되었던 것이며, 이는 “두개의 巨大한 盟邦”인 中·蘇間的 葛藤·紛爭 深化와 金日成의 “獨自路線” 追求政策에 따라 時期別로 多少 진폭을 나타내는 伸縮的인 對蘇政策을 展開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北韓·蘇聯關係의 變遷過程은 北韓·中國關係, 中·蘇關係와 函數關係에 있는 것으로써 主要 이슈를 중심으로 時代區分, 概觀하면 다음과 같다.

1) 蘇聯에 의한 一方的 支配期 (1945~50)

蘇聯軍의 駐屯을 土臺로 하여 北韓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蘇聯의 衛星政權으로 樹立되었다. 韓國戰爭에 있어서는 南侵計劃을 蘇聯과 北韓이 共同으로 樹立, 蘇聯은 南侵에 필요한 軍事的, 經濟的 援助를 提供하였다.

뿐만아니라 韓國戰爭을 契機로 美·蘇 冷戰이 激化되기 시작했다. 때문에 韓國戰爭의 勃發에 이르는 동안 北韓은 政治的, 經濟的, 軍

事的 그리고 外交的 으로 蘇聯에 의해 一方的으로 支配當하는 時期였고 蘇聯은 이것을 契機로 北韓을 衛星國化하고자 試圖하였다.

2) 蘇·北韓關係 動搖期 (1951~61)

韓國戰爭에 中國이 參戰하게 됨으로써 相對的으로 中國의 對北韓 影響力이 增大하게 되어 蘇聯은 中國과 競合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956년 蘇聯共產黨 第20次 黨大會에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批判과 더불어 平和共存을 提唱하여 北韓에 커다란 衝擊을 주었다. 北韓은 이 衝擊에서 벗어나기 위해 延安派와 蘇聯派에 대한 肅清을 斷行했다.

이러한 與件에서 北韓에 대한 蘇聯의 一方的인 支配時代는 끝났다. 그렇다고 해서 蘇聯 대신에 中國이 北韓을 一方的으로 支配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韓國戰爭後 蘇聯 第20次 黨大會 (56年)를 前後하는 時期에 이르기까지 北韓은 中·蘇에 대해 可及的 均衡의인 密着關係를 維持하고자 試圖하였다.

그러나 58년부터 60년에 이르는 기간에 있어서 中·蘇 紛爭이 惡化되었기 때문에 北韓은 中·蘇에 대해 加급적 消極的인 中立을 維持하는 가운데 政治的인 自主와 獨立을 維持하고자 試圖하였던 時期였다.

3) 蘇·北韓關係 疎遠期 (1962~64)

60년에 접어들면서 北韓은 中·蘇 兩國 사이에서 그 立場의 摸索을 위해 動搖하였다. 따라서 60년대 초반에 있어서 蘇聯과 北韓關係는 中國과 北韓關係의 反사적 產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蘇聯·北韓關係의 接近은 中國·北韓間의 疎遠한 關係의 產物이며 또 中國·北韓關係의 接近은 北韓·蘇聯間의 疎遠한

關係의 產物이다. 60년을 前後하여 中·蘇 紛爭이 激化됨에 따라 北韓은 對中·蘇關係에서 消極적인 中立을 維持하려던 姿勢로부터 漸次 中國쪽에 依存하면서 60年代 中盤에 이르기까지 실제적 中立을 維持하고자 努力하였다.

반면 蘇聯은 「유럽우선」政策에 따라 北韓에 대해 別다른 關心을 두지 못했으며, 한동안 對北韓 經濟·軍事援助를 中斷시켰으므로 北韓은 中國에 편향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北韓은 「쿠바미사일」事件以後 후르시초프가 失閣할 때까지 中·蘇紛爭에서 中國의 強力한 支持者로 處身하였다.

4) 蘇·北韓關係 密着期 (1965~68)

이러한 趨勢에 따라 蘇聯은 후르시초프時代に 惡化된 對北韓關係를 改善하기 위해 1965年 2月 코시킨을 團長으로 하는 代表團이 越盟을 訪問하고 歸國하는 길에 北韓을 訪問케 하였다. 이 訪問을 契機로 60年代 中盤부터 中國·北韓關係 보다는 蘇聯·北韓關係가 더 接近하게 되었다. 그러나 蘇聯·北韓關係의 接近은 北韓의 立場에서 본다면 中國을 外面한 對蘇 一邊倒 關係일 수는 없었다.

北韓은 中國에 대해서 보다 蘇聯에 依存하면서도 그 自主路線의 定立을 위해 實際的 中立을 維持코자 繼續 努力했다.

同期間 동안에 蘇聯은 國際政治와 共產陣營內에서 主導的 役割을 遂行했으며, 北韓에 대해 中國이 提供할 수 없는 軍事的 援助와 經濟的 支援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北韓軍은 1968年 1月 蘇聯軍 裝備로 完全히 武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蘇·北韓關係의 中立期 (1969 ~ 78)

同期間중 中·蘇間에 理念紛爭이 惡化되자 北韓은 自主路線을 標榜하면서 中國側에 多少 傾斜된 態度를 보였다.

70年代에 접어들면서 北韓으로서는 經濟建設을 위한 實利追求라는 內部的 要因外에 많은 國際情勢의 變化 그리고 南·北韓關係에도 적지 않은 變化가 일기 시작했다.

이 기간중에는 대체로 美·蘇의 緊張緩和 조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世界政治에서 차지하는 美國의 役割도 이전보다 줄어들게 되었다.

반면에 共產世界에 있어서는 50年代의 中·蘇同盟關係가 60年代의 政治的 不和關係를 거쳐 70年代에 들어와서는 軍事的 對峙關係로 惡化되었다.

또 臺灣問題에 대한 美·中國 立場이 72年 上海共同聲明에서 確認되고 78年 後半에는 中·日이 平和協定을 締結하였으며 美·中間에도 國交가 正常化되는 등 東·西間 和解의 氛圍氣가 造成되었으나, 이를 契機로 中·北韓間에는 적지 않은 不和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對中國關係와 병행하여 金日成은 수차례에 걸쳐 蘇聯과의 關係強化에 대한 意思表示를 하였으며, 사실상 同期間중 蘇聯과는 상당한 정도의 經濟 및 人的交流를 행하였던 것이다.

北韓의 이러한 對中·蘇 等距離外交는 周邊情況의 變化에 따라 매우 伸縮적으로 運用된 것으로 보이는 바, 60年代 中盤부터 北韓이 蘇聯側에 더 接近하게 되자 中國은 對北韓關係를 改善하고자 70年 4月 周恩來가 平壤을 訪問하여 對北韓 무마에 努力한 것 등이

이를 잘 代辯해 주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對內外 情勢의 變化와 經濟建設을 위한 實利追求를 위해 70年代初부터 中·蘇 가운데 어느 한 나라와도 密着하지 않고 等距離 政策을 基調로 삼아 中·蘇의 紛爭關係를 이용하여 兩國으로부터의 支援을 確保코자 하는 이른바 「양다리外交」를 繼續했다.

蘇聯 역시 北韓과의 密着을 원했으나 그것을 위해 對中國關係의 惡化속에 北韓에 支拂해야 할 危險負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蘇聯도 對北韓 一邊倒的인 密着關係의 追求보다는 北韓·中國關係의 一邊倒的인 密着을 堅持하는 것이 더 實利的이었다고 判斷한 것으로 보인다.

6) 北韓의 對蘇 偏向期 (1979 ~ 81)

1979年 6月 蘇聯은 北韓과 關係改善의 뜻을 비추면서 駐韓 美軍撤收 등을 포함한 北韓統一政策을 積極 支持했으며, 北韓도 이에 呼應했다. 中國과 北韓은 對美政策과 體制 및 路線上에서 意見이 對立되고, 中國의 4個現代化計劃의 成功的 推進을 위한 對韓國 間接通商은 北韓을 蘇聯에 偏向케 하는 主要因이 되었다.

특히 이러한 北韓의 對蘇偏向을 間接的으로 드러낸 것으로는 1980年 10月 4日 金日成이 第6次 黨大會에서 “社會主義國家들이 帝國主義와 無原則하게 妥協함으로써 同僚國家들의 利益을 犧牲시켜서는 안 된다”고 美·中國 關係正常化를 비난한 發言을 들 수 있겠다.

7) 蘇·北韓關係 再疎遠期 (1982 ~ 83)

中國과 北韓은 對美政策과 金正日 權力承繼 問題에 있어 異見을 좁혔고, 北韓에 대한 中國의 經濟·軍事支援은 늘어난 반면

蘇聯의 軍事援助는 中斷되었다. 1982年以後 中·北韓間 最高指導者들의 相互訪問은 兩側의 紐帶를 더욱 強化시켰고, 이는 北韓이 中國側에 상당히 密着되는 轉機가 되었다.

8) 蘇·北韓關係 再密着期 (1984~現在)

1983年 後半 蘇聯의 KAL機 擊墜事件과 北韓의 머마 暗殺 爆發事件에서 蘇·北韓이 서로의 난처한 立場을 擁護했던 것이 契機가 되어, 蘇聯은 北韓의 權力承繼를 默認하고 軍事·經濟支援을 強化했으며, 1984年 5月 金日成이 蘇聯을 23年 만에 公式訪問함으로써 雙方은 다시금 密着關係를 갖게 되었다.

이를 契機로 蘇·北韓關係는 특히 經濟·軍事關係에서 현저한 密着現象을 示顯하고 있는데, 北韓의 對蘇交易은 北韓의 全交易量의 38%를 上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北韓은 蘇聯으로부터 最新銳武器 購入등 軍事援助에 대한 對蘇依存政策과 關聯하여 나진·청진·남포등에 대한 寄港權, 北韓領空 通過權까지도 蘇聯에 許容함으로써 전례없는 軍事的 密着關係를 示顯하고 있다.

이외에도 北韓은 지금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 坎란基地까지 蘇聯戰鬪機가 南行할 경우에만 北韓領空通過를 許容하였는데, 最近에는 坎란으로부터 北行할 경우에도 北韓領空通過權을 許容하는 등 괄목할 만한 對蘇密着 現象을 보이고 있고, 東海上에서 蘇聯과 合同海上 訓練을 實施하는 등 蘇·北韓間 軍事關係의 密着이 本格化되었음을 實證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蘇·北韓間의 關係密着이나 疎遠關係가 대체적으로 2~5년간의 間격을 維持했던 歷史的인 經驗으로 본다

면 앞으로 蘇·北韓間의 關係도 이러한 樣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그러한 關係가 대부분 蘇聯의 主導에 의해서 일어난 現象이었으며, 北韓이 獨自的인 決定에 따라 취할 수 있는 選擇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5. 中國·蘇聯關係의 形成과 展開

現下 共產國家중 兩大本營이라 할 수 있는 中國과 蘇聯은 '80年代에 접어들면서 淸목할 만한 改革·開放政策을 구사하고 있어 그들 同盟國들은 물론 北方三角關係의 한 對象國인 北韓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곧 이들 兩國이 採擇, 標榜하고 있는 實用主義的 對外政策 基調가 그들의 同盟國들에게도 直·間接으로 波及效果를 미치게 됨을 意味하는 바, 이곳에서는 日帝의 敗亡과 더불어 새로이 共產政權을 樹立한 中國과 1917年 볼셰비키革命의 成功以來 社會主義 宗主國으로 浮上한 蘇聯이 맺어온 雙務關係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이들 中·蘇는 東西洋을 代表하는 共產主義國家로서 그들이 공히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입각한 이데올로기로서 國家統治組織, 體制를 維持해 오고 있지만, 이들 兩國間에는 傳統的인 文化·社會·經濟的 基盤의 相違와 對外政策基調, 그리고 이를 포괄한 國內外的 情況의 認識差異 때문에 적지 않은 雜音과 不協和音이 惹起되어 왔다.

즉 第2次世界大戰의 終戰以後인 1949年 中國大陸에 毛澤東을 主軸으로 한 共產政權이 樹立되면서부터 中·蘇는 「鞏固한 同盟體制」를 維持하였으나, '50年代末부터 露呈되기 시작한 이른바 「理念論爭」

을 기화로 하여 國境紛爭, 급기야는 武力衝突로 이어졌으며, 1963年以後에는 「黨關係」까지 斷切되어 있고, 그리고 1979년에는 「同盟條約」까지 廢棄함으로써 中·蘇關係는 이른바 「無條約狀態」의 「犬猿之間」으로까지 惡化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中國은 鄧小平이 執權한 1970年代末 우리의 友邦國인 美·日과 經濟安保 協力關係를 맺었던 것이며,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自主獨立 外交路線」에 입각한 對外政策의 遂行과 이를 통한 4個現代化計劃의 成功的 推進을 圖謀하기에 이르렀고, 蘇聯 또한 '80年代 中盤 고르바초프의 登場以來 광목할 만한 改革·開放政策을 標榜하면서 「블라디보스톡宣言」을 통해 中國과의 和解를 위한 讓步提案을 함으로써 다시금 中·蘇關係의 正常化를 圖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中·蘇關係의 浮沈은 앞서 考察한 北韓의 對·中蘇關係와 같이 北韓을 「軸」으로 하여 周期的(대개 3~4年)으로 變遷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5~10年의 간격을 두고 中·長期的으로 變化해 왔다는 데서 그 特性을 摸索해 볼 수 있겠는 바, 以下 그 變化過程을 時期別로 區分, 概觀해 보기로 한다.

1) 中·蘇關係의 蜜月期(1949~59)

中國과 蘇聯은 地球上에서 가장 긴 6,500km의 國境線을 占하고 있으며, 國境을 둘러싼 兩國의 反目과 對立은 수세기동안 持續된 것으로서 이는 歷史가 잘 證明해 주고 있다. 즉 淸國과 帝政 러시아간의 緊張關係, 1920年代 中國에서의 共產革命을 둘러싸고 일어난 「코민테른」과 中國共產主義者間的 不和가 그 代表的 에 이다.

그리고 유럽적인 러시아의 傳統과 아시아적인 中國의 傳統사이에는 歷史·文化的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中·蘇는 間斷 없는 緊張과 葛藤關係를 維持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第2次世界大戰 以後의 毛澤東에 의한 中國共產黨의 政權 掌握은 蘇聯의 後援下에 進行되었기 때문에 1949年 10月 1日 中華人民共和國의 樹立以來 中·蘇關係는 이른바 「盟邦」으로까지 緊密해 질 수 있었다.

즉 毛澤東은 1949年 6月 30日 人民共和國樹立 3個月前 「한쪽으로 기운다」는 同盟政策을 標榜하였으며, 1949年 12月の 訪蘇, 그리고 1950年 1月 20日 蘇聯과의 「友好·同盟·相互協調에 관한 條約」을 締結하였던 것이다.

특히 韓國戰爭을 통해 中國이 北韓에 대해 積極적인 軍事·經濟 援助를 행하자 蘇聯은 中國에게 約 20億달러 相當(美國側資料)의 軍事援助 및 中國의 現代化·機械化를 위한 各種 援助를 提供하였다.

이리하여 中·蘇關係는 1953年~'56年間에 最高潮에 달했으며, 世界政治는 中·蘇同盟을 軸으로 하는 共產陣營과 美國을 頂點으로 하는 民主陣營의 兩極的 構造로 定着되었던 것이다.

同期間중 中國은 蘇聯을 “社會主義 祖國”으로 생각했으며, 당연히 “對蘇 一邊倒 外交”를 採擇, “蘇聯으로부터 배우는” 그런 政策을 一貫되게 適用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1956年 2月 蘇聯의 第20次 黨大會에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格下運動”을 標榜하면서 「戰爭可避論」에 입각한 平和共存論을 提唱하자, 中國은 이에 대해 蘇聯을 “修正主義者”로 비난하면

서 蘇聯의 民族解放運動 및 社會主義 陣營에 대한 支配主義에 대해 批判을 가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中·蘇間의 理念路線上에 있어서의 不協和音은 經濟援助뿐만 아니라 貿易去來에도 影響을 미쳐 1950年以後 꾸준히 增大되어 오던 對蘇輸入量이 漸減하는 現象을 나타냈던 것이며, 이는 결국 '60年以後의 兩國間 關係가 극심한 反目, 對立狀態로 빠지는 近因이 되었던 것이다.

2) 中·蘇間의 理念論爭期 (1960~69)

이와같은 中·蘇間의 理念論爭은 西方 帝國主義와의 平和共存 問題로부터 시작하여 社會主義社會의 段階的 發展論에 이르기까지 中國은 蘇聯을 “修正主義”로, 蘇聯은 中國을 “教條主義”로 비난하였으며, 특히 中國은 1958年에 第2次 5個年經濟計劃을 樹立함으로써 그전까지와는 달리 獨自의인 路線을 採擇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注目할 만한 것이었다. 즉 中國의 “大躍進運動”과 “人民公社政策”은 蘇聯으로부터 “左傾路線”이라고 지탄받았으며, 이후 中國의 “人民日報”와 蘇聯의 “프라우다”論說을 통해 公開的인 相互 攻擊으로 擴散되었다.

그러나 兩國間的 이러한 反目·不和는 1960年까지는 表面化되지 않았으나, 1960年以後 부카레스트會議, 모스크바會議 등을 基點으로 더욱 노골화되었으며, 1962年 蘇聯의 유고슬라비아 接近과 1963年 10月 쿠바미사일 危機등을 거치면서 더욱 惡化되어 「文化大革命」時期 (1966~'69)를 통해 中國은 完全히 孤立狀態에 빠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兩國의 外交關係는 代理大使級 水準으로 格下되었으며,

帝政 러시아와의 不平等條約에 의해 蘇聯에 빼앗긴 領土를 되찾으려는 中國側의 努力은 中·蘇 國境地帶의 蘇聯軍의 增強配置를 惹起시켰고, 1969年 3月 中國의 挑發로 滿洲國境을 따라 흐르는 우수리강의 「다만스키」섬에서, 同年 8月에는 新疆지역에서의 武力衝突로 까지 비화하였던 것이다.

즉 1950年代 中盤에 提起된 兩國間 理念論爭의 加速化를 막기 위해 1964年 10月 후르시초프의 失閣以後 蘇聯의 새로운 指導者 (브레즈네프와 코시킨)들에 의한 對中國 接觸 試圖를 통한 異見 調整 努力이 있었으나 이것들은 모두 무위로 돌아갔으며, 中·蘇間에는 外交關係 뿐만 아니라 經濟·文化交流도 完全히 斷切된 극심한 理念論爭期로 접어들었던 것이다.

3) 中·蘇間의 同盟瓦解期 (1970~81)

60年代末에 이르러 武力衝突로까지 비화된 中·蘇의 惡化關係는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中國으로 하여금 새로운 外交政策으로 선회케 한 契機가 되었다.

즉 「2重敵政策(美·蘇에 對抗하는)과 「2重同盟政策(黨對黨, 國家對國家)」을 堅持한 60년대의 中國政策은 그들의 安保利益에 도움이 되지 못할뿐 아니라 蘇聯의 軍事的 膨脹과 威脅에 대한 危機意識을 느끼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침 美國이 越南戰으로부터 撤收를 準備함에 따라 東南亞에서의 美·中間摩擦의 要因이 惡化되었고 이에 따라 美·中間에 蘇聯의 軍事的 膨脹과 威脅에 대한 「反蘇聯合戰線」의 意識을 공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中國은 1972年 9月 日本과 國交樹立, 이어 1978年 8

月 12日 日本과 友好條約締結, 同年 12月 16日에는 美國과의 外交關係樹立(1979.1.1)을 發表하는 등 「美·日·中」 3國間 安保協力體制를 構築하였던 것이다.

이는 곧 1950년에 締結되었던 中·蘇同盟條約의 廢棄를 意味하는 것으로써 中國은 蘇聯이 霸權國으로 變化해서 中國을 포위하고 있으므로 同盟條約은 그 意味를 잃었다고 主張했으며, 蘇聯은 中國의 이러한 主張에 대해 「敵對的 行動」이라고 응수했던 것이다.

따라서 中·蘇同盟은 1979年 4月 3日 中國側의 蘇聯에 대한 正式弘報로 인해 廢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以後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侵攻으로 인해 兩國關係는 더욱 惡化되었고, 이러한 狀態는 中國과 蘇聯이 공히 각자를 「戰略的 3角關係」로 認識하였기 때문에 '80年代 初半까지 별다른 進展없이 葛藤과 反目이 持續되었던 것이다.

4) 中·蘇關係의 和解追求期(1982~現在)

이러한 中·蘇間의 극심한 對立現象은 1982年 以後부터 다소 緩和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85年 蘇聯의 고르바초프가 執權하면서부터는 눈에 띄게 關係改善樣相을 보이고 있다. 즉 1982年末에 이르러 改革·實用主義路線을 加速化하고 있는 中國의 鄧小平이 「自主獨立外交路線」을 標榜하는 것과 함께 당시의 브레즈네프 역시 「타시젠트宣言」과 「마쿠演說」을 통해 中國과의 진지한 協商用意 表明에 힘입어 兩國關係는 새롭게 展開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兩國關係는 브레즈네프의 失脚以後 具體的인 樣相을 띄고 展開되었는 바, 1982年 10月 5日 北京에서의 外務次官級會談, 同年

11月 中國外交部長 黃華의 브레즈네프葬禮式 參席과 연이은 蘇聯 外相 그로미코와의 會談, 1983年 3月 모스크바에서의 外務次官會談, 同年 6月の 相互總領事館 設置合意, 同年 10月の 北京 外務次官會談 등이 그 代表的 예이다.

이어 1984年, 1985年에도 兩國은 數次的 接觸을 繼續하였으며, 1985年 3月の 고르바초프가 登場하면서부터는 兩國間 接觸과 交流가 보다 활발히 展開된 가운데 눈에 띄게 和解局面을 示顯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1986年 7月 「블라디보스톡宣言」을 통해 고르바초프가 蒙古, 아프카니스탄에서의 兵力撤收와 中·蘇河川國境에 關聯된 讓步 및 中·蘇地方軍 相互減縮등 中·蘇關係改善에 매우 극적인 讓步提案을 함으로써 새로운 關係改善의 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를契機로 中·蘇는 1988年에 들어서면서 캄푸치아駐屯軍 撤收를 위한 外務次官會談, 그리고 中·蘇頂上會談의 早速實現을 위한 1988年 12月 모스크바에서의 兩國外相會談을 開催함으로써 兩國關係가 새로운 和解를 追求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III. 北方3角關係의 變化展望

III. 北方3角關係의 變化展望

1980年代 中盤에 접어들면서 國際情勢는 超兩強大國인 美·蘇의 軍縮努力에 힘입어 淸々할 만한 緊張緩和 조짐을 보이고 있다. 卽 年前에 締結된 美·蘇의 INF 全面廢棄協定과 더불어 아프카니스탄, 페르샤만, 앙골라, 캄푸치아 등에서 繼續되어 오던 地域問題도 이들 兩國의 直·間接 協商이나 影響力에 힘입어 이미 解決되었거나 解決조짐을 보이고 있다.

즉, 既述한 바와 같이 國際情勢는 바야흐로 “新데탕트”의 조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緊張緩和 내지 和解潮流는 南·北韓이 尖銳하게 대치하고 있는 韓半島 周邊地域에도 적지않은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올림픽의 成功的 開催를 통해 새로운 “亞·太中心國”으로 浮上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國際的 位相은 비록 非政治的分野의 것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제까지 敵性視해 왔던 共產圈國家와의 接觸·交流領域의 擴大現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이제까지 政治的·이데올로기의 次元에서 “黑白論理”로 規定해 왔던 自由·共產陣營間的 이른바 “對決構造”를 弱화 내지 와해시키는 原因으로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의 情勢는 周邊強大國들의 外的 政治力과 南·北韓 사이의 函數關係가 複雜하게 作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世襲王朝를 고집하면서 時代逆行的인 「韓半島의 共產化 戰略」을 일관되게 圖謀하고 있는 北韓의 金日成政權의 閉鎖, 孤立政策路線 때문에 쉽게 樂觀할 수 없는 情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情況에도 不拘하고 韓半島를 기축으로 하고 있는 北方 3 角關係는 世界情勢의 和解와 緊張緩和의 조직에 따라 적어도 이전 처럼 政治·이데올로기적인 梗塞構造를 維持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北方 3 角關係는 直接的인 要因으로서 中·蘇間 關係의 正常化, 蘇·北韓關係의 好轉, 中·北韓間의 緊張이라는 關聯 3 國間의 雙務關係가 作用해 왔지만, 間接的 要因으로서는 이들 3 國에 대한 美·日의 影響 또한 無視하지 못할 정도로 作用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間接的 要因인 美·日과 北方 3 國과의 雙務的 接觸·交流는 앞으로 더 活潑해 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80 年代들어 示顯된 中·蘇和解는 事實上 美國을 對象으로 이들이 戰略的인 利點을 獲得하려는 努力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指導者의 交替以來 擘劃할 만한 改革·開放政策을 展開하고 있는 中·蘇로서는 美國의 豊富한 資本과 先進技術의 導入을 통해 自國의 經濟發展을 圖謀하는데 最優先 順位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中·蘇와 美國과의 和解가 질실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地理的 近距離에 位置하고 있는 「經濟大國」日本과의 關係改善역시 中·蘇의 經濟難局을 解決하는데 큰 役割을 할 것이므로 이들 兩國은 이른바 「北方 3 國」의 一員인 日本과의 接觸·交流도 活性化할 수 있는 政策을 展開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부가하여 「北方 3 國」中 強大國인 中·蘇는 公히 制限的인 非政治的 次元의 經濟·文化·社會的部門의 接觸·交流이기는 하지만 이제까지 그들의 「盟邦」인 北韓과 敵對關係를 維持하고 있는 우리와의 關係改善을 圖謀할 것을 豫想할 수 있다.

왜냐하면 80年代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國力이 괄목할만큼 伸張하여 『新興工業國家』의 先頭走者로 浮上했을 뿐만 아니라 今番 서울올림픽을 통해 우리의 位相이 「亞·太國」의 主役으로 浮上하고 있음을 그들은 깊이 認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中·蘇는 공히 우리와의 接觸·交流를 漸高시킬 수 있는 各種 經濟誘引政策을 展開하고 있는 것이며, 이의 代表的 例가 바로 中國의 沿岸地帶 “經濟特區”의 擴大·開放과 關聯한 一連의 對韓國經濟接觸圖謀움직임이며, 蘇聯의 고르바초프가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행한 演說에서 示唆한 우리와의 經濟協力 內容이다.

이러한 中·蘇의 美·日·韓國等 「南方3國」에 대한 實利追求的 經濟一邊倒政策은 既存의 北方三角關係의 基本들을 弱化, 내지 瓦解시키는 變數의 하나로 作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注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이들 中·蘇가 「南方3國」과의 「經濟爲主政策」을 追求할 때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들간의 勢力均衡을 維持하는데 모든 戰略과 外交를 集中할 수 밖에 없으며, 그들은 南·北韓間의 關係惡化가 그들간의 衝突이나 對決을 追求하는 狀態로 進展되기를 不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도 中·蘇는 공히 그들의 同盟國인 北韓의 戰略的·地政學的 位置의 重要性때문에 적어도 外形上으로는 北方三角關係의 弱化 내지 瓦解를 惹起시킬 過度한 政治的 제스처를 쓰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中國은 自國의 核心的인 產業基地가 있는 滿洲가 北韓과 隣接해 있는 反面, 蘇聯 역시 極東시베리아地域의 中心地이고 太

平洋 艦隊의 前進基地인 블라디보스톡이 北韓과 隣接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理由때문에 中·蘇는 各己 北韓을 자기편으로 誘導하기 위하여 戰略的 競爭을 벌여왔던 것이며, 만일 中·蘇가 軍事的으로 衝突하게 될 경우, 北韓이 이들 兩國中 어느 國家의 편에 서게 될 것이냐 하는 점은 “死活이 걸린 問題”로 浮上하기 때문이다.

즉 北方 3 國中 弱小國인 北韓의 立場은 차치하고라도 中·蘇兩國의 立場에서 볼 때 각기 北韓의 어느 國家와 同盟을 締結하여 自國을 敵對國으로 볼릴 경우 死活的 國家利益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바, 이렇기 때문에 中·蘇는 各己 우선 北韓을 自國의 統制下에 두려는 政策을 견지할 것은 明白하다고 하겠다.

또 하나 우리가 北方 3 角關係의 變化展望을 하는데 있어 考慮해야 할 核心的인 要因은 바로 中·蘇間의 國家利益 對立과 衝突을 바탕으로 한 葛藤 및 反目現象이다. 兩國指導者의 交替以來, 특히 고르바초프의 登場以來 中·蘇間 和解의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前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政治·社會·文化的 要因의 相違와 國際情勢觀의 差異, 隣接大國으로서의 不可避한 國家利益의 相衝等 諸般要素를 勘案할 때 中·蘇間 關係改善은 劃期的으로 進展되거나 항구적인 同盟國關係로 浮上하기는 現實的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結局은 “制限的 範圍”內에 머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中·蘇關係의 改善展望을 이렇게 限定的인 次元에서 考慮하더라도, 이들 兩國이 지나친 葛藤이나 反目이 없이 關係改善을 持續한다면 같은 「北方 3 國」中 하나인 北韓에게는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

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北韓은 中·蘇를 對象으로 하여 이른바 伸縮的인 「양다리 外交」를 展開해 왔으나 中·蘇가 和解를 이룩한다면 이러한 伸縮的인 政策을 구사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는 곧 現實的으로 北韓 對外政策 行動半徑의 縮小 내지 制限이라는 現象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익히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40餘年間に 걸친 長期獨裁體制를 維持해 오고 있는 北韓은 「自力更生」의 基調下에 中國으로부터는 經濟的 受援과 革命的 同盟關係를 名分으로 해 왔으며, 蘇聯으로부터는 軍事的 支援을 받아왔다. 그러나 극도의 軍費增強爲主政策과 閉鎖的인 經濟體制 때문에 經濟가 落後되어 날이 갈수록 우리와의 國力隔差가 심화되고 있어 그들의 同盟國인 中·蘇로부터 實用主義的 改革·開放政策 導入壓力도 적지 않게 받고 있는 實情에 있는 것이다.

「반등會議」를 起點으로 하여 中國이 政治的 強大國으로 浮上하기 始作하면서 共產陣營과 第3世界에 대한 中·蘇對立 또는 競爭으로 表出되었고, 北韓에 대한 戰略的 利害關係에 있어서도 中·蘇가 競爭的 立場을 취함에 따라 그 構造內에서 적지않은 變化, 즉 때로는 緊密한 關係를 그리고 또 때로는 弛緩된 關係를 維持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北方3角關係는 그들이 모두 共產主義國家로서 同盟關係를 維持하고는 있으나 國益의 差異, 傳統的 要因의 相違때문에 적지 않은 葛藤을 겪을 蓋然性은 있으나 現實에 適應하며 各自의 實益을 追求하기 위해 自制, 協力하는 側面을 강하게 露呈시킬 것으로 보인다. 즉 적어도 外形的인 面에서는 굳건한 同盟體制

를 維持함으로써 強大國인 中·蘇는 北韓이 갖고 있는 地政學的 戰略的 特性을 損傷시키지 않으려 할 것이다.

또한 政治·理念的인 側面에서 볼 때에도 이들은 공히 「마르크스·레닌주의」와 共產黨의 支配體制라는 共通要素를 갖고 있기 때문에 社會主義陣營 國家로서의 連帶性 強化를 圖謀할 것이며, 隣邦 國들로서의 經濟交流 協力の 利點 및 必要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간 敵對行爲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北方3國間의 雙務·多者關係는 때로는 葛藤과 反目을 겪으면서도 이를 克服하면서 繼續 接觸·協力하는 가운데 社會主義 陣營國家들끼리의 陣營外交強化, 總體的 安保態勢를 共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에서도指摘한 바와 같이 中·蘇의 改革·開放政策의 持續的 推進과 이에 關聯된 美·日·韓國과의 經濟協力을 圖謀할 수밖에 없는 「當爲的 實利」때문에 이들 北方3角關係는 적지 않은 이완상태를 示顯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날이 갈수록 「閉鎖와 孤立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北韓의 對內的 狀況變化가 이들 3國間의 關係를 促進 또는 이완시키는 作用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第6共和國의 出帆以來 보다 積極적이고 能動的인 次元에서 展開하고 있는 우리의 「北方政策」이 나타내고 있는 이들 3國에 대한 波及效果 역시 하나의 變因으로 作用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下 北韓·蘇聯, 北韓·中國, 中國·蘇聯이라는 雙務的 關係에 대해 概괄적으로 眺望함으로써 北方3國關係 變化推移를 敷衍展望하기로 한다.

1. 北韓·蘇聯關係의 變化展望

北韓과 蘇聯關係는 1984年 5月 金日成의 訪蘇를 契機로 決定的인 轉換이 이루어진 後, 특히 經濟와 軍事部門을 中心으로 큰 進展이 있었다. 이러한 關係改善의 背景에는 蘇聯의 亞·太地域에 있어서의 影響力 擴大라는 政策目標가 介在되어 있는 바, 우선 蘇聯은 同地域 同盟國들과의 關係結束을 통해 美·日·中 3角協力體制를 軸으로 形成된 亞·太地域 勢力圈에 對抗하려 하고 있으며, 그러한 “東方攻勢”에 대한 橋頭堡의 하나로써 北韓을 利用함과 同時에 蘇聯-極東-北韓-베트남을 잇는 새로운 戰略網의 構築을 圖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蘇聯의 戰略構想은 對北韓 軍事支援을 代價로 한 蘇聯軍用機의 北韓領空通過權 獲得과 같은 北韓·蘇間 軍事的 協力緊密化 現象을 가져왔던 것이며, 蘇聯이 亞·太地域 國家로서의 浮上示顯과 政治·軍事的 進出을 위한 橋頭堡로서 北韓을 利用하려고 하는 한 앞으로 더욱 擴大될 것임을 豫見할 수 있다.

그러나 蘇聯의 北韓에 대한 지나친 軍事支援은 周邊國, 특히 日本과 中國의 憂慮를 惹起시킴으로써 蘇聯이 追求하는 亞·太地域 安定化政策에 否定的 影響을 미치게 되며, 또한 美·日·中 및 韓·美·日 安保協力體制를 더욱 促進시키는 惡循環을 가져올 可能性이 濃厚하기 때문에 韓半島의 軍事的 均衡關係에 대한 蘇聯의 認識에 따라 그 정도에 伸縮性이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蘇聯은 韓半島의 軍事的 均衡이 우리側에 一方的으로 有利하게 기운다고 認識하지 않는 한 對北韓 軍事的 紐帶를 「攻撃的」이라기 보다는 「防禦的」次元에서 維持함으로써, 周邊國들의 憂

慮를 불식시키는 가운데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통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經濟難局의 克服을 圖謀하는 한편 北韓의 모험주의를 견제하는 政策을 展開할 것으로 보인다.

즉, 蘇聯은 韓半島의 軍事的 均衡維持라는 政策基調하에 對北韓 軍事協力體制를 維持하면서 同時에 北韓과의 經濟的關係 擴大에 치중함으로써 兩國間 友好關係를 維持할 것으로 展望된다.

특히 昨今の 고르바초프 蘇聯黨書記長의 北韓訪問說은 89年 5月頃의 中·蘇頂上會談을 前後하여 實現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때 蘇聯은 極東開發에 따르는 障礙除去를 目的으로 北韓에게 改革을 促求하여 閉鎖體制 脫皮를 誘導하고,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의 與否는 우리에게 큰 關心事가 되고 있는 것이다.

結論적으로 北韓과 蘇聯關係는 80年代 初盤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形成되고 있는 中·聯間의 和解雰圍氣에 따라 이전처럼 北韓이 中·蘇에 대한 伸縮的인 「양다리外交」를 구사할 行動半徑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는 制限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自主路線의 維持와 經濟發展을 위한 蘇聯으로부터 軍事·經濟援助가 必須的인 北韓으로서는 그들이 當面하고 있는 對內外的인 懸案問題를 解決할 때까지는 그리고 蘇聯의 立場에서도 그들의 經濟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前提條件으로서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이 必要하기 때문에 當分間은 現狀態를 維持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고르바초프가 執權하고 있는 蘇聯이 생각하고 있는 이른바 「朝·蘇協力」은 改革主義的인 北韓, 開放主義的인 北韓, 共存的인 北韓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直·間接 影響力을 行使할 것으로 豫

見되는 것이다.

그리고 中·長期的 觀點에서 볼 때 北韓은 蘇聯과의 密着關係를 벗어나 이전처럼 對中·蘇 등거리외교를 回復하고 強大國들의 韓半島 緊張緩和의 努力이 加重됨에 따라 中國方式의 開放政策을 圓용하여 對西方 接近을 통한 先進技術과 資本의 導入에 力點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1984年以後부터 눈에 띄게 密着된 北韓과 蘇聯關係가 持續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展望을 하게 하는 原因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바, 그 要諦는 北韓內部的 金正日에의 權力承繼過程에서 나타나는 權力關係와 극심한 經濟水準의 落後性을 克服하기 위해 展開될 北韓政策의 向方과 蘇聯의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思考」에 입각한 對外政策의 基調維持가 關鍵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2. 北韓·中國關係의 變化展望

北韓과 中國關係는 1950年代末부터 惹起된 中·蘇間 葛藤現象이 反目과 對立關係로 惡化되어가면서부터 時期別로 때로는 密着關係를, 그리고 또 때로는 疎遠한 關係를 維持하는 등 같은 共產陣營國家인 蘇聯의 對北韓政策 基調에 따라 적지않은 起伏을 보여왔다.

그러나 80年代 初盤에 접어들면서부터 中·蘇關係가 和解徵候를 보임에 따라 北韓外交의 伸縮的인 對中·蘇 選擇幅이 좁아지고 있음은 既述한 바와 같다.

이제까지 北韓의 對中國關係는 蘇聯에 비하면 比較的 沈滯해 왔고 그 經濟關係는 劣勢에 처해 있었다. 특히 1984年부터 北韓이 蘇聯과 密着된 軍事的 紐帶關係를 示顯하자, 中國은 自國의 安全保障

과 平和維持에 대해 큰 威脅認識을 갖고 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方案의 일환으로 지난 87年 5月 金日成의 北京訪問을 受諾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北韓도 비록 最近에 들어와 蘇聯으로부터 必要한 武器와 經濟援助를 받으면서도 내심으로는 中國과의 원만한 關係를 維持함으로써 國益을 圖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北韓은 中國을 같은 同盟國이면서도 傳統的·軍事·外交的 基軸을 달리하는 蘇聯을 의식하여 兩國關係에 적지않은 부침을 維持해 왔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中國이 當面하고 있는 最優先課題는 經濟改革과 開放化이기 때문에 그들은 周邊情勢의 安定化를 회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蘇聯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으나, 그 強度面에서 볼 때 蘇聯의 改革意志보다는 中國의 그것이 한수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中國의 對北韓政策은 傳統的 友好關係의 持續이라는 脈絡下에서 韓半島情勢의 安定化를 圖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西方, 특히 美·日과 北韓과의 關係改善을 통한 仲裁者的 役割을 自任하고 있으며 南北對話등 南·北韓關係 正常化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中國이 이제까지 美·日の 對北韓 孤立化政策을 비판하고 中·蘇의 對韓國關係改善 이전에 美·日の 對北韓 政策緩和의 선행을 促求해 온 理由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脈絡에서 볼 때 中國의 韓半島問題 解決을 위한 仲裁者的 役割은 中國自身の 經濟現代化를 達成하는데 必須的인 機能을 하

는 것이라 할 수 있겠으며, 날로 硬直·閉鎖化되고 있는 北韓으로 하여금 무모한 武力南侵의 妄想을 버리고 「對話의 廣場」에 나올 수 있게 하는 波及効果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中國은 北韓에 대한 經濟援助를 強化시킴으로써 北韓·蘇聯關係의 緊密化 趨勢에 相應하는 한편 傳統的인 紐帶關係를 實證的으로 뒷받침하면서 對韓國關係 增進에 대한 北韓의 반발을 무마시키고자 하는 政策性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向後 中國의 對北韓關係, 주로 經濟援助를 中心으로 한 것이 되겠지만—는 強化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豫測은 中·北韓이 長期協定の 締結에 의해 安定된 協力基盤을 構築해 놓았음은 물론 北韓이 中國의 經濟特區에 第3國 商社들과의 合作會社 및 北韓商社 常駐事務所設置를 積極 推進하고 있는데서 그 片鱗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向後 北韓과 中國關係는 蘇聯의 對北韓 軍事密着關係에 副應하여 같은 脈絡下에서 強化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적어도 表面的으로는 中國은 우리와의 非政治的 次元에서의 經濟接觸·交流擴大를 무마하기 위한 方案의 일환으로 北韓의 對南·對美提議등 對外政策이나 立場을 積極 支持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副應하여 北韓 역시 對西方關係 設定問題등 政治·外交的分野에서 中國과 協力を 強化하는 方向으로 關係를 發展시킬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短期的인 觀點에서의 北韓·中國關係는 理念이나 路線上的 葛藤, 韓·中國間의 直·間接關係 發展, 美·中國間 關係의 發展 등 諸般要因 때문에 적지않은 葛藤을 겪을 수 있는 餘地는 常存해 있다고 하겠다.

長期的인 觀點에서의 北韓·中國關係는 兩國 모두가 經濟沈滯 및 落後라는 共通分母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克服하기 위한 方案으로서 對西方, 특히 美·日의 豊富한 資本과 技術水準을 導入할 可能性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兩國間 이러한 共通分母的 認識을 傳統的 要素의 類似성과 地理的 近接要因이라는 『+ a』가 作用하여 더욱 擴大될 것으로 展望된다.

結論的으로 北韓과 中國間的 雙務關係는 周邊狀況이나 그들 國家內部的 事情等 對內外的 狀況의 變化 蓋然性에 따라 적지않은 問題點이 있을 것이나 대체적으로 友好關係는 繼續 維持될 것이며, 특히 근년의 北韓·蘇聯間 軍事的 紐帶強化라는 雙務的 關係가 弱화될 相當期間 以後에는 다시금 「蜜月關係」를 維持할 可能性도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적으로 改革·開放의 물결을 먼저 맞이한 中國의 「實用路線」을 同盟國인 北韓이 모방·원용하거나 中國이 北韓에 대해 說得·勸誘하는 方式으로 展開될 것임을 豫告하는 것이기도 하다.

3. 中國·蘇聯關係의 變化展望

蘇聯의 고르바초프體制가 등장하면서부터 中·蘇關係는 새로운 轉換機를 맞고 있음을 前章에서 살펴보았다. 이들 兩國은 지난 50年代末부터 始作된 「理念論爭」을 거쳐 같은 共產陣營國家이면서도 對內外政策 基調面에서 적지않은 葛藤과 紛爭을 겪어 왔으며, 급기야는 「中·蘇同盟」의 廢棄라는 最惡의 狀態로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80年代 初盤에 접어들면서 차츰 好轉되기 始作한 兩國關係는 고르바초프政權의 積極的인 平和攻勢와 美國의 레이건大統領

의 政治的 立場이 複合的으로 作用하여 새롭게 形成되고 있는 美·蘇間 和解局面에 힘입어 비록 그 速度는 완만하나 關係回復의 段階로 進入하고 있으며, 이는 89年 5月로 豫定된 「中·蘇頂上會談」의 開催를 통해 더욱 改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中國과 蘇聯은 그동안 이른바 「3大障礙要素」의 根本的 解決을 둘러싸고 극심한 反目과 對立現狀을 示顯해 왔으나, 蘇聯側의 積極적이고 과감한 양보조치로 인해 그 타결의 기미가 濃厚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兩國은 공히 「實用主義的 路線」에 입각한 改革·開放政策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同志愛」를 共有하고 있기 때문에 「經濟發展」을 위한 對西方圈 接觸, 특히 美國과 日本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非政治的 接觸이나 交流에도 그 脈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犬猿之間」的 關係를 漸進的으로 脫皮하면서 「새로운 同盟關係」形成의 可能性을 길게 示唆하고 있다.

以外에도 兩國關係의 正常化는 그동안 軍事的으로 緊張狀態를 維持해 온 7,500 km에 달하는 國境地帶에 앞으로 平和가 保障될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中·蘇는 공히 여기에서 거두어들이는 負擔을 그들이 現在 推進中인 經濟改革에 集中시킬 것으로도 展望되기 때문에 兩國關係 改善의 前途는 밝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中·蘇는 經濟協力部門에서 다른 어떤 國家보다도 有利한 條件을 共有하고 있기 때문에 兩國關係는 다른 어떤 部門보다도 밝은 展望을 提示해 주고 있다.

즉, 蘇聯은 中國이 生産하는 食品 및 紡織製品의 손쉬운 消費市場일 뿐만 아니라 中國이 必要로 하는 大型機械, 트랙터, 木材, 石

油, 가스, 電力의 生産에 必要한 技術을 提供할 수 있기 때문에 兩國은 相互 物物交換을 할 수 있는 좋은 位置에 있다. 反面 中國은 蘇聯과의 交易에 있어 陸上交通을 利用할 수 있는 利點이 있고, 陸路로 유럽과 連結시킬 수 있는 利點 그리고 蘇聯의 시베리아와 極東地域을 開發하는데 必要한 勞動力의 供給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兩國間의 經濟交易은 매우 밝은 「青信號」를 提供하고 있는 것이다.

즉, 中·蘇의 政策이나 經濟動向등을 綜合적으로 考慮해 볼 때 兩國間 經濟交流는 擴大될 展望이며, 이러한 活潑한 經濟交流는 종국적으로 兩國關係 改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中國은 親美 反蘇政策의 追求로 美國으로부터 相當한 規模의 軍事·經濟的 援助를 받을 수 있었고, 西方과의 經濟的 紐帶關係를 심화시킴으로써 現代化에 有利한 條件을 형성해 왔으나, 蘇聯과의 緊張關係를 繼續 維持해 나가는 경우 그 反作用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蘇聯과의 緊張關係 持續은 國防豫算의 削減을 어렵게 할 것이며, 國防費의 過多支出은 結局 「4個現代化」計劃의 推進을 어렵게 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蘇聯의 경우도 大差가 없을 것이나, 특히 中國은 極端的인 反蘇政策을 止揚하고 蘇聯과의 妥協을 추구해 가면서 對蘇 和解政策을 보다 漸進적으로, 즉 「制限된 和解」의 方向에서 摸索해 갈 것으로 展望된다.

그리고 向後 中·蘇關係 改善의 基本方向은 「黨과 黨」間의 紐帶回復보다는 「國家 對 國家」의 關係改善에 優先順位를 두게 될

것이며, 兩國間에 개재하는 敏感한 政治·地政學的인 問題의 조속한 解決보다는 現實的 與件에서 보다 쉽게 解決할 수 있는 非政治的 領域에서의 關係改善에 큰 比重을 두는 「政經分離」의 原理에 입각한 漸進的인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兩國間에 뿌리깊게 개재해 있는 要因, 즉 歷史·民族感情上의 矛盾, 根本的 解決이 어려운 領土變更問題, 아프칸·인도지나 등 地政學的 與件, 中國의 現代化를 위한 對西方 經濟協力關係의 심화로 인한 對蘇關係 改善의 제약성 등 諸般要因을 考慮할 때 中·蘇關係는 1950年代의 同盟期와 같은 蜜月關係로 復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모든 面을 綜合해 볼 때 結局 中·蘇兩國은 自國의 利益을 위하여 앞으로도 關係改善 努力을 繼續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現實的으로 極히 制限된 範圍內에서의 漸進的 關係改善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제약성을 內包하고 있다고 要約할 수 있겠다.

IV. 結論(對策 및 政策方向)

IV. 結論(對策 및 政策方向)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80年代 中盤에 접어들면서 美·蘇를 주축으로 한 世界秩序 構圖는 政治·이데올로기적으로 극심한 對立과 반목을 示顯하던 冷戰構造에서 緊張緩和와 和解를 摸索하는 가운데 이른바 “新데탕트”의 기류를 形成하고 있으며, 이는 곧 韓半島 周邊에 포진하고 있는 4大強國間에도 適用되어 “緊張緩和”를 摸索하는 變化의 폭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독 같은 民族인 北韓側은 날이 갈수록 “閉鎖와 孤立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어 韓半島周邊 情況에 暗雲을 드리우고 있다. 40여년간에 걸친 1人 長期獨裁와 監視·統制體制를 堅持하고 있는 北韓의 “全韓半島의 共產化”를 위한 基本戰略은 예나 다름없이 한층 強化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同盟國인 蘇聯과 前例없는 “軍事的 癒着象”을 示顯하고 있어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第6共和國의 出帆과 함께 積極적이고 能動的인 次元에서 새롭게 展開하고 있는 우리의 다각적 北方政策은 그들의 同盟國인 中·蘇는 물론 東歐圈國家에 이르기까지 큰 反響을 불러 일으켜 비록 非政治的 次元의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와의 接觸·交流擴大를 圖謀하고 있는등 『東·西』間的 광목할 만한 變化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88 서울올림픽의 成功的開催를 통한 우리의 國際的 位相은 北韓과의 國力隔差를 深化시키고 있어 北韓으로 하여금 일말의 焦燥感까지 갖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世界秩序의 和解局面으로의 轉換과 우리의 國力伸張은 韓半島 分斷以來 南·北韓을 基軸으로 形成·維持되어 온 『北方·南方』 3각관계의 基本構圖에도 적지 않은 影響을 미쳐, 이제는 어떤 政治·이데올로기적인 “梗塞된 圖式”만으로 解釋하기는 어려운 복잡미묘한 양상을 示顯하고 있는 것이다.

즉 韓半島를 위요하고 있는 周邊 4強이 공히 韓半島에서의 제 2의 戰爭을 야기시킬 극심한 葛藤과 緊張을 不願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이들 4강의 “自國實利”를 圖謀하는 對外政策基調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의 代表的 예가 바로 본 研究報告書의 主題인 “北方三角關係”인데, 北韓과 中·蘇로 이루어진 北方 3國은 시일의 흐름에 따라 적어도 外形적으로는 그 基本構圖를 維持하고 있지만, 그 내실에 있어서는 美·日과 中國關係의 好轉, 우리와 中·蘇間의 接觸 움직임, 그리고 이에 相應한 北韓과 美·日間의 接觸 움직임등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北方 三角關係는 中·蘇關係의 正常化, 北·蘇關係의 好轉, 北·中關係의 緊張이라는 形態를 띠고 時期別로 形成, 展開되어 왔는바, 최근 2~3年間에 北韓을 中心으로 한 北方 3角關係의 展開樣相은 비교적 安定된 가운데 全般的으로 北韓의 對中·蘇關係가 均衡狀態를 維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그 實際的面에 있어 基本構圖는 매우 弱化, 瓦解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바, 이곳에서는 이러한 北方 3角關係의 變化가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을 개관하고, 이어 보다 効率的인 北方政策 推進을 통해 우리의 최대과제인 平和統一

을 達成하기 위한 韓半島의 平和定着, 그리고 對共產圈과의 交流를 통한 國益增大를 達成할 수 있는 우리의 바람직한 對策 및 政策 方向을 講究해 보고자 한다.

1.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現下의 北方 3角關係는 蘇聯과 北韓의 軍事的 密着이라는 雙務關係의 形成을 큰 特性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現象은 北韓의 對中國關係 改善이 均衡을 이룰때까지 당분간 持續될 것으로 보인다.

蘇聯과 北韓이 이러한 軍事密着關係를 계속 維持할 경우 北韓은 1960年代末과 같이 우리나라와 美國에 대한 武力挑發을 強化시킬 可能性이 漸高해질 수 있다.

물론 北韓의 對蘇密着을 견제하기 위해 中國을 위시한 美·日 등 關聯國家는 北韓과의 接近을 통한 多角的인 影響力을 行使할 것으로 기대되나, 對內外的 『딜레머』에 逢着하고 있는 北韓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무모한 對南策動 및 武力挑發을 自行할 可能性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그리고 美·日을 위시한 西方國家들이 北韓과의 多角的 接近을 시도할 경우 이들 國家들과 우리나라는 적지 않은 戰術上的 摩擦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

또한 蘇聯과 北韓이 이러한 密着된 軍事關係를 계속 維持할 경우 같은 同盟國인 中國은 北韓에 대한 不滿의 表示로 우리나라와 보다 積極的인 接近을 시도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蘇聯도 우리와의 關係發展보다는 北韓과의 關係緊密化가 그들의 戰略的 價

價를 높여준다고 判斷한다면 최근에 들어 示峻하고 있는 우리와의 經協示峻 움직임을 철회하고 우리와의 적대 관계를 變更시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北韓에 대한 偏向政策으로 인해 韓半島에서 緊張이 高潮되면 고르바초프의 執權以來 多角的으로 구사하고 있는 經濟發展을 위한 改革·開放政策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모처럼 이룩한 그들의 『平和이미지』가 損傷될 소지가 많으므로 蘇聯으로서는 慎重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警戒해야 할 점은 蘇聯과 北韓間의 關係가 密着되고 있는한 北韓은 南北對話를 가장하여 적절한 平和攻勢를 強化하거나, 아니면 蘇聯의 先進 軍事裝備로 무장하여 모험주의적 路線을 堅持할 可能性도 매우 크다는 점이라 하겠다.

이어 中·長期的 觀點에서 中·蘇關係가 점차 改善되어 “새로운 同盟國”으로서 維持된다면 北韓으로서는 이전처럼 “양다리外交”를 展開할 對外政策의 選擇幅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므로 이른바 “主體外交”를 強化할 可能性도 漸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中·蘇間에 和解가 이루어지고 北韓의 對中·蘇關係가 均衡을 이룰 경우 北方 3國은 “새로운 3國關係” 形成을 통해 그들간의 연대를 強化하면서 對自由陣營國家 戰略을 共同으로 樹立할 可能性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곧 우리의 對中·蘇接近에 적지 않은 沮害要因을 提供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中·北韓關係가 改善되어 北韓의 對中·蘇關係가 均衡을 이룬다면, 우리와 中國間의 非公式關係는 다소 鈍化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곧 中國이 또 다시 駐韓美軍撤收나 高麗聯邦制

지지강화등 北韓의 立場이나 政策을 對外的으로 強力히 支持, 옹호하는 事態를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고르바초프가 執權하고 있는 蘇聯의 平和攻勢가 北方 3角關係의 公高화, 즉 中國과 和解를 摸索하면서 더욱 強化될 경우 韓半島에서의 美軍撤收와 南北韓間의 軍備減縮을 主張하는 北韓의 立場과 맞아 떨어지면서 더욱 그 攻勢가 거세어질 것으로 豫想된다고 하겠다.

結論적으로 北方 3角關係의 새로운 展開, 즉 北方 3國이 걸어서는 공히 공고한 同盟體制를 維持하면서도 內心으로는 “自國의 實益”을 摸索하는 가운데 波及될 韓半島의 周邊情況은 쉽게 樂觀해서는 안될 우리의 平和와 安定에 큰 影響을 주고 要因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러한 推移를 綿密히 檢討·分析해야 할 것이며, 만일의 事態에 對備하여 적절한 事前對策을 樹立해야 할 것이다.

2. 對策 및 政策方向

北方 3角關係의 變化推移중 가장 關目할 만한 것으로는 北韓과 蘇聯의 軍事的 密着인 바, 최근 報道된 바와 같이 北韓이 蘇聯으로부터 최신의 兵器와 막대한 軍援을 받음으로써 그것이 韓半島의 安全과 平和에 크나큰 威脅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럼에도 不拘하고 우리가 蘇聯이나 北韓 그리고 中國에 대해 취할 수 있는 措置는 극히 限定되어 있기 때문에 현 周邊情勢의 推移를 綿密히 檢討·分析하여 적절히 對處할 수 있는 方案講究나

對策을 樹立해야 할 것이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友邦國인 美·日과의 傳統的 유대 관계를 強化함으로써 蘇聯과 中國의 軍事·經濟的 庇護를 받는 北韓이 무모한 武力南侵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對美關係에서는 通商摩擦, 國內에서의 部分的 反美現象, 駐韓美軍 駐屯에 따르는 防衛費分擔 問題로 약간의 不協和音이 일고 있지만, 北韓의 戰爭挑發 抑制를 위하여 美國으로 하여금 對韓軍事支援 強化와 防衛意志를 더욱 確固히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韓半島의 有事時 美國이 具體的으로 우리를 支援할 수 있는 보다 「確固한 채널」을 韓·美間 協議를 통해 構築해야 할 것이다.

한편 美國으로 하여금 中國과 함께 南·北韓을 段階的으로 交叉接觸 및 承認하도록 對中國 積極的 外交를 展開하도록 要請하는 한편, 우리의 地政學的·戰略的 重要性을 再認識시켜 軍備現代化 및 정예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 對日本 對策으로는 日本이 中國과 함께 南北韓을 段階的으로 交叉交流·接觸할 수 있도록 對北韓 接近을 제한 유도해야 할 것이며, 韓·日間 새로운 安保協力 方案의 講究를 통한 東北亞의 安定과 平和圖謀, 그리고 蘇聯의 南進政策 견제를 위한 日本自衛隊의 軍事力 增強을 警戒하는 한편 유사시 대한해협 및 동해등을 封鎖하려는 日本과의 軍事協力에 관한 事前協議 및 措置를 講究해야 할 것이다.

이어 北方 3國中 強大國인 中·蘇에 대한 적절한 對策講究를 摸索해야 할 것이다. 즉 中·蘇와의 關係改善을 어떻게 韓半島 安全과 平和에 有利하게, 그리고 外交的 實利에 알맞게 推進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어 보다 伸縮的인 對策을 講究해야 할 것이다.

中·蘇는 모두 國內政治·經濟的 이유때문에 軍事的 緊張緩和를 추구하고 있으며, 周邊國들과의 關係改善 및 正常化를 追求해야 할 要件을 갖고 있기 때문에 韓半島에서 “제 2의 戰爭”을 不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공히 北韓의 同盟國으로서, 後援國으로 存在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특별한 事情이 없는 한 그러한 關係를 계속할 것이므로 우리로서는 앞서 밝힌 美·日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이들 國家와 接觸·交流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選擇이란 中·蘇와 非政治的 分野, 그중에서도 특히 經濟分野를 爲主로 해서 점진적 關係改善을 追求하면서 이와 同時에 이들 두 國家가 南·北韓關係 改善과 正常化에 기여할 수 있도록 誘導하는 北方政策을 보다 積極的이고 伸縮的으로 展開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韓·美安保協力 및 對日本關係를 해치지 않는 範圍內에서 北方政策의 행동반경을 점차 擴大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對北韓 政策樹立과 接觸에 있어서도 보다 前向的이며 伸縮的인 姿勢를 堅持해야 할 것이다.

또한 現今의 蘇·北韓 密着期를 利用하여 우리의 對中國 關係改善 努力을 보다 積極的으로 展開해야 할 것이다.

中國은 4大 現代化的 成功的 推進을 위해 우리의 資本과 技術을 要請하고 있는 實情에 있으므로 이 機會를 적절히 利用하여 우리企業이 中國의 『經濟特區』에 進出할 수 있는 對內外環境을

造成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中國은 그들의 同盟國인 北韓과 第3世界國家들을 意識하여, 우리와의 關係에서 非公式 接觸·交流의 限界를 벗어나리 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점을 適宜 勘案하여 對策을 樹立해야 할 것이다.

다음 蘇聯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가급적 政府次元에서는 蘇聯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止陽하고, 蘇聯의 政策變化에 대한 關心과 研究를 漸高시켜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蘇聯으로 하여금 北韓이 開放이나 武力南侵 기도를 포기할 수 있도록 說得·勸誘하는 間接的 効果도 거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蘇聯의 廣大한 시베리아나 연해주지역에의 우리企業 進出에 따른 國益增大 方案도 現實化시켜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장래 언젠가 있을지도 모를 蘇聯과의 外交關係를 考慮하여 사할린 교포를 비롯한 蘇聯內 각 自治共和國에 있는 우리 僑胞問題 그리고 非政治的, 經濟的 次元에서의 交流增進을 위한 우회적·중계적 接觸 方案의 摸索도 必要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이 갈수록 好戰性을 보이고 있는 北韓에 대해서는 蘇聯과의 軍事密着을 통해 야기될지도 모르는 武力南侵에 對備, 이의 저지능력 배양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면서도 우리民族의 지상과제인 “平和統一”의 達成을 위한 테이블에 北韓이 나올 수 있도록 꾸준한 끈기와 인내를 갖고 보다 伸縮的인 次元에서 南·北韓 接觸이나 對話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對策의 樹立을 통해 北方 3角關係의 變化展望에

適切하고도 有用性있게 對處함으로써 우리는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圖謀할 수 있는 基盤을 構築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考慮해야 할 것이다.

우선 최근에 들어 비교적 安定된 基調를 보여주고 있는 北方 3角關係에 대한 보다 精緻하고 綿密한 情報蒐集 및 分析을 기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의 擴大, 補強을 해야 할 것이다. 즉 이제까지는 北方 3國에 대한 研究가 政府의 關聯部處 및 大學의 各급 研究所, 그리고 經濟機關이나 研究團體 등에서 部分的, 散發的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 分析이나 對策方向이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였고, 그 內容에 있어서도 상이한 점이 不少하였다.

따라서 今後에는 이를 專門的으로 研究·分析하는 專門機關을 既存의 機構에 統合, 擴大하거나 關聯機關間의 緊密한 協助體制 維持를 기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調査, 分析要員의 精銳化를 위한 持續的 教育·訓練 및 研究風土 造成을 위한 制度的 支援裝置의 先行등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명한 격언인 “國際政治에 있어서는 영원한 敵도 그리고 또 영원한 友邦도 없다”가 示唆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自主的 安保力量을 強化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88년 서울올림픽의 成功的 開催後 國內에서 일고 있는 中·蘇등 共產國家에 대한 막연한 期待나 성급한 判斷을 止揚해야 할 것이다.

즉 그들은 自國의 經濟的 實益의 必要를 充足키 위해서 우리와의 接觸·交流를 圖謀할 뿐이지, 그들은 아직까지도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基礎한 社會主義 國家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周邊情勢에 대한 希望的 思考나 경직된 悲觀的 思考는

止揚해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의 바람직한 政策方向을 樹立하기 위해서는 強大國間의 外交戰爭에서 이길 수 있는 國力の 培養이 前提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韓半島를 위요한 外部의 威脅을 沮止하고 抑制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아닌 우리의 國內的인 內部構造와 國民의 結束을 圖謀할 수 있는 內部力量의 強化라고 하겠다.

즉 우리나라는 1980年代에 접어들면서 社會一角에서 대두되고 있는 體制否定과 일련의 民主化運動을 積의 수렴, 自由民主主義 國家로서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굳건히 다지는 것이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重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 바, 이를 통해 우리는 國論集結과 民族의 生存權을 보위하기 위한 自主力量 態세를 完備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對外的인 信賴度도 提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南·北韓 平和統一의 達成을 위한 大前提이기도 한 것이다.

結論的으로 向後的 北方 3角關係 變化에 適切히 對備할 수 있는 우리의 對策講究는 東北亞의 平和와 安保, 그리고 우리의 生存權과 直結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를 위해 최선의 努力을 경주해야 할 것인 바, 보다 伸縮的이고 効率的인 次元에서 中·長期的인 觀點(Paradigm)을 가지고 北方政策과 우리의 對友邦政策을 推進해야 할 것이다.

〈附錄 A〉

---(關聯 參考文獻 目錄：가나다順)---

單 行 本 類

論 文・記 事 類

其 他

※ 附錄 A(關聯 參考文獻 目錄：가나다順)

< 單行本類 >

1. 경향신문사, 向後 10 年の 國家發展戰略, 1984.
2. 구천서 譯, 韓半島問題의 새로운 認識, 온누리, 1987.
3. 國防部, 韓半島 및 東北亞 軍事情勢 資料集, 1988.
4. 國際問題調查研究所, 1988 年度 東北亞 安保環境, 1988.
5. 國土統一院, 고르바초프의 對外政策 資料集：北方政策研究 資料 시리즈 III, 1988.
6. 國土統一院, 南北韓 政治狀況 變化樣相의 長期豫測, 1985.12.
(對外秘)
7. 國土統一院, 北韓 金正日 世襲體制의 政策方向研究, 1987.7.
8. 國土統一院, 南北韓 外交力量 變化趨勢豫測, 1985.11.(對外秘)
9. 國土統一院, 北方政策 推進에 있어 提起되는 國際·國內法的 諸問題：北方政策研究資料 시리즈 IV, 1988.
10. 國土統一院, 北韓의 統一·外交·經濟政策(國際學術會議 北韓側 發表 論文), 1987.7.
11. 國土統一院, 分斷體制의 狀況과 民族統一의 摸索,
1987.11. (對外秘)
12. 國土統一院, 社會主義 諸國의 經濟現況 變化가 北韓經濟에 미칠 影響, 1986.12.
13. 國土統一院, 서울올림픽關聯 研究報告書, 1988.3. (對外秘)
14. 國土統一院, 蘇聯의 改革·開放과 韓半島：北方政策研究資料 시리즈 I, 1988.

15. 國土統一院, 蘇聯의 對韓半島政策, 1986.10.
16. 國土統一院, 蘇聯의 新亞·太政策 檢討: 고르바초프, 블라디보스톡 宣言과 關聯, 1986.8.
17. 國土統一院, UN 同時加入 이후 南北韓關係 정립, 1987.8. (對外秘)
18. 國土統一院, 轉換期の 韓半島 平和와 統一(第3回 在美學者 招請 統一問題 學術會議 論文集), 1987.8.
19. 國土統一院, 周邊 4大國의 對韓半島政策, 1984.4.
20. 國土統一院, 中共概要, 1986.
21. 國土統一院, 최근 周邊 4強의 東亞細亞政策 推移가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1986.12.
22. 國土統一院, 최근 北韓의 政策方向 진단과 우리의 對應方案 摸索, 1987.4. (對外秘)
23. 國土統一院, 平和統一 基盤造成을 위한 北韓狀況 變化豫測: 分野別 變化狀況 長期豫測, 1986.1.(對外秘)
24. 國土統一院, 韓民族의 躍進과 發展方向, 1988.
25. 國土統一院, 韓半島: 開放化하는 東아시아와 南北對話, 1987.6.
26. 國土統一院, 韓半島關聯 資料集: '80年代 4強의 政策文獻, 1987.
27. 國土統一院, 韓半島의 將來와 日本의 安全保障: 北韓動向을 中心으로, 1986.9.
28. 國土統一院, 韓半島 周邊情勢의 中長期展望, 1987.
29. 國土統一院, 韓半島의 統一問題: 東京 國際學術 심포지움 發表論文, 1986.6.

30. 國土統一院, 韓半島의 平和와 統一環境研究: 北方政策研究資料 시리즈Ⅱ, 1988.
31. 國土統一院, 韓半島 平和安定과 國際的 保障體制에 관한 研究, 1986.2 (對外秘)
32.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韓半島 周邊情勢, 1987.
33. 金國振, 北方 3角關係와 蘇聯·베트남·中共間 3角關係의 比較 研究, 일해연구소, 1988.
34. 김상훈, 新冷戰時代의 東北아시아, 아성출판사, 1986.
35. 金順圭, 新國際政治論, 박영사, 1988.
36. 김유남外, 韓國安全保障論叢(第13集), 國家安全保障會議, 1986.
37. 金一平, 中·蘇關係의 韓半島의 平和, 일해연구소, 1987.
38. 김재홍譯, 10年後 韓國과 北韓은 이렇게 변한다, 도서출판 근세, 1987.
39. 金哲秀, 韓半島 周邊情勢와 南北對話의 展望, 일해연구소, 1986.
40. 金學俊, 強大國關係와 韓半島, 을유문화사, 1983.
41. 金學俊外, 民族統一論의 展開, 형성사, 1982.
42. 東亞日報社 安保·統一問題調查研究所, '80年代의 4強과 韓半島, 1982.2.
43. 문창주, 아시아의 勢力均衡과 韓·美關係, 김영사, 1983.
44. 閔丙天外 편, 오늘의 南北韓, 고려원, 1983.
45. 閔丙天, 韓國安保論, 대왕사, 1985.
46. 裴名五, 北韓 그리고 中共과 蘇聯, 學文社, 1983.
47. 朴斗福, 中·蘇關係의 發展과 韓半島, 慶南大 極東問題研究所, 1985.

48. 朴浚圭, 韓半島 國際政治史論, 서울대 出版部, 1986.
49. 安秉俊, 北方外交에 관한 研究, 外交安保研究院, 1983.
50. 安秉俊, 比較共產主義와 現代國際秩序, 나남출판사, 1987.
51. 安澤源, 新蘇聯政治論, 박영사, 1987.
52. 安澤源, 蘇聯政治의 體系的理解, 慶南大 極東問題研究所, 1986.
53. 유석렬, 北韓政策論, 法文社, 1988.
54. 外務部, 中共概況, 1988.
55. 外務部, 中國關係資料集, 1988.
56. 外務部, 韓國外交 30年: 1948 ~ 1978, 1979.
57. 外務部外交安保研究院, 國際情勢와 韓國外交: 1985年度 年例報告, 1986.
58. 外務部 外交安保研究院, 1987年度 4強研究會 國別研究資料集, 1987.12.
59. 陸軍第 5616 部隊, 向後 2 ~ 3年이 外 重要한가?, 1986.7.
(軍事對外秘)
60. 이삭 편집실역, 4大強國과 韓半島, 이삭, 1984.
61. 李相禹, 國際關係理論: 國家間의 葛藤原因과 秩序維持, 박영사, 1987.
62. 李相禹編, 統一韓國의 摸索: 理念, 環境과 政策的 努力, 박영사, 1987.
63. 이영희, '80年代 國際情勢와 韓半島, 동광출판사, 1984.
64. 李昊宰, 北方外交의 길, 흥사단출판사, 1984.
65. 李昊宰外, 韓半島의 4강기류와 韓國外交의 對應, 展望, 1987年 5月號, 社會發展研究所.

66. 인간사 편집실譯, 레이건 政府의 環太平洋政策 : 韓·美·日 安保體制論, 圖書出版 인간사, 1985.
67. 인간사 편집실譯, 韓半島 位相의 재조명, 圖書出版 인간사, 1985.
68. 全寅永外 2人, 北方 3角關係의 變化와 韓國의 政策方向, 경희대 國際平和研究所, 1988.
69. 鄭樂重, 國際政治와 우리의 課題, 형설출판사, 1983.
70. 鄭鎮潤, 北方 3角關係 : 北韓의 對中·蘇關係를 中心으로, 法文社, 1985.
71. 崔榮, 韓半島의 國際政治分析, 法文社, 1986.
72. 崔鍾起, 現代 蘇聯政治論, 法文社, 1987.
73. 韓國國防研究院, 世界の 軍事費와 韓國安保, 1987.12. (Ⅲ級秘密)
74. 韓國外國語大, 韓國에 대한 蘇聯의 關心度研究, 蘇聯 및 東歐問題研究所, 1985.6
75. 헨리 키신저外, 東北亞 勢力均衡과 韓半島, 일해연구소, 1987.
76. 홍현기, 轉換期の 韓半島 : 최근의 新데탕트와 美國·南北韓 政策을 中心으로, 圖書出版 태백, 1988.

< 論文類 >

1. 강석승, “블라디보스톡 宣言以後 蘇聯의 對東亞政策과 韓半島”, 民族再綜合의 摸索, 第 34 輯, 1987.12.
2. 강석승, “中共의 對韓政策 推移와 그 展望”, 國際問題, 1988.1.
3. 강석승, “中·蘇의 對東南亞政策 推移와 우리의 安保”, 治安向題, 1988.6.
4. 강석승, “蘇聯의 亞·太經協 構想과 韓半島”, 國際問題, 1988.7.

5. 강석승, “韓半島中心의 國際情勢 氣流”, 月刊護國, 國防部, 1988.2.
6. 김승홍, “韓國의 北方政策과 日本의 役割”, 政策研究, 第 81 號, 1986.11 ~ 12.
7. 金國振, “北方政策의 效率的 推進方案”, 自由公論, 1988.12.
8. 金國振, “實質外交의 方向과 課題”, 國策研究, 1988. 冬號.
9. 金炳璘, “서울올림픽과 北方 3角關係의 展望”, 安全保障, 1988.8.
10. 김영식, “北方政策 要諦는 力動성과 柔軟性”, 治安問題, 1988.6.
11. 朴斗福, “최근 中·蘇關係의 發展과 展望”, 韓國과 國際政治, 1987. 가을號
12. 박상식, “北方外交와 東北亞 安保”, 國會報, 1988.4.
13. 安秉俊, “北方 3角關係의 變化와 南北韓關係”, 轉換期の 韓美關係, 서울國際포럼, 1988.5.
14. 柳錫烈, “北方 3角關係의 變化推移와 韓國의 對應策”, 韓國 安全保障論叢 第 14 輯, 國家安全保障會議, 1987.
15. 兪英九, “中·蘇의 對韓對係 改善과 北方 3角關係”, 安全保障, 1988.6.
16. 李基鐸, “北方外交와 對共產圈 交流擴大展望”, 護國, 1988.4.
17. 李基鐸, “北方政策,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民族知性, 1988.6.
18. 李命植, “北方外交政策의 推進과 展望”, 國際問題, 1988.9.
19. 任東俊, “中·蘇의 關係改善 展望”, 共產圈研究, 1987.6.
20. 全樂熙, “韓國의 北方政策과 韓·中關係”, 國際問題, 1988.9.
21. 전정환, “北方外交의 展開와 課題”, 國會報, 1988.4.

22. 全擇元, “鄧小平과 고르바초프 만날 것인가”, 月刊中央, 1988.6.
23. 鄭鍾旭, “國際情勢와 安保上の 問題點 및 對策”, 國會報, 1988.11.
24. 진장철, “전향적인 北方認識이 必要한 때”, 民族知性, 1988.6.
25. 崔榮, “韓國의 北方政策과 北方外交”, 民族知性, 1988.3.
26. 崔鍾起, “對共產圈交流과 그 限界”, 自由公論, 1988.12.
27. 崔鍾起, “韓國北方外交의 現況과 展望”, 統一研究論叢, 第8卷 1號, 1988.
28. 河龍出, “中·蘇關係의 發展과 韓半島”, 現代社會, 1986. 겨울號

〈其他刊行物〉

1. 內外通信, 內外通信社(日刊)
2. 共產圈經濟, 產業研究院。(季刊)
3. 共產圈研究, 極東問題研究所(月刊)
4. 國防研究, 國防大學院(半年刊)
5. 國際問題, 國際問題研究所(月刊)
6. 國策研究, 民主正義黨 國策研究所(季刊)
7. 國會報, 國會事務處(月刊)
8. 民族再結合의 摸索, 國土統一院(隔月刊)
9. 民族知性, 民族知性社(月刊)
10. 民族統一, 民族統一促進會(月刊)
11. 北韓, 北韓研究所(月刊)

12. 北韓學報, 北韓研究所(月刊)
13. 社會와 思想, 한길사(月刊)
14. 새물결, 自由評論社(月刊)
15. 安保研究, 東國大 安保研究所(年刊)
16. 安全保障, 懶時事(月刊)
17. 自由公論, 韓國反共聯盟(月刊)
18. 展望, 社會發展研究所(月刊)
19. 政策研究, 國際問題調查研究所(隔月刊)
20. 中蘇研究, 漢陽大 中蘇研究所(季刊)
21. 總力安保, 大韓民國 在鄉軍人會(月刊)
22. 治安問題, 治安問題研究所(月刊)
23. 統一, 民族統一中央協議會(月刊)
24. 統一問題研究, 建國大 中國問題研究所(年刊)
25. 統一路, 安保問題研究院(月刊)
26. 統一研究論叢, 國土統一院 教育弘報室(半年刊)
27. 統一韓國, 平和問題研究所(月刊)
28. 韓國와 國際政治, 慶南大 極東問題研究所(半年刊)
29. 護國, 國防部 政訓局(月刊)
30. 現代公論, 政文研究會(月刊)
31. 現代社會, 現代社會研究所(季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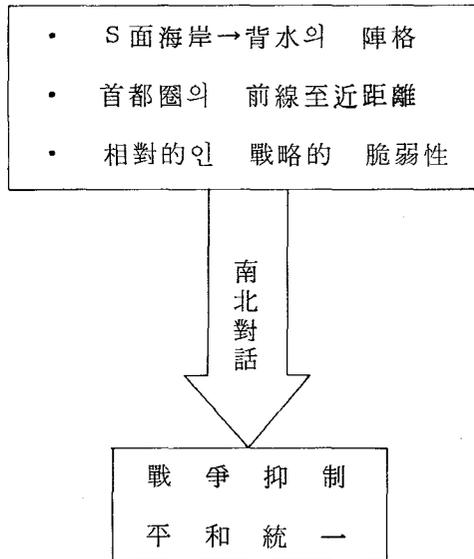
〈附錄 B〉

(關 聯 資 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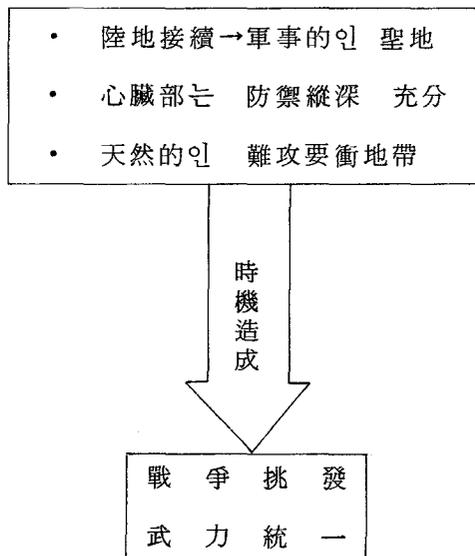
- I . 南・北韓의 軍事地理的 比較圖
- II . 東北아시아의 力學構造
- III . 蘇聯의 對外戰略圖
- IV . 中國의 對外戰略圖
- V . 北韓의 對中・蘇 受援實態
- VI . 北韓의 '88年度中 對外協定締結 現況
- VII . 北韓・蘇聯友好協調 相互援助條約
- VIII . 北韓・中國友好協調 相互援助條約
- IX . 中・蘇條約
- X . 北韓의 合營法
- XI . 中國의 中外合作 經營企業法
- XII . 蘇聯의 合作企業法

I. 南·北韓의 軍事地理的 比較圖

가. 韓 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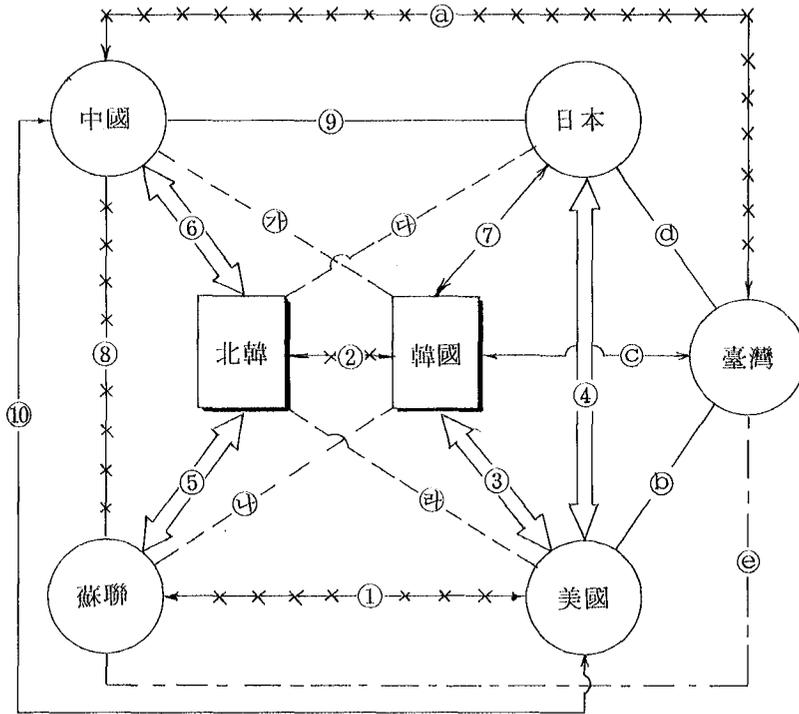


나. 北 韓



<資料> 裴名五, 北韓 그리고 中共과 蘇聯, 學文社, 1983.

II. 東北아시아의 力學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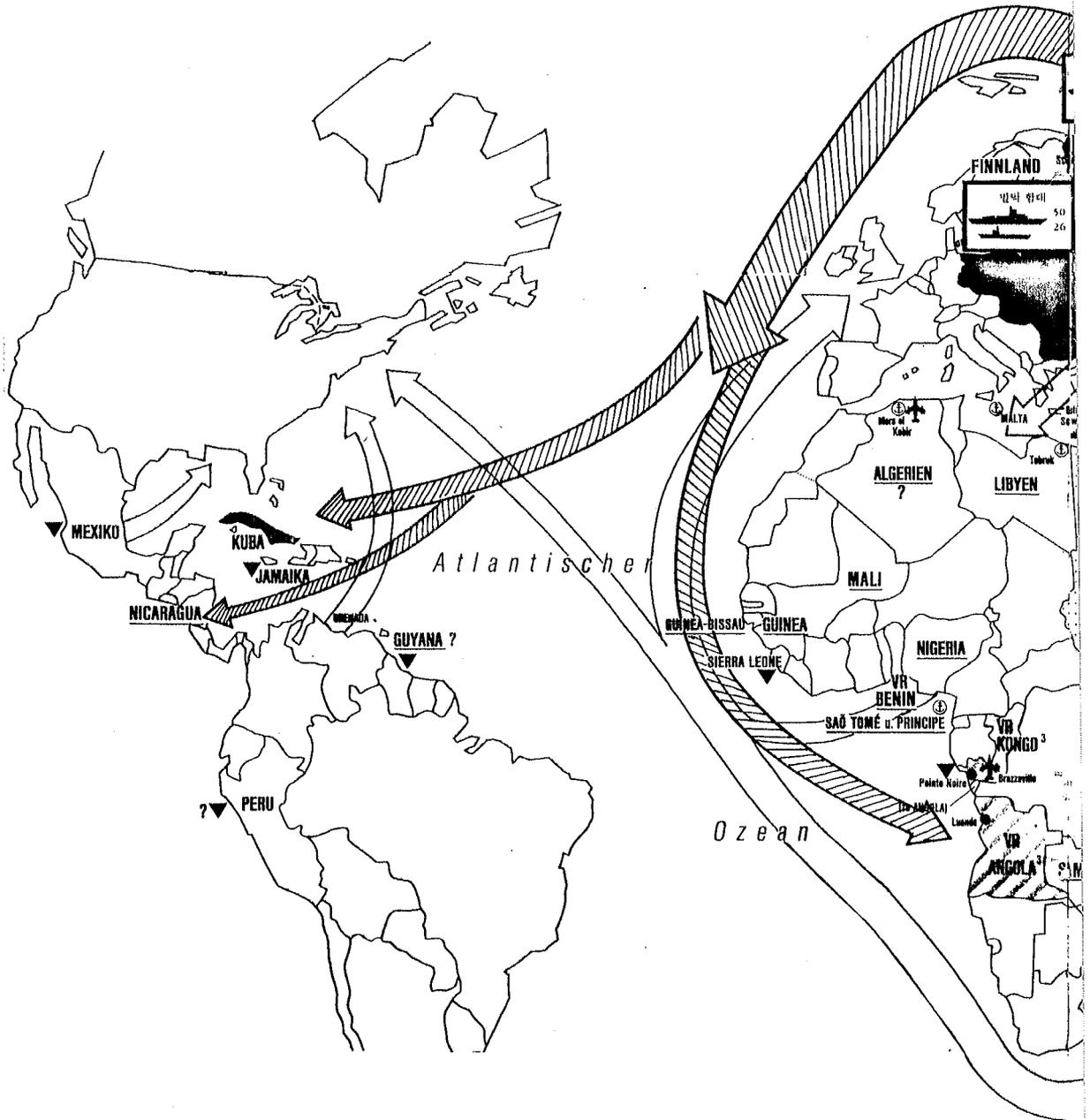


[凡例說明]

- ←×-①-×→ : 第2次大戦이후 美·蘇 간의 軍事對峙 (1945年—現在)
- ←×-②-×→ : 韓半島 分斷斗 南北간 敵對關係 (1945年—現在)
- ↔ ③ ↔ : 韓·美 相互防衛條約 締結 (1954年—現在)
- ↔ ④ ↔ : 美·日 相互安保條約 締結 (1960年—現在)
- ↔ ⑤ ↔ : 朝·蘇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 締結 (1961年—現在)
- ↔ ⑥ ↔ : 朝·中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 締結 (1961年—現在)
- ← ⑦ → : 韓·日 基本條約으로 國交樹立 (1965年—現在)
- ←×-⑧-×→ : 中·蘇紛爭 및 國境에서의 武力對峙 (1962年—現在)
- ← ⑨ → : 日·中國間 平和友好條約 締結 (1978年—現在)
- ← ⑩ → : 美·中國間 關係正常化 및 國交樹立 (1979年—現在)
- ㉗·····㉘····· : 韓國의 試圖와 努力
- ㉙·····㉚····· : 北韓의 試圖와 努力
- a-b-c-d-e- : 東北 아시아 諸國斗 臺灣關係

< 資料 > 裴名五, 北韓 그리고 中共과 蘇聯, 學文社,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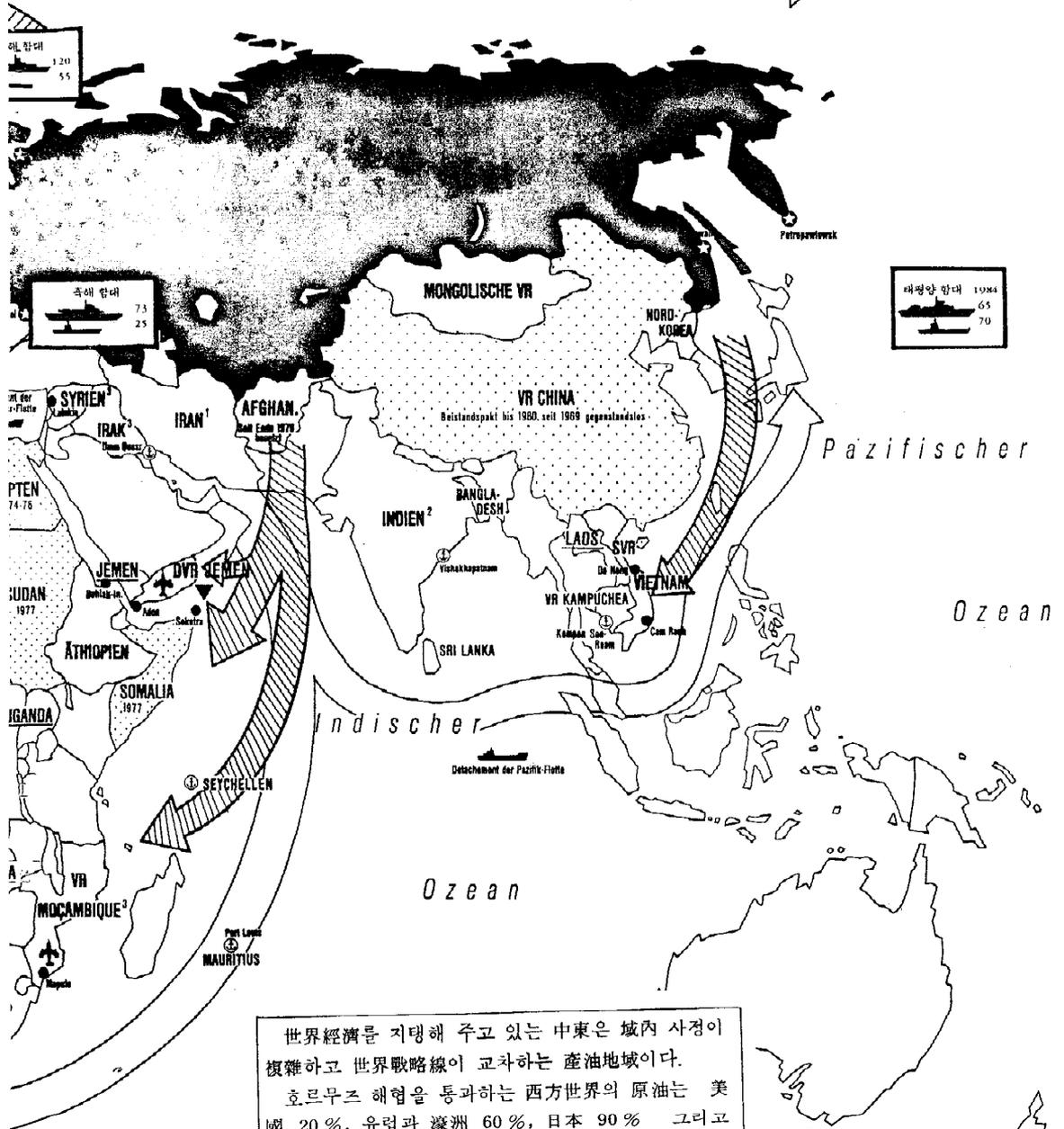
III. 蘇聯의



對外戰略圖

-  주요한대기지
-  함대
-  해군전략기지
-  기항지
-  전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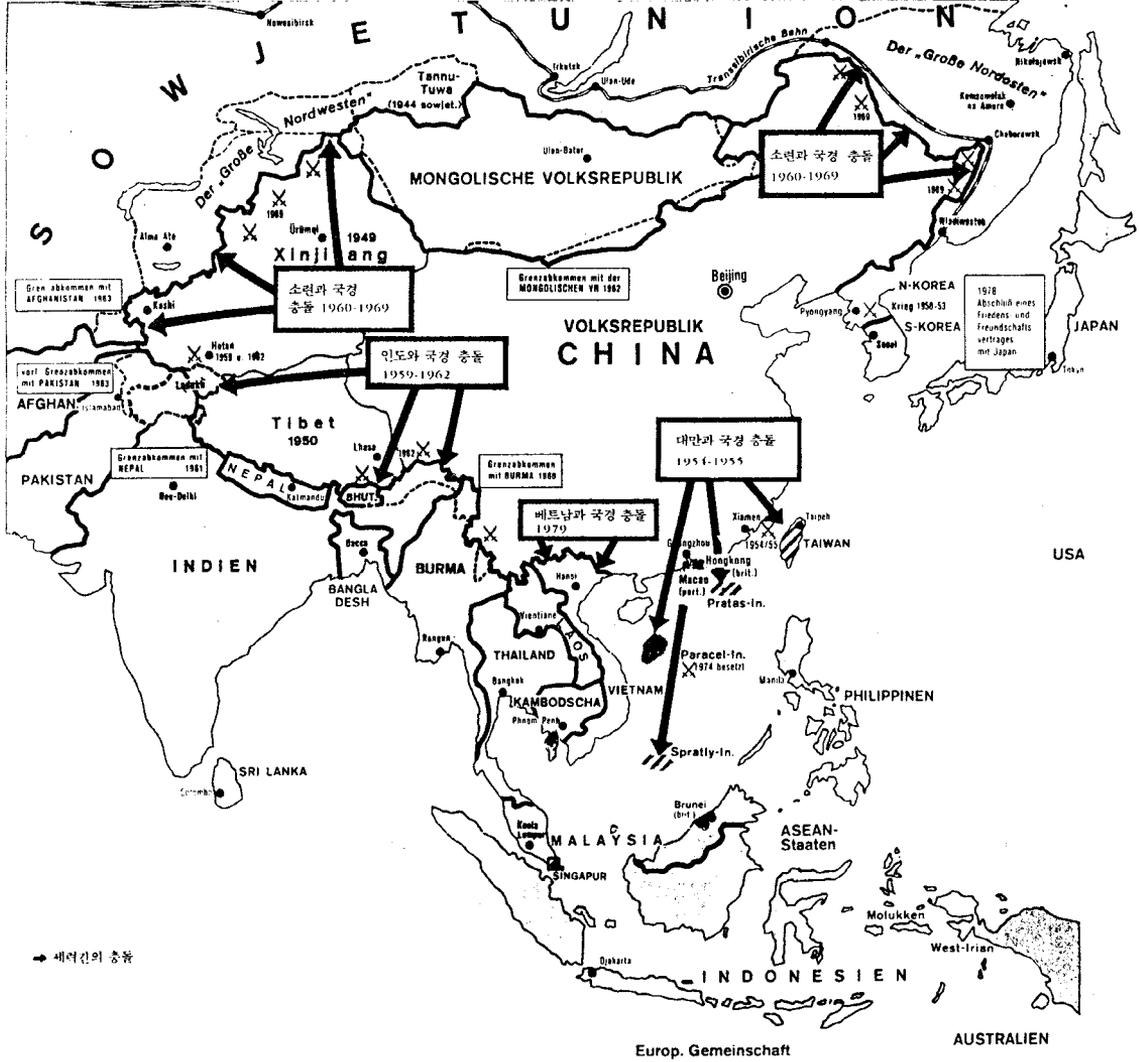
-  세력확장선
-  진함수
-  잠수함
-  석유수송로



世界經濟를 지탱해 주고 있는 中東은 域內 사정이 複雜하고 世界戰略線이 交차하는 產油地域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西方世界의 原油는 美國 20%, 유럽과 濠洲 60%, 日本 90% 그리고 韓國의 原油輸入도 40%나 이 해협을 통과한다. 그러므로 이 해협을 어느 일방이 封鎖하려하거나 封鎖된다면 불가피하게 世界大戰이 일어나고야 말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IV. 中國의 對外戰略圖



V. 北韓의 對中·蘇 受援實態

期間	國別	規模	內 容	備 考
50年代	中國	4.5億弗 (無償)	戰費 및 戰後復舊建設 1950~53年: 1.2億弗 1954年~57年: 3.3億弗	1953.11 經濟 및 文化 協調協定 締結
	蘇聯	7億弗 (無償)	戰費 및 戰後復舊建設 1950~53年: 1.4億弗 1954~57年: 5.6億弗	1949.3 經濟 및 文化 協調協定 締結
60年代	中國	1億弗 (借款)	發電所 등 産業施設 建設	1961.7 友好協調 및 相互援助에 관한 條約 締結
	蘇聯	0.8億弗 (借款)	發電所 등 産業施設 建設	1961.7 友好協調 및 相互援助에 관한 條約 締結
70年代	中國	2億弗 (借款)	發電所 및 精油工場 등 産業施設 建設 一 淸川江 火力發電所 一 熙川電子管工場 一 烽火化學 1 段階工事	1970.10 經濟 및 技術 援助提供協定 締結
	蘇聯	5億弗 (借款)	鑛山開發 및 精油工場 등 産業施 設 建設 一 茂山鑛山 一 北倉火力發電所 一 金策製鐵所 一 勝利化學	1978.9 經濟 및 技術 協調에 관한 協定締結
80年代	中國		대부분 前期에서 移越된 對象建設 一 烽火化學 2 段階 一 會寧製紙工場 一 熙川噴射口工場	
	蘇聯		대부분 前期에서 移越된 對象建設 一 茂山 鑛山 一 北倉 火力發電所 一 金策製鐵所	

VI. 北韓의 '88年度中 對外協定 締結現況 (88.12 現在)

區 分 \ 內 容		基 本	親善 및 外 交	經 · 科 技	貿 易	社 會 文 教 化 育	公 交 報 通	保 健	計
		共 蘇 聯	-	2	7	1	5	-	-
產 中 國	-	-	4	1	1	1	1	8	
圈 東 歐 其 他	4	5	14	8	2	3	-	36	
中 東 · 亞	1	1	2	2	1	1	-	8	
阿	-	3	5	3	1	3	-	15	
中 美	1	-	3	2	-	1	-	7	
其 他	-	1	6	-	-	-	-	7	
計	6	12	41	17	10	9	1	96	

◇ 分野別 協定調印內容

< 基 本 協 定 >

日 字	締 約 國	協 定 名	締 約 地
6.15	불 가 리 아	相互 旅行에 관한 協定	平壤
7.21	리 비 아	雙方 領事館設置를 위한 領事 協約	타라볼스
9.11	체 코	刑 · 民事事件에 대한 法律上 방조에 관한 條約	平壤

日 字	締 約 國	協 定 名	締 約 地
9.11	체 코	領事協約	平壤
10.24	콜롬비아	大使級 外交關係合意	뉴욕
10.29	몽 고	法律上 방조조약	울란바트로

〈親善 및 外交協定〉

1.22	체 코	外交部間 相互協調에 관한 合意書	프라하
1.27	모잠비크	外交部間 協調合意書 및 88 ~ 90年度 協調計劃書	마푸토
2.12	시에라리온	平壤·프리타운市間 親善連繫 設定 合意書	프리타운
5.25	루마니아	親善協會間 88~89年度 協調 契約書	平壤
5.27	蘇 聯	親善協會間 相互協調에 관한 88年度 議定書	모스크바
6.7	체 코	親善協會間 88~89年度 協調 計劃書	프라하
6.26	이탈리아	平南 安州市·이탈리아 살조르 조아 크레마노市間 親善連繫協定	安州
9.11	체 코	親善 및 協調에 관한 條約	平壤
10.17	몽 고	外交部間 89~90年度 協調計劃書	울란바트로

日 字	締 約 國	協 定 名	締 約 地
11.16	蘇 聯	外交部間 89 ~ 90 年度 交流 計劃書	모스크바
11.27	짐 바 브 웨	專 門 家 및 國 際 問 題 情 報 交 換 에 관한 議定書	하라레
12. 7	印 度	印度간디國民大會黨과 協 調 合 意 書	뉴델리

〈經濟・科學・技術關係協定〉

2. 4	蘇 聯	國家科學技術委間 科學技術協調 協定	모스크바
3. 1	蘇 聯	工作機械 및 工具工業分野 協調發展 合意書	平 壤
3.29	루마니아	科學技術協調分科委 第 12 次會議 議定書	부크레시티
4. 5	//	經濟科學技術協議委 第 13 次會議 議定書	//
4. 8	//	科學院間 88 ~ 90 年度 協調計劃書	//
4.19	나이지리아	共同委員會 1 次會議 議定書	平 壤
4.28	蘇 聯	經濟 및 科學技術協議委 第 22 次會議 議定書	//
5.18	유엔開發計劃	채소生産現代化事業協調	//

日 字	締 約 國	協 定 名	締 約 地
5.26	유엔開發計劃	電氣機械測定試驗所 設置와 香料生産基盤 強化 協調	平壤
6.16	헝가리	經濟 및 科學技術協議委 科學技術協調分科委 第 13 次會議 議定書	"
6.30	蒙 古	經濟 및 科學技術協議委 創設協定	울란바트로
7. 2	리비아	共同委員會 5 次會議 議定書	平壤
7. 7	알바니아	科學技術協調常設委 第 15 次會議 議定書	티라나
7.12	中 國	科學技術協調委 第 28 次會議 議定書	平壤
8. 3	"	朝·中압록강水力發展會社理事會 41 次會議 議定書	"
8.14	탄자니아	共同委員會 3 次會議 議定書	"
8.25	세네갈	" 1 次會議 議定書	"
8.29	蘇 聯	經濟科學技術協議委 運輸部門 實務分科第 3 次會議 議定書	"
9. 7	체코	經濟科學技術協議委 第 6 次會議 議定書	"
9. 9	부르키나피소	共同委員會 創設協定	"
9.15	유엔開發計劃	土壤 및 植物體分析試驗所와	"

日 字	締 約 國	協 定 名	締 約 地
		養漁科學研究所 現代化協調	
9.15	中 國	89年 氣象科學部門交流 計劃書	北 京
9.26	쿠 바	建築家同盟間 89~90年度 協助計劃書	平 壤
10.5	이 란	水産業分野協助擴大 合意書	//
10.6	中 國	科學院間 89~90年度 科學協調 에 관한 事業計劃書	//
10.6	유엔開發計劃	과일生産 및 貯藏技術 改善과 벼육중 改善을 위한 協調	//
10.9	蘇 聯	經濟 및 科學技術協議委 科學 技術協調 常設分科委 第21次會議 議定書	//
10.19	東 獨	植物分野協調協定	東베를린
10.25	蒙 古	科學技術協調文化委 第17次會議 議定書	平 壤
10.26	유엔開發計劃	變壓器生産現代化對象協調	//
10.28	蒙 古	科學院間 科學協調協定 및 89~ 90年度 科學協調計劃書	//
11.2	니 카 라 과	共同委員會 第5次會議 議定書	마나과
11.8	세 이 셸	經濟協調에 관한 合意書	平 壤
11.10	쿠 바	經濟科學技術協議委 및 科學技術 協調分科委 第12次會議 議定書	아바나

日 字	締 約 國	協 定 名	締 約 地
11.11	東 獨	經濟科學技術協議委 第 11 次會議 議定書	東베를린
11.16	蒙 古	經濟科學技術協議委 第 1 次會議 議定書	平壤
11.16	불가리아	農業科學院間 89 ~ 90 年度 科學 調助計劃書	//
11.21	유엔開發計劃	蓄産開發計劃에 관한 協調	//
11.21	蘇 聯	91 ~ 95 年度 船舶建造分野 經濟 科學技術協調協定	//
12. 5	蘇 聯	89 年度 氣象水門海上自然環境 監視分野 科學技術交流 議定書	//
12. 5	폴란드	科學技術協調分科委 第 12 次會議 議定書	바르샤바

〈 貿易協定 〉

1.25	헝가리	88 年度 商品流通 및 支拂에 관한 議定書	平壤
2. 5	中 國	88 年度 商品交流 議定書	//
2.17	印 度	貿易 및 經濟關係를 發展시킬 데 대한 合意書	뉴델리
4. 2	蘇 聯	88 年度 交易 및 決濟에 관한 議定書	모스크바

日 字	締 約 國	協 定 名	締 約 地
4.13	불 가 리 아	88年度 商品相互納入 및 支拂 에 관한 議定書	소피아
5. 7	이디오피아	88年度 通商協定	平壤
6. 5	우 간 다	88~89年度 求償貿易 議定書	〃
6.24	이 란	貿易 및 經濟技術協調에 관한 合意書	테헤란
8. 6	蒙 古	89年度 商品相互 納入 및 支出에 관한 議定書	平壤
8.27	東 獨	89年度 商品相互 納入에 관한 議定書	〃
9. 9	부르키나파소	貿易協定	〃
10. 6	알 바 니 아	89年度 商品相互 納入 및 支 拂에 관한 議定書	〃
10.20	루 마 니 아	89年度 商品流通 및 支拂에 관한 議定書	〃
10.10	쿠 바	89年度 商品交流 議定書	아바나
11.16	페 루	貿易部間 貿易促進에 관한 協定	리 마
11.26	폴 란 드	89年度 商品流通 및 支拂에 관한 議定書	바르샤바
12. 8	체 코	89年度 商品流通 및 支拂 議定 書	프라하

〈社會・文化・教育關係協定〉

日 字	締 約 國	協 定 名	締 約 地
2. 5	蘇 聯	88年度 映畫部門交流事業計劃書	平壤
3. 4	//	職業同盟間 協調發展 合意書	//
3.29	//	88~90年度 文化 및 科學協 調計劃書	//
4. 8	//	記者同盟間 88~89年 議定書	모스크바
6.20	체 코	88~90年度 文化協調計劃書	平壤
6.21	불 가 리 아	教育科 學位證書 同等性 認定 에 관한 協定	//
7. 2	리 비 아	88~90年度 公報 및 文化 協調執行計劃書	//
8.30	蘇 聯	青年同盟間 88~90年度 協定	//
10.26	양 골 라	87~90年度 文化協調計劃書	루안다
11.17	中 國	89~90年度 文化交流計劃書	平壤

〈公報 및 交通關係協定〉

1. 14	형 가 리	TV放送分野協調協定	平壤
1. 29	쿠 바	R-TV放送委員會間 事業議定書	//
2. 11	中 國	國境河川運航協調委 第27次會議 議定書	심 양
4. 4	부 룬 디	公報分野協調協定	平壤

日 字	締 約 國	協 定 名	締 約 地
5.12	부르키나파소	公報分野協調協定	와가두구
5.30	헝 가 리	88 ~ 90 年度 R 放送分野協調 議定 書	부다페스트
6.23	체 코	88 ~ 90 年度 R 放送分野協調 議定 書	프라하
7. 2	리 비 아	88 ~ 90 年度 公報 및 文化協調 執行計劃書	平壤
8.19	카 메 룬	遞信分野協調協定	야운데

< 保健協定 >

10.20	中 國	保健部間 88 ~ 89 年度 執行計劃 書	平壤
-------	-----	---------------------------	----

< 資料 > 内外通信, 第 620 號 (1988. 12. 23)

Ⅶ. 北韓·蘇聯 友好協調 相互援助條約

1961年 7月 6日

모스크바에서 署名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委員會와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 最高 소비에트 常任委員會는 社會主義的 國際主義原則에 기초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과 소비에트 聯邦間의 親善關係를 強化 發展 시킬 것을 指向하면서 유엔의 目的과 原則에 立脚하여 極東과 全世界에서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 鞏固化를 促進시킬 것을 희망하면서 어떠한 國家 또는 國家聯合으로부터 條約 一方에 대한 武力侵略이 감행되는 경우에 援助와 支持를 相互 提供할 결의에 充滿되면서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과 소비에트聯邦間의 親善, 善隣 協調의 強化가 兩國人民들의 死活的 利益에 符合되며, 그들의 經濟 文化의 今後發展을 가장 훌륭하게 促進시키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목적으로 本 條約을 締結하기로 決定하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委員會 常任委員會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內閣首相 金日成을,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 最高 소비에트 常任委員會는 蘇聯 內閣 首相 니키타 쉐르게예비치 후르시초프를 各各 自己의 全權代表로 任命하였다.

兩 全權代表는 所定の 形式과 完全한 節次를 갖춘 자기의 全權 委任狀을 교환한 후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第 1條 締約 雙方은 그들이 앞으로도 極東과 全世界의 平和와 安全의 保障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國際的 活動에 參加할 것이며,

이 高費한 課業의 遂行에 寄與할 것을 聲明한다.

締約 一方이 어떠한 國家 또는 國家聯合으로부터 武力侵攻을 당함으로써 戰爭狀態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締約 相對方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軍事的 및 其他 援助를 提供한다.

第 2 條 締約 雙方은 締約 相對方을 反對하는 어떠한 同盟도 締結하지 않으며 締約 相對方을 반대하는 어떠한 聯合이나 行動 또는 措置에도 참가하지 않을 데 대한 義務를 진다.

第 3 條 締約 雙方은 平和와 全般的 安全의 鞏固化를 促進시킬 것을 擘원하면서 兩國의 利害關係와 關聯되는 모든 重要한 國際問題들에 대하여 相互協議한다.

第 4 條 締約 雙方은 平等과 國家主權의 相互尊重, 領土 保全, 相互 內政不干涉 原則들에 입각하여 親善과 協調의 精神에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盟間的 經濟的 및 文化的 連繫를 強化 發展시키며 經濟 및 文化分野에서 可能한 모든 援助를 提供하며 必要한 協調를 實現하는 데 대한 義務를 진다.

第 5 條 締約 雙方은 朝鮮의 統一이 平和的이며 民主主義的인 基礎 위에서 實現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解決이 朝鮮人民의 民族的 利益과 極東에서의 平和維持에 符合된다고 認定한다.

第 6 條 條約은 平壤市에서 批准書를 交換한 날로부터 效力을 발생한다. 條約은 10年間 效力을 가진다. 締約 一方이 기한 만료 1年前에 條約을 廢棄하는데 대한 希望을 表示하지 않는다면 條約은 다음 5年間 계속하여 效力을 가지며 이와 같은 節次에 의하여 앞으로 有效期間이 延長된다. 本 條約은 1961年 7月 6日

모스크바市에서 朝鮮語와 露語로 各各 2部씩 作成되었으며, 이 두 原本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의 委任에 依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內閣 首相 金日成

•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 最高 소비에트常任委員會의 委任에 依하여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關邦 內閣首相

엔 · 에쓰 후르시초프

* . 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between the
USSR and the North Korea

Signed on 6th July 1961, at Moscow

The Presidium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Supreme Soviet and the Presidium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preme People's Assembly.

Striving to develop and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lations based on principles of socialist interna-
tionalism,

Wishing t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and consolidation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 and throughout the whole
world in accordance with the aim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Fully determined to render assistance and support to each
other in case of an armed attack by some state or a coalition
of states on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Certain that the strengthening of Friendship, neighbour-
lines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the Demo-
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eets the vital interests of
the Peoples of the both states and will in the best way help

their further 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Have resolved to conclude this treaty, and

Have appointed as their Plenipotentiaries,

The Presidium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Supreme Soviet, Nikita Sergeyeovich Khrushchev, chairman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Council of Ministers,

The Presidium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preme People's Assembly, Kim Il Song, chairma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uncil of Ministers,

Both Plenipotentiaries, after exchanging their credentials,
which were found to be in due form and full order,

Agreed on the following:

ARTICLE 1

The Contracting Parties declare that they will continue to
take actions aimed at insur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 and throughout the world, and will make their contribution
to the cause of the accomplishment of these lofty tasks.

In case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becomes the object
of an armed attack by some state or a coalition of states and
thus finds itself in a state of war,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ll immediately render its military and other assistance with
all means at its disposal.

ARTICLE 2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s to conclude no alliance or participate in no coalitions or actions or measures directed agains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3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consult each other on all important international issues affecting the interests of both states, being guided by an effort to contribute to the consolidation of peace and general security.

ARTICLE 4

Bot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in the spirit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mutual respect for state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and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to develop and strengthen economic and cultural contacts between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nder each other all possible assistance, and carry out necessary cooperation in the economic and cultural fields.

ARTICLE 5

Both Contracting Parties maintain that the unification of Korea must be carried out on a peaceful and democratic basis and that such settlement is in line both with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cause of maintaining peace in the Far East.

ARTICLE 6

The treaty goes into force on the day of the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which will take place in Pyongyang.

The treaty remains in force for ten years.

I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does not declare one year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term its desire to denounce the treaty, the treaty will continue in force for the next five years and will be prolonged in accordance with this rule.

Done in Moscow sixth July 1961 in two copies, each in the Russian and Korean languages, with both texts equally valid.

**FOR THE PRESIDUM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PREME PEOPLE'S ASSEMBLY:**

/s/ Kim Il Song

**FOR THE PRESIDUM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SUPREME SOVIET :**

/s/ N.S. Khrushchev

VIII. 北韓·中國 友好協調 相互援助條約

1961年 7月 11日

北京에서 署名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와 中華人民共和國 主席은 맑스, 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原則에 立脚하여 또한 國家主權과 領土完成에 대한 相互尊重, 相互不可侵, 內政에 대한 相互不干涉, 平等과 互惠, 相互援助 및 支持의 기초 위에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와 中華人民共和國間의 兄弟的 友好協調 및 相互援助 關係를 가일층 強化 發展시키며, 兩國人民의 安定을 共同으로 保障하며 亞細亞와 世界平和를 維持, 鞏固化하기 위하여 모든 努力을 다할 것을 決議한다.

또한 兩國間의 友好協調 및 相互援助關係의 強化 發展은 兩國人民의 根本利益에 符合된다고 確信한다.

이 目的을 위하여 本 條約을 締結하기로 決定하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內閣 首相 金日成을, 中華人民共和國 主席은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 總理 周恩來를 각각 자기의 全權代表로 任命하였다.

雙方 全權代表는 全權委任狀이 정확하다는 것을 相互 確認하고 다음과 같은 條項들에 대하여 合意하였다.

第1條 締約 雙方은 亞細亞 및 世界의 平和와 各國人民의 安全을 守護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努力을 다할 것이다.

第2條 締約 雙方은 締約 雙方中 어느 一方에 대한 어떠한 國家로부터의 侵略이라도 이를 防止하기 爲하여 모든 措置를 共同으

로 取할 義務를 지닌다.

締約 一方이 어떠한 한 개의 國家 또는 몇 개 國家들의 聯合으로부터 武力侵攻을 當함으로써 戰爭狀態에 處하게 되는 境遇에 締約 相對國은 모든 힘을 다하여 遲滯없이 軍事的 및 其他 援助를 提供한다.

第 3 條 締約 雙方은 締約 相對方을 反對하는 어떠한 集團과 行動 또는 措置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第 4 條 締約 雙方은 兩國의 共同利益과 關聯되는 一切 重要한 國際問題들에 대하여 계속 協議한다.

第 5 條 締約 雙方은 主權에 대한 相互尊重, 內政에 대한 相互不干渉, 平等 互惠의 原則 및 親善 協調의 精神에 계속 立脚하여 兩國의 社會主義 建設事業에서 相互 可能한 모든 經濟的 및 技術的 援助를 提供하며 兩國의 經濟, 文化 및 科學, 技術的 協調를 계속 鞏固히 하며 發展시킨다.

第 6 條 締約 雙方은 朝鮮의 統一이 반드시 平和的이며 民主主義의 基礎 위에서 實現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解決이 곧 朝鮮人民의 民族的 利益과 極東에서의 平和維持에 符合된다고 決定한다.

第 7 條 本 條約은 批准을 받아야 하며, 批准書를 交換한 날로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批准書는 平壤에서 交換된다.

本 條約은 修正 또는 廢棄하는 데 대한 雙方間의 合意가 없 는 이상 계속 效力을 가진다.

本 條約은 1961年 7月 11日 北京에서 調印되었으며 朝鮮文

과 中國文으로 각각 2 통씩 작성된 이 두 原文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全權代表 金 日 成
- 中華人民共和國 全權代表 周 恩 來

* . 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between the North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igned in Peking on July 11, 1961

The Chairma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Marxism-Leninism and the
principle of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and on the basis of
mutual respect for Stat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mutual non-aggression,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s inter-
nal affairs, equality and mutual benefit, on mutual assistance
and support, to make every effort to further strengthen and
develop the fraternal relations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jointly guard the
security of the two Peoples and to safeguard and consolidate
the peace of Asia and the world, and

Deeply convinced that the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the relations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
t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accord, not only with interests
of the peoples all over the world.

Have decided for this purpose to conclude the present Treaty and appointed as their respective plenipotentiaries:

The Charima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ou En-Lai,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Il-Song, Premier of the cabine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ing examined each other's full power and found them in good and due form,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ARTICLE 1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continue to make every effort to safeguard peace in Asia and the world and the security of all peoples.

ARTICLE 2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jointly to adopt all measures to prevent aggression against either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y state. In the ev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being subjected to armed attack by any state or several states jointly and thus being involved in a state of war,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mmediately render military and other assistance by all means at its disposal.

ARTICLE 3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conclude any alliance directed agains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take part in only bloc or in any action or measure directed agains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4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continue to consult with each other on all important international questions of common interest to the two countries.

ARTICLE 5

The Contracting Parties, on the principles of mutual respect for sovereignty,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equality and mutual benefit, and in the spirit of friendly cooperation, will continue to render each other every possible economic and technical aid in the cause of socialist construction of the two countries and will continue to consolidate and develop economic, cultural and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RTICLE 6

The Contracting Parties hold that the unification of Korea

must be realized along peaceful and democratic lines and that such a solution accords exactly with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aim of preserving peace in the Far East.

ARTICLE 7

The Present Treaty is subject to ratification and shall come into force on the day of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which will take place in Pyongyang.

The Present Treaty will remain in force until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 on its amendment or termination.

DONE in duplicate in Peking on 11 July, 1961, in the Chinese and Korean language,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PLENIPOTENTIA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s/ Chou En-Lai

**PLENIPOTENTIAR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s/ Kim Il-Song

IX. 中·蘇 條 約

(소비에트社會主義 共和國聯邦과 中華人民共和國간의 友好同盟
및 相互援助條約)

1950年 2月 14日 署名

1950年 4月 11日 發効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 最高會議幹部會 및 中華人民共和國中央
政府는 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과 中華人民共和國간의 우호 및 협력을
강화하고 日本帝國主義의 復活 및 日本國의 侵略 또는 侵略行爲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日本國과 聯合하는 나라의 侵略의 반복을 공
동으로 방지할 것을 결의하고,

國際聯合의 目的 및 原則에 따라 極東 및 世界의 長期에 걸친
平和 및 全般的 安全을 강화할 것을 希望하고,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과 中華人民共和國간의 善隣 및 友好 關
係를 강화함이 소비에트聯邦 및 中華人民의 基本的 利益에 合致됨
을 깊이 確信하여,

이 目的을 위해 이 條約을 締結할 것을 決定하고 다음과 같이
각각 全權委員을 任命했다.(全權委員名單省略)

兩全權委員은 각각 그 全權委員狀을 교환하고 그것이 良好妥當함
을 認定한 다음 다음과 같이 協定했다.

第1條 兩締約國은 日本國 또는 直接 間接으로 侵略과 關聯하여 日
本國과 聯合하는 다른 國家의 侵略의 되풀이와 平和의 破壞를 防
止하기 위해 兩國이 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措置를 共同으로

취할 것을 약속한다.

어느 한 締約國이 日本國 또는 그와 同盟을 맺고 있는 다른 國家로부터의 공격으로 戰爭狀態에 들어간 경우 相對方締約國은 즉시 취할 수 있는 모든 手段으로 軍事的 및 其他的 援助를 提供한다.

또한 締約國은 世界の 平和와 安全保障을 目的으로 하는 모든 國際行動에 성실한 協力精神을 가지고 參加할 用意가 있음을 宣稱하며, 아울러 이러한 目的의 가장 신속한 실현을 위해 全力을 다한다.

第 2 條 締約國의 相互 合意下에 第二次世界大戰中 同盟을 맺고 있던 다른 國家와 함께 日本國과의 平和條約을 가능한 한 短期間內에 締結하고자 노력할 것임을 約束한다.

第 3 條 兩締約國은 각기 相對方 締約國에 반대하는 어떠한 同盟도 맺지 않을 것이며 또한 相對方 締約國에 반대하는 어떠한 聯合 및 어떠한 行動 또는 措置에도 參加하지 않는다.

第 4 條 兩締約國은 平和의 強化와 全般的인 安全을 위해 소비에트 聯邦과 中國과의 共通의 利害에 關聯된 중요한 모든 國際問題에 대해서는 相互 協議한다.

第 5 條 兩締約國은 友好와 協力の 精神을 가지고 또한 平等, 互惠, 國家主權 및 領土保全에 대한 相互尊重의 原則과 相對方 締約國의 國內事項에 대한 不干涉의 原則에 따라 소비에트聯邦과 中國과의 經濟的 및 文化的인 提携를 強化하고 相互間 可能的한 모든 經濟援助를 提供하며 아울러 經濟的으로 필요한 協力을 하기로 約束한다.

第 6 條 이 條約은 그 批准된 날부터 즉시 効力을 발생한다. 批准
書의 交換은 北京에서 행한다.

이 條約은 三十年간 効力을 갖는다. 어느 한 締約國이 이 期
間滿了 1 年前에 條約廢棄의 希望을 通告하지 않을 때는 이 條
約은 다시 5 년간 繼續 効力을 갖게 되며 이 규정에 따라 順
次 延長된다. (署名 略)

X. 北韓의 合營法

(1984.9.8. 最高人民會議 決定 10 號)

第 1 章 合營의 基本

第 1 條 世界の 여러 나라들과의 經濟技術 交流와 協調를 擴大 發展시키는 것은 朝鮮勞動黨과 共和國 政府의 一貫한 對外經濟政策이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共和國의 領域안에서 우리나라의 會社, 企業所와 다른 나라의 會社, 企業所, 個人사이에 平等과 互惠의 原則에서 合營하는 것을 獎勵한다.

第 2 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의 合營은 工業, 建設, 運輸, 科學技術, 觀光業을 비롯한 여러 分野에서 할 수 있다.

第 3 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다른 나라 合營當事者가 出資한 財産과 企業運營에서 얻은 所得을 法的으로 保護한다.

第 4 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合營當事者들의 經營活動과 關聯하여 共和國 法이 규정한 모든 合理的 權利를 保障한다. 合營會社는 모든 活動에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法規範과 규정을 尊重하며, 그것을 徹底히 지켜야 한다.

第 5 條 在日朝鮮商工人들을 비롯하여 海外에 居住하는 朝鮮同胞들도 이 法에 根據하여 우리나라의 會社, 企業所와 合營할 수 있다.

第 2 章 合營會社의 組織

第 6 條 合營會社는 當事者들이 會社組織에 관한 契約을 맺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對外經濟機關의 承認을 받은 다음 該當機關에

登錄하였을 때 組織된다.

第 7 條 合營會社의 出資하는 몫은 合營當事者들의 合意에 따라 定한다. 合營當事者들은 貨幣對象, 現物財産과 發明權, 技術文獻 등으로 出資할 수 있다. 現物財産, 發明權, 技術文獻 등으로 出資하는 경우에는 그 값을 國際市場 價格에 準하여 合營當事者들이 評價한다.

第 8 條 合營會社를 運營하는 過程에 生기는 會社의 빚에 대하여 合營當事者들은 出資몫 안에서만 責任진다. 合營會社의 한편 當事者가 自己의 出資몫을 第 3 者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상대편 當事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第 9 條 合營會社는 登錄된 資金을 줄일 수 없다.

第 3 章 理事會와 經濟活動

第 10 條 合營會社는 理事會를 둔다. 理事會는 合營會社의 最高決議機關이다. 合營會社는 規約를 가지며 그에 따라 經營活動을 한다.

第 11 條 理事會는 合營會社 規約의 採擇 및 修正 補充, 合營會社의 發展對策, 經營活動計劃, 決算과 分配, 管理成員의 任命 及 解任, 財政檢閱員의 任命等 合營會社의 重要한 問題를 討議 決定한다.

第 12 條 會社 社長은 合營會社 組織에 관한 契約, 合營會社 規約 及 理事會의 決定에 따라 會社의 經營活動을 組織, 進行하며 自己事業에 대하여 理事會앞에 責任진다.

第 13 條 合營會社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銀行에 돈자리를 두며 合營當事者들의 合意에 따라 다른나라 銀行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合營活動에 필요한 資金을 다른나라 銀行에서 貸付받을 수 있다.

第 14 條 合營會社가 生産에 필요한 原料, 資料, 半製品들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안에서 사출 때 그 價格은 國際市場價格을 基準으로 한다. 合營會社가 對外市場에서 物資를 輸入할 때는 關稅를 물리지 않는다.

第 15 條 合營會社는 自己의 生産製品을 對外市場에 輸出할 수 있다.

第 16 條 合營會社가 從業員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法과 合營 雙方的 契約에 따라 勞力을 管理하며 利用한다.

第 17 條 合營會社에서 일하는 다른나라 사람은 自己가 받은 勞賃에 대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外國人所得稅法에 따라 所得稅를 물어야 한다. 合營會社에서 일하는 다른나라 사람은 勞賃의 一部를 國外로 送金할 수 있다.

第 4 章 決算과 分配

第 18 條 合營會社는 헤 마다 한번씩 定期的으로 經營活動을 決算하여야 한다. 決算은 總收入에서 原價를 補償하고 所得稅를 바친다음 豫備基金, 生産擴大 및 技術發展基金을 비롯한 필요한 資金을 공제한 나머지 基金을 合營雙方的 出資畧에 따라 配分하는 方法으로 한다.

第 19 條 合營會社는 豫備基金을 造成하여야 한다. 豫備基金의 規模와 헤 마다 造成하는 比率은 따로 정한다. 豫備基金은 合營會社에서 缺損된 資金을 補充하는데 쓴다.

第 20 條 合營會社의 決算文件은 財政檢閱員의 檢閱과 理事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第 21 條 合營會社는 決算期마다 純所得에 대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合營會社所得法에 따라 所得稅를 물어야 한다. 合營會社는 生産을 시작한 때로부터 一定한 期間 所得稅를 免除받을 수 있다. 合營會社는 純所得이 적은 경우 所得稅의 減免을 청원할 수 있다. 合營會社는 土地를 使用할 때 土地使用料를 물어야 한다.

第 22 條 다른나라 合營當事者는 分配받은 돈을 國外로 送金할 수 있다.

第 5 章 合營會社의 解散과 紛爭解決

第 23 條 合營會社는 契約에 規定된 存續期間이 끝나면 解散된다. 合營會社를 繼續 運營하러면 存續期間이 끝나기 6個月前에 該當 機關에 提起하여야 한다.

第 24 條 合營會社는 繼續하여 缺損을 내거나 合營會社의 한편 當事者가 自己의 義務를 違反하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會社를 運營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理事會의 決定에 따라 存續期間이 끝나기 전에 解散할 수 있다.

第 25 條 合營會社를 解散할 때에는 現行業務를 結束하고 남은 財產을 出資몫에 따라 合營當事者들 사이에 分配한다.

第 26 條 合營會社를 運營하는 過程에 생기는 意見相異는 協議의 方法으로 解決한다. 協議의 方法으로 解決할 수 없는 紛爭問題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 審議한다. 雙方의 合意에 따라 第 3 國의 仲裁機關에 紛爭問題의 審議를 提起할 수도 있다.

XI. 中國의 中外合作 經營企業法

(1979 年 7 月 1 日, 第 5 期 全國人民代表大會 第 2 次會議에서 採擇)

(1979 年 7 月 8 日,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委員長令 第 7 號로 公布)

第 1 條 中華人民共和國는 國際經濟協力과 技術交流를 擴大하기 위하여 外國의 會社·企業 其他 經濟組織 또는 個人(以下 “外國側合營者”라 略稱한다)이 平等互惠의 原則에 따라 中國政府의 認可를 받아 中華人民共和國內에서 中國의 公司·企業 其他 經濟組織(以下 “中國側合營者”라 略稱한다)과 共同으로 合營企業을 設立하는 것을 許可한다.

第 2 條 ①中國政府는 外國側合營者의, 中國 政府의 認可를 받은 協定·契約·定款에 의한 合營企業에서의 投資, 取得하여야 할 相應한 利益 其他 合法的인 權益을 法律에 의하여 保護한다.

②合營企業의 모든 活動은 中華人民共和國의 法律·法令 및 關聯條例의 規定을 遵守하는 것이어야 한다.

第 3 條 合營當事者間에 締結한 協定·契約 및 定款은 中華人民共和國 外國投資管理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하며, 同 委員會는 3 個月以內에 이에 대한 認可 또는 不認可를 決定하여야 한다. 合營企業은 認可를 받은 경우, 中華人民共和國 工商行政管理總局에 登錄하고 營業認可證을 交付받아 營業을 開始한다.

第 4 條 ①合營企業의 形態는 有限責任會社로 한다. 合營企業의 登錄資本中 外國側合營者의 投資比率은 一般的으로 100 分の 25 를 下廻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合營者는 각각의 登錄資本의 比率에 따라 利益을 分配하고 危險과 缺損을 分擔한다.

③合營者의 登錄資本을 讓渡할 때에는 반드시 相對方 合營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 5 條 ①合營企業의 各 當事者는 現金, 現物, 工業所有權 등으로 投資할 수 있다.

②外國側合營者가 投資로 한 技術 또는 設備는 반드시 中國側이 必要로 하는 技術 또는 設備이어야 한다. 故意로 落後된 技術과 設備로 欺瞞하여 損害를 입힌 때에는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③中國側合營者의 投資에는 合營企業의 經營期間中에 提供하는 土地使用權을 包含할 수 있다. 土地使用權을 中國側合營者의 投資의 一部로 하지 아니하는 때 合營企業은 中國政府에 使用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④上記한 各項의 投資에 대하여는 合營企業의 契約 및 定款에 定하여야 한다. 그 價格(다만, 土地에 대하여는 除外한다)은 合營當事者間에 協議하여 決定한다.

第 6 條 ①合營企業에는 理事會를 두고 그 人員과 構成은 合營當事者間의 協議에 의하며 契約과 定款에 明記한다. 또한 合營當事者가 各各의 理事의 選任과 解任을 行한다. 理事會에는 中國側合營者에 의하여 選任된 理事長 1名과 外國側合營者에 의하여 選任된 1名 또는 2名의 副理事長을 둔다. 理事會가 重要問題를 處理할 때에는 合營當事者가 平等互惠의 原則에 따라 協議에 의하여 決定한다.

②理事會의 職權은 合營企業의 定款에 定한다. 理事會는 企業發展

計劃, 生産經營活動案, 豫算의 收入·支出, 利益의 分配, 勞動賃金計劃, 營業의 停止 및 社長·副社長·技師長·總理部長·會計監查部長의 任命 또는 招請, 그 職權과 待遇 等 合營企業의 모든 重要問題를 討議, 決定한다.

③社長 및 副社長(또는 工場長 및 副工場長)은 合營 當事者가 各各 分擔하는 것으로 한다.

④合營企業의 從業員의 雇傭 및 解雇는 法律에 의하여 合營 當事者間의 協定 및 契約에 의하여 定하는 것으로 한다.

第 7 條 ①合營企業의 總利益에서 中華人民共和國 稅法에 의하여 이 에 課稅된 合營企業所得稅를 納付한 後 다시 合營企業의 定款에 定한 準備基金, 從業員獎勵 및 福祉基金, 企業發展基金을 控除하여 取得한 純利益은 合營 各當事者의 登錄資本의 比率에 따라 配當되는 것으로 한다.

②세계의 先進技術水準을 갖춘 合營企業은 利益을 내기 始作한 最初의 2年 乃至 3年間은 所得稅의 減免을 申請할 수 있다.

③外國側合營者가 取得한 純利益을 中國 國內에 再投資할 때에는 既納付한 所得稅의 一部 還給을 申請할 수 있다.

第 8 條 ①合營企業은 中國銀行 또는 中國銀行의 同意를 얻은 銀行에 去來口座를 開設하여야 한다.

②合營企業의 外貨에 관한 事項은 「中華人民共和國外換管理條例」를 遵守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③合營企業은 그 經營活動에 있어서 外國銀行으로부터 直接 資金을 調達할 수 있다.

④合營企業의 各種 保險은 中國保險公司에 加入하여야 한다.

第 9 條 ①合營企業의 生産經營計劃은 主管部署에 提出하여 公簿에 올리며 또한 經濟契約에 定하였던 方式으로 하여 實施하여야 한다.

②合營企業이 必要로 하는 原材料·燃料 및 附帶設備等은 中國에서 優先적으로 購買하여야 한다. 다만, 合營企業 自體가 調達한 外貨에 의하여 直接 國際市場에서 購買할 수도 있다.

③合營企業이 中國 國外에 製品을 販賣하는 것을 獎勵한다. 合營企業은 直接 또는 關聯 委託機關을 통하여 輸出用 製品을 國外市場에 販賣할 수 있으며 또는 中國의 對外貿易機關을 통하여 販賣할 수도 있다. 合營企業의 製品은 中國市場에서 販賣할 수도 있다.

④合營企業이 必要로 할 때에는 中國 國外에 그 支社를 設置할 수 있다.

第 10 條 ①外國側合營者가 法律, 協定 및 契約에 規定된 義務의 履行後에 取得한 純利益, 合營企業의 期間滿了 또는 解散時에 取得한 資金 및 其他의 資金은 合營企業의 契約에 定하여진 通貨에 의하여 中國銀行을 통하고 外換管理條例에 依據하여 國外에 送金할 수 있다.

②外國側合營者가 送金할 수 있는 外貨를 中國銀行에 預入하는 것을 獎勵한다.

第 11 條 合營企業의 外國籍 從業員의 賃金所得 其他 正當한 所得은 中華人民共和國 稅法에 의하여 個人所得稅를 納付한 後 中國銀行을 통하여 外換管理條例에 依據하여 國外에 送金할 수 있다.

第 12 條 合營企業의 契約期間은 營業의 種別 또는 各各의 狀況에

따라 合營 當事者間의 協議에 의하여 定할 수 있다. 合營企業의 契約期間 滿了後에 當事者 雙方이 同意하고 또한 中華人民共和國 外國投資管理委員會에 申請하여 認可를 받을 경우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契約期間 延長의 申請은 契約期間 滿了 6個月 以前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13 條 合營企業의 契約期間 滿了前에 重大한 缺損, 契約 및 定款에 規定한 義務의 一方的 不履行 또는 不可抗力 등이 發生한 때 合營 當事者는 協議에 의한 同意에 의하여 中華人民共和國 外國投資管理委員會에 申請하여 認可를 받고 또한 工商行政管理總局에 登錄할 경우 契約을 早期 終了할 수 있다. 契約違反에 의한 損害가 發生한 때 契約違反 當事者는 經濟的 責任을 負擔하여야 한다.

第 14 條 合營 當事者間에 紛爭이 發生하고 理事會의 協議에 의한 解決이 不可能한 때에는 中國의 仲裁機關이 調停 또는 仲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合營當事者의 協議에 의하여 其他의 仲裁機關이 仲裁할 수도 있다.

第 15 條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効力を 發生한다. 本法의 修正 및 改正權은 全國人民代表大會에 屬한다.

XII. 蘇聯의 合作企業法

【註】 1985年 3月 黨書記長에 就任한 고르바초프는 그의 전임자들과는 달리 「새로운 사고」에 입각한 일련의 改革·開放政策을 樹立, 執行하고 있어 全世界의 이목을 集中시키고 있다. 특히 그는 經濟發展 最優先主義 政策을 効率的으로 전개하기 위해 1985年 7月 重工業經營者에게 制限的인 自律權을 附與하는 「新 經濟法」, 1986年 11月 一部の 個人企業을 許容하는 「新 勞動法」, 1987年 7月 完全한 獨立採算制를 導入하는 「國營企業法」등을 採擇하고 있다. 특히 1987年 6月 11日에는 日·蘇合作企業法設立을 發表함으로써 西方의 先進 資本·技術導入에 보다 積極的인 姿勢를 보이고 있는 바, 本 「合作企業法」은 1987年 1月 27日字 「프라우다」紙에 掲載된 것을 翻譯한 것임.

第 I 章 對 社會主義國家

· 1987年 1月 13日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以下「소비에트」聯邦) 內閣은 自國領土內에서 「소비에트」聯邦과 經濟相互援助理事會 會員國間의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및 合作機關을 設立하는데 必要한 節次와 經濟活動에 관한 法을 採擇하였다.

本 法의 目的은 社會主義經濟發展을 한층 深化하고, 社會主義共同體 國家들의 科學, 技術 및 生産潛在力을 提高시키는데 있다.

「소비에트」聯邦의 省·廳 및 加盟共同國內閣은 「소비에트」聯邦과 經濟相互援助理事會 會員國間의 合作企業, 國際生産聯盟 및 合作機關設立과 관련한 事業을 廣範圍하게 展開한다.

第 1 條 合作企業, 國際生産聯盟, 合作機關의

基本目的과 設立節次

合作企業은 工業, 科學, 農業, 建設, 貿易, 輸送 및 기타 分野에서 科學的인 生産과 産業, 科學, 技術發展 등 經濟活動을 위하여 設立된다. 合作企業(生産企業, 貿易商社, 導入(輸入)·「서어비스」機關)은 社會主義財產 公有化原則에 立脚하여 企業參與者들의 利益을 爲해 經濟活動을 한다.

國際生産聯盟은 工業, 科學, 農業, 建設, 貿易, 輸送 및 기타 人民 經濟分野에서 科學的인 生産과 産業發展 등 經濟力 向上을 위하여 設立된다.

國際生産聯盟은 財產의 公有化原則에 立脚, 參與者들에 의하여 合意되는 計劃에 따라 活動한다.

合作機關(科學研究·建設計劃 및 기타 機關)은 社會主義財產 公有化原則에 立脚하여 科學研究, 建設計劃遂行 등을 目的으로 設立된다.

合作企業, 國際生産聯盟, 合作機關은 「소비에트」聯邦과 經濟相互援助理事會 會員國間에 締結되는 條約에 따라 設立된다.

合作企業, 國際生産聯盟, 合作機關은 「소비에트」聯邦과 經濟相互援助理事會 會員國間에 締結되는 條約에 準하여 既存의 經濟條約에 의해서도 設立될 수 있다.

合作企業, 國際生産聯盟, 合作機關은 “「소비에트」聯邦과 經濟相互

援助理事會 會員國間的 合作經濟聯盟「소비에트」聯邦領土內에서의 經濟活動에 關하여 ”라는 1983年 5月 26日附「소비에트」聯邦最高會議 幹部會의 令과 “外國의 聯盟·會社·管理機關의 參與로 「소비에트」聯邦領土內에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 등의 設立節次와 經濟活動에 關한 問題에 대하여 ”라는 1987年 1月 13日附 「소비에트」聯邦最高會議 幹部會의 令 및 本法, 「소비에트」聯邦·加盟共和國의 기타 關係法令, 또한 「소비에트」聯邦의 關係條約에 따라 活動한다.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 및 技術·經濟性이 높은 기타 企業 등의 設立計劃書는 加盟共和國 省·廳의 關係機關에 提出된다. 加盟共和國의 該當省·廳은 關係機關으로부터 提出받은 設立計劃書를 內閣에 提出한다. 提出된 設立計劃書는 「소비에트」聯邦의 關係省·廳, 該當共和國內閣, 「소비에트」聯邦 國家計劃委員會와 財務省 및 기타 關係省·廳의 機關에 의해서 檢討된다.

合作企業의 設立에 關하여 合意된 設立計劃書는 「소비에트」聯邦 內閣에 提出되며,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의 設立에 關하여 合意된 設立計劃書는 「소비에트」聯邦內閣傘下 該當常設機關에 提出된다.

「소비에트」聯邦의 關係省·廳은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을 設立할 때 國內生產潛在力の 提高, 生産되는 一定量の 工產品·食料品 등의 國內需要充足 및 「소비에트」聯邦人民經濟에 先進技術·技術工程, 管理經驗, 必要한 資料, 財政資源의 導入, 國內輸出基地發展, 非合理的인 輸入減少 등을 考慮한다.

第2條 合作企業，國際生產聯盟，合作機關設立參與者

財産과 權利

「소비에트」聯邦의 關係機關에 法人體로 登錄되어 있는 企業과 經濟相互援助理事會 會員國의 關係機關에 法人體로 登錄되어 있는 企業들이 企業 對 企業의 관계로 合作企業，國際生產聯盟，合作機關 등의 設立에 參與할 수 있다.

또한 「소비에트」聯邦과 經濟相互援助理事會 會員國의 管理機關들이 設立에 參與할 수 있다.

合作企業，國際生產聯盟，合作機關은 「소비에트」聯邦 法規에 따라 法人體로 設立된다.

合作企業，國際生產聯盟，合作機關은 必要한 對外約定을 獨自的으로 締結하며，財産權을 享有하고，또한 調停과 仲裁裁判에서 原告와 被告로 될 수 있다.

合作企業，國際生產聯盟，合作機關은 參與者들에 의하여 合意되는 定款을 가져야만 한다.

定款에는 合作企業，國際生產聯盟，合作機關의 活動目的，所在地，要員·組織·管理機關의 構成과 權限，重要한 案件의 採擇節次 및 清算節次 등이 明記된다.

合作企業，國際生產聯盟，合作機關의 事業期間은 參與者들의 合意에 따라 設立計劃書에 明記한다.

「소비에트」聯邦領土內에 設立되는 合作企業，國際生產聯盟，合作機關은 「소비에트」聯邦 財務省에 登錄되며，登錄된 순간부터 法人體의 權利를 갖는다.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은 그의 資本으로 活動에 必要한 不動產을 所有, 利用, 管理한다.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의 財產은 行政處分으로 沒收 또는 押留되지 아니한다.

同時에 그의 財產은 「소비에트」聯邦의 關係法規에 따라 保護된다.

上記에서 指摘한 財產은 「소비에트」聯邦의 關係法規에 따라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設立參與者들의 議決에 의해서만 活用될 수 있다.

또한 그의 財產은 「소비에트」聯邦의 保險機關에 義務적으로 加入한다.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이 再編成되는 경우, 그의 權利와 義務는 그를 引受받은 企業, 聯盟, 機關에 移讓된다.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에 歸屬된 工業所有權과 特許權은 「소비에트」聯邦法規로 保護한다.

上記에서 指摘한 工業所有權과 特許權의 販賣, 商業的 活用, 國外에서의 保護 등에 관한 規定은 設立計劃書에 明記한다.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은 그의 義務遂行에 充實한다. 또한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은 「소비에트」聯邦國家의 義務遂行에 協力하며 「소비에트」聯邦國家는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의 義務遂行에 協力한다.

「소비에트」聯邦領土內에 設立된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은 節次에 따라 經濟相互援助理事會 會員國의 領土에 代表부와 支社를 開設할 수 있으며, 이와 同時에 經濟相互援助理事會 會員國의 領土에 「소비에트」聯邦 關係機關의 參與로 設立된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은 節次에 따라 「소비에트」聯邦領土內에 代表部

와 支社를 開設할 수 있다.

「소비에트」聯邦領土內에 法人體로서 開設되는 代表部와 支社는 母會社의 義務遂行에 充實한다.

「소비에트」聯邦의 國家機關·協同組合·기타 社會團體와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間에 經濟活動으로 인하여 發生되는 論爭, 또한 合作企業·國際生產聯盟·合作機關 相互間의 論爭과 그 參與者들간의 論爭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한 「소비에트」聯邦法規에 따라 國家調停委員會에서 整停한다.

第 3 條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의 經營節次

그 參與 代表者들로 構成되는 幹部會(理事會)가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의 代表機關으로 된다. 案件採擇과 관련한 幹部會(理事會)의 權限은 設立計劃書에 明記한다.

幹部會(理事會)에 의하여 任命된 總管理者(幹部會의 長)가 經營을 主導한다. 總管理者(幹部會의 長)는 「소비에트」聯邦 國民이 된다.

「소비에트」聯邦·加盟共和國의 國家中央管理機關과 協議가 必要한 경우,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은 그의 代表機關을 통하여 問題를 論議하며, 「소비에트」聯邦의 기타 機關과는 直接 協議한다.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은 그의 經營活動計劃을 獨自적으로 樹立·確定한다.

「소비에트」聯邦의 國家機關은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에 任意的 課業을 要求하지 아니한다.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에 의한 「소비에트」聯邦領土 內

· 外로의 商品 및 기타 資産의 搬入·搬出은 「소비에트」聯邦의 關係法規에 따라 施行한다.

「소비에트」聯邦의 對 國家間, 對 政府間 條約에 特別한 條項이 規定되지 않은 경우, 合作企業, 國際生産聯盟, 合作機關은 對外貿易銀行, 國際經濟協力銀行 口座를 통하여 對內·外 外國換業務를 取扱하며, 國際投資銀行 口座를 통해서도 對內 外國換業務를 取扱할 수 있다.

合作企業, 國際生産聯盟, 合作機關의 業務와 관련 國內貨와 外貨의 換算率條件·方法·節次 등은 關係國家 專門機關間의 事前協定에 立脚하여 「소비에트」聯邦財務省의 規定에 따른다.

合作企業, 國際生産聯盟, 合作機關은 「소비에트」聯邦國營企業의 現行法規에 準하여 決算·會計·統計 등을 算出하며, 그에 관한 資料를 財務省과 中央統計局에 提出한다.

合作企業, 國際生産聯盟, 合作機關은 「소비에트」聯邦의 關係法規에 따라 提出한 資料의 正確性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合作企業, 國際生産聯盟, 合作機關은 外國의 關係業體와 業務上 必要한 書信·電信·「텔레क्स」·電話 등 通信關係를 維持한다.

第 4 條 合作企業의 經濟活動特性

合作企業의 財産은 「소비에트」聯邦國家와 經濟相互援助理事會 會員國 關係國家의 共同의 社會主義所有物이다.

合作企業은 完全한 獨立採算制와 그의 自體資金으로 運營되며, 獨立的으로 決算을 한다.

合作企業의 資本金規模, 企業參與者들의 持分規模, 基金(外貨包含)의 種類 및 造成에 관한 事項 등은 設立計劃書에 明記한다.

合作企業의 資本金은 그 企業參與者들의 出資金에 의하여 造成된다. 또한 必要한 경우, 企業의 經濟活動에서 일어난 利潤과 企業參與者들의 追加의 出資金으로 增資될 수 있다.

合作企業의 出資金으로는 建物, 施設, 裝備, 기타 資料, 土地, 水資源 및 기타의 自然資源 또한 建物·施設·裝備使用權(技術使用權 包含)과 그 企業參與者 本國의 貨幣, 國際性 通貨 등이 出資될 수 있다.

參與者들이 合作企業의 資本金으로 投資한 出資金은 經濟相互援助理事會 會員國間의 現行 關係法規에 따라 「루블」貨로 換算된다.

「루블」貨로 換算된 出資金에 관하여 異義가 提起되는 경우 參與者들은 出資金에 대한 「루블」貨로의 換算을 再審査한다.

「소비에트」聯邦國家의 關係當局은 外國의 參與者들이 合作企業의 資本金으로 投資하여 「소비에트」聯邦領土內로 搬入하는 裝備, 資材 및 기타의 資產에 대하여 關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合作企業의 參與者들은 自己의 持分을 相互合意에 따라 全部 혹은 一部를 第3者에게 讓渡할 수 있는 權利를 갖는다. 特別한 경우에 있어서의 持分讓渡는 「소비에트」聯邦內閣 國家對外經濟委員會의 許可를 要한다. 合作企業에 參與한 內國人은 外國人の 持分을 讓渡받는데 있어서 最優先權을 갖는다.

合作企業은 「소비에트」聯邦 對外貿易機關을 통하여 그의 生産製品을 輸出하고, 必要한 外國의 資材·技術 등을 供給받으며, 또한 「소비에트」聯邦 人民經濟 關係分野의 供給網을 통하여 그의 生産製品을 國內販賣하고, 必要한 國內의 資材·技術 등을 供給받는다.

合作企業은 「소비에트」聯邦 關係機關의 法規에 따라 締結하는 約

定에 依據, 必要한 國內의 製品과 「서어비스」를 供給받는다.

合作企業이 資材·技術을 供給받는 節次와 方法, 그의 生産製品을 販賣하고 그에 따른 「서어비스」를 提供하는 節次와 方法 등에 관한 細部事項은 設立計劃書에서 規定한다.

合作企業은 關係機關과의 約定에 立脚하여 自體의 資金과 融資金으로 工場建設과 施設物의 設置作業을 遂行한다.

合作企業은 工場建設, 施設物 設置計劃을 獨自적으로 樹立·確定한다. 確定前까지의 計劃案은 必要한 節次에 따라 「소비에트」聯邦 國家建設委員會의 同意를 要한다.

「소비에트」聯邦의 建設·組立機關은 合作企業의 要請에 따라 工場建設, 施設物設置作業에 參與하며, 建設에 必要한 資材를 供給한다.

合作企業은 「소비에트」聯邦의 關係法規에 따라 貨物을 輸送한다.

合作企業은 生産된 製品의 價格을 決定할 수 있는 權利와 外國으로부터 供給받는 資財·技術費 支拂과 관련, 自體의 資金과 融資金으로 支拂에 관한 約定을 締結할 수 있는 權利를 갖는다.

上記에서 指摘하는 約定은 「소비에트」聯邦 對外貿易機關의 事前 同意를 얻어야 한다.

「소비에트」聯邦의 國立銀行과 建設銀行은 必要한 경우 關係機關에 우선하여 合作企業에 融資金을 提供하는데 편리한 方法, 節次 및 提供保障 등에 관한 細部事項을 決定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다.

合作企業은 「소비에트」聯邦의 對外貿易銀行, 國際投資銀行, 國際經濟協力銀行에서 融資를 받으며 경우에 따라 對外貿易銀行의 同意를 얻어 外國의 銀行과 企業에서 融資를 받을 수 있다.

上記에서 指摘한 「소비에트」聯邦의 銀行들은 合作企業에 貸出된

融資金의 적절한 使用, 融資金의 償還期日遵守 與否 등에 대하여 統制할 수 있는 權利를 갖는다.

參與者들간의 企業生産製品의 配當은 出資金에 대한 貢獻度에 比例하거나 事前協議에 따른다. 配當節次는 設立計劃書에서 規定한다.

合作企業은 設立計劃書에 特別한 事項을 規定하지 않은 경우 「소비에트」聯邦의 法規에 따라 減價償却基金을 造成한다. 그 減價償却基金은 合作企業에 의해 管理된다.

合作企業은 企業活動과 從業員들의 社會保障을 위하여 豫備基金과 기타 基金을 造成한다. 利潤으로부터 造成되는 上記의 基金은 企業總資本金의 25%를 上廻하지 못한다.

매년 造成되는 基金額은 設立計劃書에서 規定한 節次에 따라 決定한다.

基金의 種類, 造成方法 및 支出節次는 設立計劃書에서 規定한다.

設立計劃書에 特別한 事項이 規定되지 않은 경우, 「소비에트」聯邦 國家歲出入規定에 따라 各種基金을 控除한 合作企業의 利潤은 企業參與者들에 의하여 合意된 持分比率에 따라 配分한다.

利潤으로 配當된 外國參與者들의 配當金은 本國貨 또는 外貨로 國外로의 送金이 保障된다.

合作企業은 設立計劃書에서 規定한 節次에 따라 構成되는 經營評價委員會를 가질 수 있다.

合作企業의 財政·經營·商業活動에 관한 評價는 有料로 「소비에트」聯邦 會計監查機關에 의하여 實施된다.

第 5 條 合作企業에 대한 課稅

合作企業은 豫備基金과 生産·科學·技術發展基金을 控除하고 남은 利潤에서 30%의 稅金을 納付한다. 稅金은 「소비에트」聯邦 國家豫算收入으로 算定된다.

合作企業은 企業活動을 始作한 最初 2年間 利潤에 대하여 免稅惠澤을 받는다.

「소비에트」聯邦 財務省은 稅額을 減免할 수 있는 權限을 갖는다. 企業은 처음 納付하는 當該年度의 稅額을 前年度의 財政을 考慮하여 獨自적으로 決定한다.

「소비에트」聯邦 財務省의 關係機關은 合作企業自體에 의해 算出된 稅額의 正確性 與否에 關하여 確認할 수 있는 權利를 갖는다.

前年度에 稅金이 重課된 경우, 그 超過分은 次期年度稅金에 算入되거나 企業의 申告에 의하여 納付한 企業에 返還될 수 있다.

合作企業은 重課稅行爲에 異義를 提起할 수 있는 權利를 갖는다. 異義에 關한 申告書는 稅金算出을 擔當하는 財政機關에 提出한다. 申告書에 關한 이상유무의 判定結果는 申告書提出日로부터 1個月 以內에 通報한다.

申告書의 提出이 稅金의 納付를 留保시키는 것은 아니다.

「소비에트」聯邦과 經濟相互援助理事會 會員國關係國間의 條約에 特別한 事項이 規定되지 않은 경우, 合作企業 外國人參與者에게 配當된 利益配當金이 國外로 送金될 때 20%의 稅金이 賦課된다.

上記에서 指摘한 稅金制度는 「소비에트」聯邦 領土內에 設立되는 모든 合作企業, 「소비에트」聯邦 關係機關의 參與下에 外國에 設立

되어 「소비에트」聯邦領土, 즉 大陸棚·工業地域 등에 開設된 支社의 經濟活動과 관련한 경우에도 適用된다.

第 6 條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의 特性

國際生產聯盟과 合作機關은 獨自的으로 決算을 하며, 參與者들의 出資金으로 經濟活動을 한다.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의 財政基金規模(外貨包含), 造成節次는 定款에서 規定한다.

財政基金은 參與者 本國의 貨幣, 外貨 등으로 造成한다. 또한 施設物維持 및 經濟活動과 관련한 專門家招請·派遣 등을 위하여 基金을 造成한다.

參與者들의 出資金으로서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의 資本金에는 建物, 施設物, 設備, 기타 資財 및 建物, 施設物, 設備의 使用權과 工業·技術使用權 등이 投資될 수 있다.

參與者들에 의하여 出資되는 建物, 施設物, 設備 등의 金錢으로의 換算은 經濟相互援助理事會 會員國間에 締結된 現行關係規定에 立脚하여 評價한다.

金錢으로 換算된 評價額에 異義가 提起되는 경우, 參與者들의 合意에 따라 再審査한다.

「소비에트」聯邦의 參與者들은 國立銀行과 對外貿易銀行에서 貸出하는 融資金을 國際生產聯盟과 合作機關 設立에 投資할 수 있다.

外國의 參與者에게는 國際生產聯盟이나 合作機關의 清算으로 그에게 割當된 現金은 本國貨 또는 外貨로 國外로의 送金이 保障된다.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은 그의 生産製品에 대하여 價格을 決定할

수 있는 권리와 自體資金이나 融資金으로 輸入代金支拂에 관한 約定을 締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國際生産聯盟, 合作機關은 그의 活動遂行에 必要한 「노하우(技術)」, 材料, 見本品, 技術設備, 기타 商品과 「서어비스」등의 輸入에 대하여 外國의 關係聯盟, 機關과 協議하고 約定을 締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上記에서 指摘한 約定은 「소비에트」聯邦 對外貿易機關의 事前同意下에 締結된다.

參與者の 出資金으로 經濟活動을 하는 國際生産聯盟과 合作機關은 合作企業에 適用되는 設立節次, 經濟活動에 관한 規定 등 本法의 該當事項을 遵守한다.

第7條 合作企業, 國際生産聯盟, 合作機關의 從事員

合作企業, 國際生産聯盟, 合作機關에 從事하는 「소비에트」聯邦國民들의 勞動報酬 및 勞動條件, 休息制度, 社會保障·社會保險 등은 「소비에트」聯邦 關係法規에 準하여 調停한다. 이같은 法規는 「소비에트」聯邦國家와 關係國家간의 對國家間 또는 對政府間 條約에 特別한 事項이 規定되지 않은 경우 合作企業, 國際生産聯盟, 合作機關에 從事하는 外國國民에게도 適用된다. 合作企業, 國際生産聯盟, 合作機關은 「소비에트」聯邦國家의 法規에 따라 모든 從事者の 國家社會保障을 위한 積立金を 「소비에트」聯邦國家에 拂入한다.

合作企業의 管理機關은 企業內에 結成되는 職業同盟과 團體協約을 締結할 義務를 가진다. 그같은 協約의 內容에는 社會保障規定을 包含하여 「소비에트」聯邦의 關係法規, 設立計劃書의 關係規定 등이 包

숨된다.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에 從事하는 外國人の 賃金 所得에는 “外國의 法人・自然人的 所得에 關하여” 라는 1978年 5月 12日附 「소비에트」聯邦最高會議 幹部會의 令에 따라 所得稅가 賦課된다.

第 8 條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의 清算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은 定款과 設立計劃書에서 規定한 節次에 따라 清算될 수 있다.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의 清算에 關한 通報는 言論에 公表한다.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의 清算 혹은 退職할 때 外國의 參與者들은 「소비에트」聯邦參與者와 第三者에 대하여 自身の 償還 業務를 다한 후 企業, 聯盟, 機關의 清算・退職순간 當時 出資金의 剩餘價値에 따라 現金이나 製品으로 自身の 出資金を 返還받을 權利를 갖는다.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의 清算은 「소비에트」聯邦 財務省에 通報된다.

本 法은 經濟相互援助理事會 會員國이 아닌 社會主義國家가 「소비에트」聯邦과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 등을 「소비에트」聯邦領土內에 設立할 때에도 適用된다.

이의 適用範圍는 「소비에트」聯邦內閣 國家對外經濟委員會에 의하여 決定되며, 必要한 경우 具體的인 提案을 「소비에트」聯邦內閣에 提出한다.

第Ⅱ章 對 資本主義·開發途上國家

1987年 1月 13日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以下 「소비에트」聯邦)內閣은 “「소비에트」聯邦의 企業과 資本主義·開發途上國家의 企業(會社)들의 參與下에 「소비에트」聯邦領土內에 合作企業設立 및 經濟活動에 관하여”라는 法을 採擇하였다.

本法의 目的은 安定的이고 相互利益의 土臺위에서 資本主義·開發途上國家와의 貿易·經濟·科學·技術協力을 加一層 發展시키는데 있다. 「소비에트」聯邦의 企業과 資本主義·開發途上國家의 企業(會社)들의 參與로 設立되는 合作企業은 企業參與者들간에 締結되는 約定을 土臺로 「소비에트」聯邦內閣의 許可로서 「소비에트」聯邦領土內에 設立된다.

合作企業은 “外國의 聯盟, 會社, 管理機關의 參與로 「소비에트」聯邦領土內에 合作企業, 國際生產聯盟, 合作機關 등의 設立節次와 經濟活動에 관한 問題에 대하여”라는 1987年 1月 13日附 「소비에트」聯邦最高會議 幹部會의 令 및 本法과 「소비에트」聯邦·加盟共和國의 기타 法規를 遵守한다.

技術, 經濟性, 計劃 등을 明記한 合作企業設立에 관한 計劃書는 關係機關에 의하여 該當 省·廳에 提出된다. 省·廳은 提出받은 設立計劃書를 加盟共和國內閣에 提出한다.

그같은 設立計劃書는 上記에서 指摘한 「소비에트」聯邦의 該當 省·廳, 加盟共和國內閣, 「소비에트」聯邦國家計劃委員會, 「소비에트」聯邦財務省 및 기타 關係性·廳 등에 의해서 檢討된다.

合作企業設立에 관하여 協議된 設立計劃書는 「소비에트」聯邦內閣에 提出된다.

「소비에트」聯邦의 關係省·廳은 合作企業을 設立할 때 工產品, 原料, 食料品 등 分野에서 國內需要의 完全充足, 進步的인 外國의 先進技術, 技術工程, 管理經驗, 財政資源 등 「소비에트」聯邦 人民經濟에의 導入, 國內輸出基地發展, 非合理的인 輸入減少 등을 考慮한다.

第 1 條 合作企業設立 參與者의 財産과 權利

「소비에트」聯邦國家에 法人體로 登錄되어 있는 企業(生産聯盟, 其他 機關)과 資本主義·開發途上國家에 法人體로 登錄되어 있는 企業(會社, 商社, 組合, 기타 團體)들이 企業 對 企業의 關係로 合作企業設立에 參與할 수 있다.

合作企業의 總資本金에서 「소비에트」聯邦制의 持分은 51% 以上에 達하여야 한다.

合作企業은 「소비에트」聯邦 法規에 따라 法人體로 登錄된다.

合作企業은 必要한 對外約定을 獨自的으로 締結할 수 있으며, 財産權과 個人의 非財産權을 享有하고, 義務를 가지며, 調停과 仲裁裁判에서 原告나 被告로 될 수 있다. 合作企業은 獨立的인 決算을 하며, 完全한 獨立採算制, 資金의 自體負擔으로 經營된다.

合作企業은 그 參與者들에 의하여 合意되는 定款을 가져야만 한다.

定款에는 企業活動의 目標와 目的, 所在地, 參與要員, 資本金(外貨包含)의 規模 및 造成節次, 組織·管理機關의 構成과 權限, 重要한 案件의 採擇節次 및 清算節次 등이 明記된다.

定款에는 「소비에트」聯邦의 法律에 違背되지 않고, 合作企業活動의 特殊性에 關係되는 기타의 規定이 包含될 수 있다.

合作企業의 參與者들은 企業設立에 관한 約定이나 定款에서 事業期間을 明記한다.

「소비에트」聯邦領土內에 設立되는 合作企業은 設立計劃書의 効力이 發한 후 「소비에트」聯邦 財務省에 登錄되며, 登錄된 순간부터 法人體의 權利를 갖는다. 合作企業設立에 관한 通報는 言論에 發表한다.

合作企業의 資本金은 그 參與者들의 出資金으로 造成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企業의 經濟活動에서 얻어진 利潤과 企業參與者들의 追加의 出資金으로 增資될 수 있다.

合作企業의 出資金으로는 建物, 施設, 裝備, 기타 資材, 土地, 水資源 및 기타의 自然資源, 또한 建物·施設·裝備使用權(發明品·技術使用權 包含)과 그 企業參與者 本國의 貨幣, 國際性 通貨 등이 出資될 수 있다.

合作企業 資本金에 「소비에트」聯邦 參與者들의 上記와 같은 出資는 國際市場價를 考慮 合意한 約定에 따라 「루블」貨로 換算된다. 外國參與者들이 外貨로 投資한 出資金은 合作企業設立에 관한 約定署名日이나 企業參與者들에 의하여 合意한 任意的 날짜, 「소비에트」聯邦國立銀行 「루블」對 外貨換算率에 따라 「루블」貨로 換算·評價된다. 國際市場價에 따라 「루블」貨로 換算된 出資金에 관하여 異議가 提起되는 경우 參與者들은 出資金에 대한 「루블」貨로의 換算을 再審査한다.

「소비에트」聯邦國家의 關係當局은 外國의 參與者들이 合作企業의

資本金으로 投資하여 「소비에트」聯邦領土內로 搬入하는 裝備, 資料 및 기타의 資産에 대하여 關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合作企業의 財産은 「소비에트」聯邦 保險機關에 義務적으로 加入된다.

合作企業은 「소비에트」聯邦法規에 依據 自體의 資金으로 活動에 必要한 不動産을 所有, 利用, 管理한다. 企業의 財産은 行政處分으로 沒收 또는 押留되지 아니한다.

合作企業의 財産은 「소비에트」聯邦의 關係法規에 따라 保護된다.

上記에서 指摘한 合作企業의 財産은 「소비에트」聯邦의 關係法規에 따라 合作企業 參與者들의 議決에 의해서만 活用될 수 있다.

合作企業의 參與者들은 自身의 持分을 相互合意에 따라 全部 혹은 一部를 第三者에게 讓渡할 수 있는 權利를 갖는다. 特別한 경우에 있어서의 持分讓渡는 「소비에트」聯邦內閣 國家對外經濟委員會의 許可를 要한다. 合作企業에 參與한 內國人은 外國人の 持分을 讓渡받는데 있어서 最優先權을 갖는다.

合作企業이 再編成되는 경우, 그의 權利와 義務는 그를 引受받은 企業에 移讓된다.

合作企業에 歸屬된 工業所有權과 特許權은 「소비에트」聯邦法規로 保護된다.

上記에서 指摘한 工業所有權과 特許權의 販賣, 商業的 活用, 國外에서의 保護 등에 관한 規定은 設立計劃書에 明記한다.

合作企業은 그에 歸屬된 財産으로 企業의 義務를 다한다.

合作企業은 「소비에트」聯邦國家의 義務遂行에 協力하며, 「소비에트」聯邦國家는 合作企業의 義務遂行에 協力한다.

「소비에트」聯邦領土內에 設立된 合作企業은 設立計劃書에 規定된 경우 代表部와 支社를 開設할 수 있다.

法人體로 登錄되어 「소비에트」聯邦領土內에 開設된 合作企業의 支社는 그의 義務遂行에 充實하며, 또한 合作企業은 그같은 支社의 義務遂行에 協力한다.

「소비에트」聯邦 關係機關의 參與로 外國의 領土에 設立된 合作企業은 規定된 節次에 따라 「소비에트」聯邦領土內에 支社를 開設할 수 있다.

「소비에트」聯邦의 國家機關·協同組合·기타 社會團體와 合作企業 간에 經濟活動으로 인하여 發生되는 論爭, 合作企業들 相互간의 論爭, 또한 合作企業活動과 관련한 參與者들간의 論爭은 「소비에트」聯邦의 法廷 혹은 雙方의 合意에 따라 仲裁裁判所에서 審議한다.

第 2 條 合作企業의 經營節次

그 參與 代表者들로 構成되는 理事會(重役會議)가 合作企業의 代表機關으로 된다. 案件採擇과 관련한 理事會(重役會議)의 權限은 設立計劃書에 明記한다.

合作企業에 參與한 「소비에트」聯邦人과 外國人으로 構成되는 管理部가 合作企業의 今後 經濟活動을 指導한다.

合作企業에 參與한 「소비에트」聯邦의 國民이 理事會의 長이 된다.

「소비에트」聯邦·加盟共和國의 國家中央管理機關과 協議가 必要한 경우, 合作企業은 그의 代表機關을 통하여 問題를 論議하며, 「소비에트」聯邦의 기타 機關과는 直接 協議한다.

合作企業은 그의 經濟活動計劃을 獨自的으로 樹立・確定한다.

「소비에트」聯邦의 國家機關은 合作企業에 任意的 課業을 要求하지 않으며, 그같은 課業에 의하여 生産된 製品의 販賣는 保障되지 아니한다.

合作企業은 國內市場을 包含하여 經濟相互援助理事會 會員國의 市場에서 企業活動에 必要的 輸出入業務를 獨自的으로 遂行할 수 있는 權利를 갖는다.

또한 上記와 같은 輸出入業務는 約定에 依據하여 「소비에트」聯邦 對外貿易機關이나 合作企業에 參與한 外國人들의 事業網을 통해서도 遂行할 수 있다.

合作企業에 의한 「소비에트」聯邦領土 內・外로의 商品 및 기타 資産의 搬入・搬出은 「소비에트」聯邦 關係法規의 許容範圍內에서 이룩된다.

合作企業은 外國의 關係業體와 業務上 必要的 書信・電信・「텔레스」・電話 등 通信關係를 維持한다.

合作企業은 企業外國人 參與者에게 生産製品을 市場에서 販賣한 利益金으로서만 利潤을 配當해야 한다.

「소비에트」聯邦 市場에 合作企業의 生産製品 販賣와 「소비에트」聯邦 市場으로부터 合作企業에 必要的 裝備, 原料, 資材, 完製品, 燃料, 「에너지」 및 기타製品 등의 供給은 國際市場價를 考慮한 約定에 따라 「소비에트」聯邦 對外貿易機關을 통하여 「루블」貨로 이루어진다.

必要的 경우, 合作企業은 「소비에트」聯邦의 國立銀行이나 對外貿易銀行의 許可下에 外國의 銀行과 會社에서 外貨의 融資金을;

「소비에트」聯邦의 國立銀行이나 對外貿易銀行에서 「루블」貨의 融資金을 ;

商業的 條件下에서 利用할 수 있다.

「소비에트」聯邦의 國立銀行과 對外貿易銀行은 合作企業에 貸出된 融資金의 適切한 使用, 融資金의 償還期日遵守 與否 등에 대하여 統制를 한다.

合作企業에 貸出된 融資金은 「소비에트」聯邦의 國立銀行과 對外貿易銀行口座에 預金되어, 企業의 經濟活動과 관련한 目的에서 支出된다.

「소비에트」聯邦의 國立銀行과 對外貿易銀行은 外貨와 「루블」貨로 入金된 企業의 預金에 대하여 國立銀行에 의하여 規定된 條件과 節次에 따라 利子를 支給한다.

合作企業은 企業의 經濟活動과 勤勞從事員들의 社會保障을 위하여 必要한 豫備基金과 기타 基金을 造成한다. 利潤으로부터 造成되는 豫備基金과 기타基金은 合作企業總資本金의 25%를 上廻하지 못한다.

매년 造成되는 基金額은 設立計劃書에서 規定한 節次에 따라 決定한다.

基金의 種類, 造成方法 및 支出節次는 設立計劃書에서 規定한다.

「소비에트」聯邦 國家歲出入規定에 따라 各種基金을 控除한 合作企業의 利潤은 企業參與者들에 의하여 合意된 持分比率에 따라 配分한다.

利潤으로 配當된 外國參與者들의 配當金은 外貨로 國外로의 送金이 保障된다.

合作企業은 設立計劃書에 特別한 事項을 規定하지 않은 경우 「소

비에트」聯邦의 法規에 따라 減價償却基金을 造成한다. 그같은 減價償却基金은 合作企業에 의해 管理된다.

合作企業은 關係機關과의 約定에 立脚하여 自體의 資金과 融資金으로 工場建設과 施設物의 設置作業을 遂行한다.

그러나 作業開始에 앞서 工場建設과 施設物 設置에 관한 計劃案은 規定된 節次에 따라 「소비에트」聯邦 國家建設委員會의 事前同意를 要한다. 「소비에트」聯邦의 建設・組立機關은 合作企業의 要請에 따라 工場建設, 施設物設置作業에 參與하며, 建設에 必要한 資材를 供給한다.

合作企業의 貨物輸送은 「소비에트」聯邦 關係機關의 規定에 따라 遂行한다.

第 3 條 合作企業에 대한 課稅

合作企業은 豫備基金과 生産・科學・技術發展基金을 控除하고 남은 利潤중에서 30%의 稅金을 納付한다. 稅金은 「소비에트」聯邦 國家豫算收入으로 算定한다.

合作企業은 企業活動을 始作한 最初 2年間 利潤에 대하여 免稅惠澤을 받는다.

「소비에트」聯邦 財務省은 稅額을 減免할 수 있는 權限을 갖는다.

合作企業은 처음 納付하는 當該年度의 稅額을 前年度의 財政을 考慮하여 獨自的으로 決定한다.

「소비에트」聯邦 財務省의 關係機關은 合作企業自體에 의해 算出된 稅額의 正確性 與否에 關하여 確認할 수 있는 權利를 갖는다.

前年度에 稅金이 重課된 경우, 그 超過分은 次期年度稅金에 算入되거나 企業의 申告에 의하여 納付한 企業에 返還될 수 있다.

合作企業은 重課稅行爲에 異議를 提起할 수 있는 權利를 갖는다. 異議에 관한 申告書는 稅金算出을 擔當하는 財政機關에 提出된다.

申告書에 관한 이상유무의 判定結果는 申告書 提出日로부터 1個月 以內에 通報한다.

申告書の 提出이 稅金の 納付를 留保시키는 것은 아니다.

「소비에트」聯邦과 外國의 關係國家간의 條約에 特別한 事項이 規定되지 않은 경우, 合作企業 外國人參與者에게 配當된 利益配當금이 國外로 送金될 때 20%의 稅金이 賦課된다.

上記에서 指摘한 稅金制度는 「소비에트」聯邦領土內에 設立되는 모든 合作企業, 「소비에트」聯邦 關係機關의 參與下에 外國에 設立되어 「소비에트」聯邦領土, 즉 大陸棚·工業地域 등에 開設된 支社の 經濟活動과 관련된 경우에도 適用된다.

「소비에트」聯邦 財務省은 合作企業의 課稅에 관한 細部事項을 發表한다.

第 4 條 合作企業의 經濟活動에 관한 統制

合作企業은 設立計劃書에서 規定한 節次에 따라 構成되는 經營評價委員會를 가질 수 있다.

合作企業은 「소비에트」聯邦의 現行關係法規에 따라 「소비에트」聯邦 國營企業이 施行하고 있는 方法으로 業務·會計·統計 등을 算出한다.

그같이 算出된 資料는 「소비에트」聯邦 中央統計局과 財務省에

의하여 正確性 與否가 確認된다.

合作企業은 「소비에트」聯邦의 法規에 따라 管理規定을 遵守하고, 決算에 대하여 報告할 義務를 가진다.

合作企業은 外國의 國家機關, 또는 기타 機關에 어떠한 報告書나 情報도 提供할 수 없다.

合作企業의 財政·經營·商業活動에 관한 評價는 有料로 「소비에트」聯邦 會計監查機關에 의하여 實施된다.

第 5 條 合作企業의 從事員

合作企業의 從事員은 주로 「소비에트」聯邦國民으로 充員한다. 合作企業의 管理部는 企業內에 結成되는 職業同盟과 團體協約을 締結할 義務를 갖는다.

「소비에트」聯邦 法規에 따라 그 團體協約內容에는 勤勞從事員들의 社會保障에 관한 規定이 包含되고, 또한 設立計劃書의 關係規定 등이 包含된다.

合作企業에 從事하는 「소비에트」聯邦國民들의 勞動報酬 및 勞動條件, 休息制度, 社會保障·社會保險 등은 「소비에트」聯邦 關係法規에 準하여 調停한다.

이같은 法規는 合作企業에 從事하는 各個 外國人과 特別히 勞動條件, 休息制度, 年金保障 등에 관하여 約定을 締結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企業에 從事하는 모든 外國人 從事者들에게 適用한다.

「소비에트」聯邦 勞動·社會問題擔當國家委員會와 全「소비에트」聯邦 勞動組合中央會는 合作企業에 從事하는 外國人을 위한 社會保險에 관하여 「소비에트」聯邦法規適用과 관련한 特例를 만든다.

合作企業은 「소비에트」聯邦國家의 法規에 따라 「소비에트」聯邦과 外國人從事者들의 國家社會保障을 위한 積立金, 또한 「소비에트」聯邦 從事者들의 給料를 「소비에트」聯邦國家에 拂入한다.

合作企業에 從事하는 外國人들의 給料는 그들 本國의 貨幣로 支拂・計算한다.

合作企業에 從事하는 外國人의 賃金所得에는 “外國의 法人・自然人的 所得에 관하여”라는 1978年 5月 12日附 「소비에트」聯邦最高會議 幹部會의 令에 따라 所得稅가 賦課된다. 所得稅를 納付한 그들의 所得은 國外(外貨)로 送金될 수 있다.

第 6 條 合作企業의 清算

合作企業은 設立計劃書에서 規定한 경우 또한 合作企業의 經濟活動이 設立計劃書에서 規定한 目的과 課業에 附合되지 않는 경우, 「소비에트」聯邦內閣의 決定에 의하여 清算될 수 있다. 合作企業의 清算에 관한 通報는 言論에 公表한다.

合作企業의 清算, 혹은 退職할 때 外國의 參與者들은 「소비에트」聯邦參與者와 第 3 者에 대하여 自身の 償還義務를 完成한 後 企業의 清算・退職 순간 當時 出資金의 剩餘價値에 따라 現金이나 製品으로 自身の 出資金을 返還받을 權利를 갖는다.

合作企業의 清算은 「소비에트」聯邦財務省에 通報된다.

〈資料〉 立法調查月報, 國會, 87年 9月號.



북방 3 각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 그 전망 및 정책방향 모색 —

1989년 2월 일 인쇄

1989년 2월 일 발행

책임집필 : 강 석 승

발행처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제 5 연구관실)

(Tel : 720 - 2 1 4 5)

인쇄소 : 웃 고 문 화 사

(Tel : 267 - 3 9 5 6)

〈비매품〉